議政白書

제 1 집



蔚山廣域市北區議會

議政白書

제 1 집

(1997. 7. 15 ~ 1998. 6. 30)



蔚山廣域市北區議會



– 본회의장 전경 –

발간사



역사적인 울산의 광역시 승격과 함께 신설된 북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북구의회에 지대한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11만 구민 여러분과 광역, 기초의원을 겸임하여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신설된 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오신 초대 김성보 의장님을 비롯한 초대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오신 조승수 북구청장님과 당시 북구행정을 책임지셨던 황성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4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이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일년은 참으로 많은 시련과 변화가 있었던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특히 외환위기로 시작된 경제위기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키며,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고통을 주어 왔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어려움속에서도 지방자치사에 선례가 없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동시에 겸임하고 주민의 대변자로서 확고한 사명감으로 일관해 온 지난 초대 의정활동의 발자취를 뒤돌아 보며 제1집 의정백서를 발간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초대북구의회는 활발한 의원 입법활동을 통하여 각종 조례안을 제정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등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북구청사 조기건립을 위하여 초대의회 최대 현안사업으로 추진해 오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지면으로 모든 내용을 다 수록할 수는 없지만 지방의회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하여 지방자치발전에 다소나마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지방화가 국가 경쟁력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우리 북구의회 전의원은 지난 경험과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도록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북구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 9.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윤두환

축 사



민선자치시대의 출범과 더불어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열어온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의원 여러분께서는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심도있는 논의와 충분한 조사, 연구를 통해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을 현실적인 노력과 소신있는 활동으로 시민의 오랜 숙원인 광역시 승격과 살맛나는 북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여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의회상을 정립하였습니다.

우리 북구의회의 구성원인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책임과 봉사를 다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과 주민 권익보호, 복지증진에 힘써 의회의 비중을 한층 높이셨습니다.

"조화롭고 활기찬 새북구" 발전을 위한 노력도 이제는 추상적, 선언적인 구호가 아니라 우리 구민들의 희망적인 생활지침이나 미래설계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이는 오로지 의원님들의 통찰과 판단에 의한 의사결정으로 선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시대의 난국인 IMF 한파와 현대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 사회전반에 실업문제가 대두되어 노 · 사 · 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인 지역현안을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에서 최소한의 정리해고로 지역경제 재도약의 기회가 되도록 노 · 사가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삶의 터전을 공유하고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존의식을 높이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며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풍성히 가꾸기 위한 의원님들의 노력이 알찬 열매를 맺을 때 우리모두가 염원하는 화합과 번영의 살기좋은 북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며 21세기 환태평양시대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방행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재정분야를 위시해서 환경, 사회복지, 교통, 교육, 주거분야 등 구정 전 부분에 걸쳐서 구민을 으뜸으로 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모저모에 대하여 나름대로 파악한 결과 우리구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녔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점도 함께 안고 있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바탕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에 대한 존경과 협조속에 신뢰감을 쌓아감으로써 살맛나는 울산 북구건설 및 구민 개개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역량을 집결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정백서 발간을 계기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발전사를 계속 기록으로 보전하여 구민 모두가 의정활동과 지방자치제도의 운영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998. 9.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조 승수

초대북구의회 의원

의 장 단

의 장



金 聲 補 (강동동)

부 의 장



尹 斗 煥 (송정동)



의 원

제10선거구



李 相 源

농 소 동



韓 成 斗

진 장 동



鄭 錫 壽

효 문 동



李 秉 雨

양 정 동



陳 漢 杰

염 포 동



趙 承 洙

寫眞으로 보는 議政活動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본회의 장면(본의회장)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본회의 장면(소회의실)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97행정사무감사(소회의실)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구정질문장면(본회의장)



▲ 본회의 방청장면(본회의장)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의원간담회장면(의장실)



▲ 북구청사 건립 추진 상황보고·청취(소회의실)



▲ 염포동 경계조정 현장확인(염포해안)



▲ 건물침하 현장확인(강동동사무소)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건물침하 현장확인(강동동사무소)



▲ 금천교 현장확인(어물동)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오피스텔 사치성재산 현장확인(강동)



▲ 산불조심 캠페인 등산대회(동대산)

目　　次

■발 간 사
■축　　사
■의원 사진일람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제1장 일반현황

제1절 우리고장의 연혁 ····· 29
제2절 구정일반 · 통계현황 ····· 31
1. 지역여건 ····· 31
2. 구정현황 ····· 31
3. 구민생활 ····· 32
4. 동별 인구 · 면적현황 ····· 34
5. 울산광역시 구 · 군일반현황 ····· 35
제3절 지방자치연혁 ····· 36
제4절 의회일반현황 ····· 37
1. 의회설치 ····· 37
2. 의회기구 ····· 38
3. 의원선거구 ····· 38
4. 의원현황 ····· 38
5. 의회예산현황 ····· 39
6. 의사당 시설현황 ····· 40
7. 의회사무국 직원현황 ····· 40

제2장 의정소감

□ 북구의회의 초석이 되면서 (김 성 보 의 장) ····· 43

□ 진정한 지방자치란? (윤두환부의장) ····· 45

□ 의정활동을 마감하면서…… (이 상 원 의 원) ····· 48

□ 자기개혁과 반성은 정치권과 공공부분부터 (진 한 걸 의 원) ····· 50

□ 진정한 지방자치는 "자치"와 "분권" (조 승 수 의 원) ····· 53

제3장 의회개원 및 원구성

제1절 개원준비 ····· 57

1. 의회사무국 설치 ····· 57

2. 지방자치관련 조례 · 규칙제정 ····· 57

3. 의회청사 집기 배치 ····· 58

4. 의원등록 ····· 58

제2절 원구성 및 개원 ····· 59

1. 집회공고 ····· 59

2. 본회의장 의석배정 ····· 59

3. 제1차본회의(의장단선거) ····· 59

4. 의장단 선거실시 결과 ····· 59

5. 개원식 ····· 60

6. 개원사 ····· 61

7. 축 사 ····· 62

제4장 집회현황

제1절 회의개최현황 ····· 67

1. 집회일람 ····· 67

2. 연도별 회의개최일람 ····· 67

3. 회기별 집회 및 본회의 개최일람 ····· 68
제2절 안건처리현황 ····· 69
1. 회기별 안건처리현황 ····· 69
2. 주요안건 처리내역 ····· 70
3. 진정서 처리현황 ····· 74

제5장 회의개최

제1절 제1회 임시회 ····· 77
1. 개최배경 ····· 77
2. 의사일정 ····· 77
3. 본회의 활동 ····· 78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79
□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안)등 4건 ····· 79
□ 울산광역시북구조례안 90건 ····· 80
□ 97년도 울산광역시북구세입 · 세출(안) ····· 90
제2절 제2회 임시회 ····· 95
1. 개최배경 ····· 95
2. 개회사 ····· 95
3. 의사일정 ····· 97
4. 본회의 활동 ····· 97
5.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98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 98
□ 울산광역시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 ····· 99
6. 질의 · 답변 요약서 ····· 101
제3절 제3회 임시회 ····· 128
1. 개최배경 ····· 128

2. 개회사 ····· 128
3. 의사일정 ····· 130
4. 본회의 활동 ····· 130
5.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131
□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31
□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133
6. 질의 · 답변요약서 ····· 136
제4절 제4회 임시회 ····· 139
1. 개최배경 ····· 139
2. 개회사 ····· 139
3. 의사일정 ····· 141
4. 본회의 활동 ····· 142
5.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143
□ 97년도제1회일반 · 특별회계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 ····· 143
6. 질의 · 답변 요약서 ····· 151
제5절 제5회 정기회 ····· 154
1. 개최배경 ····· 154
2. 개회사 ····· 154
3. 의사일정 ····· 156
4. 본회의 활동 ····· 160
5.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164
□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164
□ '98당초일반 · 특별회계세입 · 세출예산(안) ····· 166
□ 청사정비기금차입의결의건 ····· 170
□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172
□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174

□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75
□ 울산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176
□ '97제2회일반 · 특별회계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 ····· 178
6. 질의 · 답변 요약서 ····· 183
제6절 제6회 임시회 ····· 192
1.개최배경 ····· 192
2. 개회사 ····· 192
3. 의사일정 ····· 194
4. 본회의 활동 ····· 195
5.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197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 197
6. 질의 · 답변 요약서 ····· 198
제7절 제7회 임시회 ····· 219
1. 개최배경 ····· 219
2. 개회사 ····· 219
3. 의사일정 ····· 221
4. 본회의 활동 ····· 221
5. 주요안건 처리경과 및 결과 ····· 222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222
□ 울산광역시북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23
□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25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 226
6. 질의 · 답변 요약서 ····· 228
제8절 제8회 임시회 ····· 233
1. 개최배경 ····· 233
2. 개회사 ····· 233

3. 의사일정 ····· 235
4. 본회의 활동 ····· 235
5.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237
□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37
□ 울산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238
□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39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 240
6. 질의 · 답변 요약서 ····· 242
제9절 제9회 임시회 ····· 245
1. 개최배경 ····· 245
2. 개회사 ····· 245
3. 의사일정 ····· 247
4. 본회의 활동 ····· 247
5.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248
□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 · 특별회계세입 · 세출(안) ····· 248
6. 질의 · 답변 요약서 ····· 253
제10절 제10회 임시회 ····· 258
1. 개최배경 ····· 258
2. 개회사 ····· 258
3. 구청장 인사 ····· 260
4. 의사일정 ····· 263
5. 본회의 활동 ····· 263
6.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264
□ 울산광역시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안) ····· 264
□ 울산광역시북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 265
□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266

□ 울산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 268
□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269
□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 270
7. 질의 : 답변 요약서 ····· 272

제6장 행정사무감사

제1절 '97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281
1. 감사목적 ····· 281
2. 감사기간 ····· 281
3. 감사주체 ····· 281
4. 감사실시기관 및 출석요구 공무원 ····· 282
5. 감사자료제출 요구현황 ····· 283
6. 감사일정별 감사대상기관 및 장소 ····· 283
7. 감사 진행순서 ····· 284
8. 증인 선서방식 ····· 284
9. '97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현황 ····· 286
제2절 '97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 287
1. 감사목적 ····· 287
2. 감사기간 ····· 287
3. 감사실시대상기관 ····· 287
4. 감사실시경과 ····· 288
5. 주요 감사실시내용 ····· 291
6. 감사 종합의견 ····· 297
제3절 '97행정사무감사시정·건의사항 및 처리결과 ····· 298
1. 시정요구사항 총괄 ····· 298
2.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서 ····· 299

3. 건의사항 총괄 ····· 316
4. 건의사항 처리결과서 ····· 317
제4절 주요질의 · 답변 요약서 ····· 337

제7장 기타 의정활동

제1절 구정질문 ····· 353
1. 구정질문현황 ····· 353
2. 제9회 임시회 구정질문 ····· 353
제2절 주요의정활동사항 ····· 369
1. 북구청사 건립추진 ····· 369
2. 사치성재산 중과세부과 ····· 378
제3절 일자별 의정활동사항 ····· 383

〔附 錄〕

1. 초대의원현황 ····· 393
□ 의원프로필 ····· 394
2. 의회사무국 공무원현황 ····· 396

제1장

일반현황

제1절 우리고장의 연혁

제2절 구정기본현황

제3절 지방자치연혁

제4절 의회일반현황

제1장 일반현황

제1절 우리고장의 연혁

○ 부족국가시대

· 삼한시대에는 진한에 속하였으며, 굴아화촌이라는 촌락 형성

○ 삼국시대

· 신라 제35대 경덕왕 16년에 지명을 하곡으로 개칭, 임관군에 속함.

○ 고려시대

· 태조때 하곡, 동진, 우풍현을 합하여 흥려부로 승격

· 제16대 현종때 울주로 개칭

○ 조선시대

· 제3대 태종 13년 울주를 울산으로, 선조 31년 울산도호부로 승격, 고종 32년 울산군으로 개칭.

○ 근　　대

· 1941년 부군 정리폐합하는 지방제도 개편시 언양군을 울산군에 병합하고 울산면, 사항면, 대현면으로 행정구역 개편.

○ 현　　대

· 1962. 2. 1 : 각령 제403호로 울산특정공업지구로 지정 공포

(당시 농소면, 송정, 화봉리 편입)

· 1962. 6. 1 : 법률 제1086호로 울산시로 승격

(울산군을 울주군으로 명칭변경)

· 1985. 7. 15 : 대통령령 제11716호로 구제실시

(2구(중 · 남구) 1출장소 40개동)

· 1985. 7. 15 : 시조례 제1083호로 중구 방어진 출장소 설치

· 1988. 1. 1 : 대통령령 제12367호로 방어진출장소→동구청으로 승격

(3구 40개동)

(울주군→울산군으로 명칭변경)

· 1995. 1. 1 : 법률 제4081호로 울산시 · 군 · 도 · 농통합

(울산군→울주구로 명칭변경)

· 1995. 3. 2 : 농소면→농소읍으로 승격

· 1996. 12. 31 : 법률 제5243호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 공포

(북구는 종전 울산시 중구 송정, 효문, 진장, 양정동과 울주구 농소읍, 강동면으로 구역획정)

· 1997. 7. 15 : 울산광역시 및 북구설치 (신설)→8개동

(농소읍→농소1, 2, 3동, 강동면→강동동으로 전환)

· 1998. 3. 1 : 대통령령 제15652호로 동구 염포동이 북구로 편입→9개동

제2절 구정일반 · 통계현황

1. 지역여건

○ 주거, 공단, 해양관광, 수산의 3개 권역별 지역 · 기능적 구분

○ 주민생활 및 의식의 도시 · 농촌적 요소 공존

○ 신개발지로서 도시기반시설 미비와 행정수요의 다양

2. 구정현황

□ 면　　적

○ 행정구역 ———— 157.22㎢(울산광역시의 14.9%)

○ 도시계획구역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 지 정
100.82㎢	4.25	0.3	9.35	86.92	-

※개발제한구역 80.41㎢

○ 지목별 면적

계	대 지	전	답	임 야	과수원	도 로	잡종지	기 타
157.22	3.85	7.70	21.59	102.87	0.66	3.64	2.05	14.86
100%	2.5	4.9	13.7	65.4	0.4	2.3	1.3	9.5

□ 인　　구

('98.7.31현재)

가 구	총 인 구 수			외 국 인 등 록 수
	계	남	여	
세대 35,255	명 115,703	60,379	55,324	483

□ 행정조직

○ 기　　구

구 분	본 청	사 업 소	동
현황	2실2국12과50계	1사업소(보건소)1과4계	9개동

○ 공 무 원

계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424 명	267	11	32	114

○ 예　　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정자립도
97년도	22,185	21,279	906	32.5%
98년도	37,973	35,586	2,387	37.2%

3. 구민생활

□ 보건복지

식품위생	공중위생	의료시설		생활보호대상자(세대/명)			1일쓰레기 수거량	1일분뇨 수거량
		기관	병원수	소계	거택	자활		
개소 997	개소 309	64	164	391 / 753	244 / 437	147 / 316	66ton (100%)	57ton (88.4%)

□ 기업체 현황

계		대기업(500인 이상)		중 소 기 업	
업 체 수	종업원수	업 체 수	종업원수	업 체 수	종업원수
364	43,234	6	35,891	358	7,343

□ 도시건설

도로				주택	상수도			하수도		
길이	도로율	포장도	포장율	보급율	1일 급수량	1인1일 당 급수 량	보급율	총인구	보 급 인 구	보급율
km 367	% 18.19	km 197	% 94.61	28.125 90.5%	ton/일 5,400	369 l	% 56.4	명 115,099	52,025	45.2%

□ 교 통

자동차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32,160대	25,374	1,560	4,825	401

□ 교 육

(개교/학생수)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15개교 명 19,032	9 12,372	5 5,134	1 1,526		

4. 동별인구 · 면적현황

'98.7.31 현재

구 분	면 적 (㎢)	법정동	통	세 대 수	인 구 수	지 역 여 건 및 특 성
계	157.22	29	167	35,255	115,703	
農所1洞	16.02	4	16	4,849	16,962	농소라는 말은 고대 태조때의 박윤웅공의 식읍지(食邑地)인데서 생긴말이며, 97. 7. 15 농소읍에서 농소1, 2, 3동으로 분동되었고, 아파트단지가 많고 농촌에서 급격한 도시화가 되고있는 공단배후의 주거지역
農所2洞	10.98	3	20	6,418	22,537	
農所3洞	30.31	5	21	5,418	18,067	
江東洞	60.61	9	19	1,867	5,486	신라초에 율포현이 있고 울산지역의 동쪽이며, 97. 7. 15 면에서 동으로 변경되었고, 해수욕장과 산과 바다가 조화된 관광지역이며 국제규격의 강동축구장이 있음
珍庄洞	5.85	2	4	509	1,489	이조때 좌병영의 습진터(習陣場)의 역사성을 고려하여 진장이라고 하였으며 도시근교 농촌지역
孝門洞	10.44	2	23	4,479	14,775	세종때 효자였던 송도의 효성을 기리기 위해 효문이라 하였으며, 중소기업이 많은 순공업지역
松亭洞	10.75	2	17	3,591	12,875	큰노송들이 많이 우거져있고 좋은 정자가 있었다하여 송정이라고 하였으며, 울산공항이 있고 북구 중심의 교통요충지역
楊亭洞	6.72	1	23	4,810	13,050	영조때 오정리와 양정리의 두마을이 있었으며 우리나라 대기업인 현대자동차 회사가 있고, 3,700여평의 체육공원이 있음
鹽浦洞	5.54	1	24	3,314	10,462	염포는 이조때 수군의 군사기지와 왜인회유책으로 개항한 제포와 부산포 등 3포의 하나였으며 현대강관, 현대정공 회사가 있음

5. 울산광역시 구 · 군일반현황

□ 인구 · 면적현황

구분 / 구·군별	면적 (㎢)	인구(천명) '95	'98	증가율	인구밀도 (인/㎢)	가구 계	농가	비농가
계	1,055.7	969	1,014	4.6%	959	309,604	13,721	295,883
중 구	37.0	284	235	△17.3%	6,351	72,531	494	72,037
남 구	71.3	305	320	4.9%	4,488	98,110	483	97,627
동 구	35.6	192	190		5,337	55,138	153	54,985
북 구	**157.2**	-	**116**		**738**	**35,255**	**2,534**	**32,721**
울주군	754.6	188	153	△18.6%	202	48,570	10,057	38,512

□ 재정규모현황

구분 / 구·군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정자립도
계	1,047,022 (시)768,486	760,068 (시)495,448	286,954 (시)273,038	68.8% (시)77.0%
중 구	49,487	47,030	2,457	33.4%
남 구	65,640	62,116	3,524	61.3%
동 구	38,409	36,790	1,619	51.5%
북 구	**37,973**	**35,586**	**2,387**	**37.2%**
울주군	87,027	83,098	3,939	67.0%

제3절 지방자치연혁

□ **大韓民國政府樹立 以後**

- 1952. 4. 25 : 初代 邑 · 面議員 選擧(56名)
- 1956. 8. 8 : 第2代 邑 · 面議員 選擧(50名)
- 1960. 12. 19 : 第3代 邑 · 面議員 選擧(50名)
- 1961. 9. 1 : 蔚山邑 · 面議員 解散

□ **蔚山市 昇格 以後**

- 1991. 3. 26 : 蔚山市議會 議員 選擧(50名)
- 1991. 4. 15 : 初代 蔚山市議會 開院
  · 임기:91.4.15~95.6.30
- 1992. 7. 12 : 蔚山市議會 議員 補闕選擧(中 · 南 · 東區 各 1名)
- 1993. 7. 10 : 蔚山市議會 議員 補闕選擧(東區 1名)

□ **蔚山市 · 郡 統合 以後**

- 1995. 1. 10 : 蔚山市 · 郡 統合 蔚山市議會 開院(64名)
- 1995. 6. 27 : 第1回 全國同時地方選擧
- 1995. 7. 11 : 第2代 蔚山市議會 開院(60名)
  · 임기:95.7.1~98.6.30

□ **蔚山廣域市 昇格 및 北區議會設置**

- 1997. 7. 15 : 初代 蔚山廣域市北區議會 開院(7名)
  · 임기:97.7.15~98.6.30
- 1997. 7. 15 : 初代 蔚山廣域市議會 開院(72名)
- 1998. 3. 1 : 東區 鹽浦洞 選擧區 北區 編入(8名)
- 1998. 6. 4 : 第2回 全國同時地方選擧
- 1998. 7. 7 : 第2代 蔚山廣域市北區議會 開院(8名)
  · 임기:98.7.1~2002.6.30

제4절 의회일반현황

1. 의회설치

□ 의회신설

○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개발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울산광역시를 설치코자 하는 법률 제5243호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이 1996년 12월 31일자로 공포되었으며, 준비기간을 거쳐 1997년 7월 15일자로 蔚山廣域市 및 4區 1郡이 設置되었고, 지방자치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議會가 新設되었음.

□ 의사당 위치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585-9번지(한국담배인삼공사건물)

○ 건물규모 : 임대 북구청사 7층에 본회의장, 소회의실, 의장실, 부의장실, 사무국장실 등 105평의 좁은 공간을 사용하였음.

□ 의회의원정수규정 및 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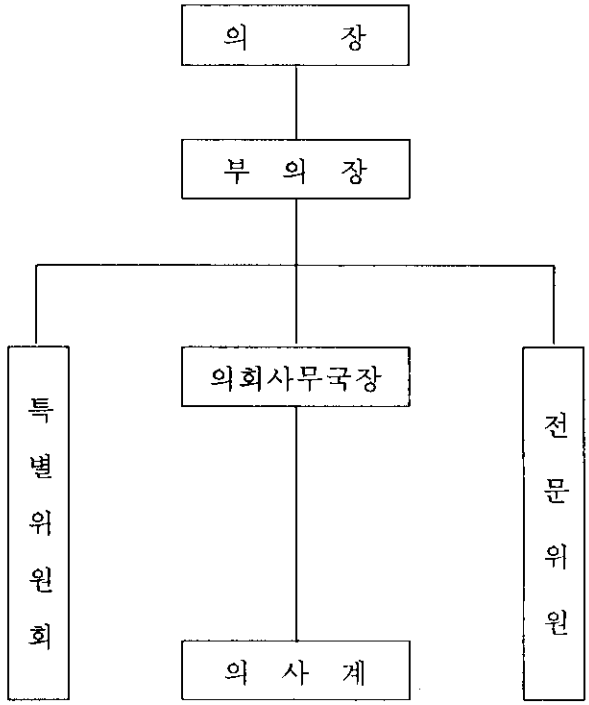
○ 법률 제5243호(96.12.31)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시의회의원과 울산시에서 선출된 경상남도의회의원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의원정수 규정에 불구하고 蔚山廣域市議會議員과 그 선출된 선거구를 관할하는 區 또는 郡의 議會議員을 겸임토록 규정되었음.

□ 의회의원정수

○ 97. 7. 15(신설당시) : 7명

○ 98. 3. 2(동구 염포동이 북구편입) : 8명

2. 의회기구



3. 의원선거구(설치당시)

구분	경상남도 의회의원	울 산 시 의 회 의 원						
計	第10選擧區	農所	江東	珍庄	孝門	松亭	楊亭	鹽浦
8	1	1	1	1	1	1	1	1

4. 의원현황

□ 직업별

직업 / 의원	농 업	상 업	언론인	회사원	자영업 (사업체운영)	기 타
8	1	1	1	1	2	2

□ 학력별

학력 / 의원수	독학	국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퇴	대졸	대학원 수 료
8		1	1	6			1	

□ 연령별

연령 / 의원수	35세미만	35-40	41-45	46-50	51-55	56-60	60이상
8		1		2		3	2

□ 성 별

의 원 수	계	남	여	비 고
8	8	8		

5. 의회예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일 반 회 계		
	계	의사운영	의정활동
계	925,482	725,588	199,894
1997년도	313,963	250,509	63,454
1998년도	611,519	475,079	136,440

6. 의사당 시설현황

○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585-9

○ 면적 : 북구청 7층 346㎡(105평)

(단위 : ㎡(평))

시 설 명	전용면적(105)	비 고
본 회 의 장	108.1(32.7)	
소 회 의 실	73.1(22)	의원실 겸용
의 장 실	45.2(13.6)	
부 의 장 실	29.1(8.8)	
사 무 국 장 실	27.1(8.2)	
의 회 사 무 국 사 무 실	63.4(19.1)	

7. 의회사무국 직원현황

직위 및 직급	정원	현원	비 고
계	11	11	
4 급 (사 무 국 장)	1	1	
5 급 (전 문 위 원)	1	1	
6 급 (의 사 계 장)	1	1	
7 급 (행 정 직)	3	3	
9 급 (행 정 직)	1	1	
기 능 직	4	4	운전원1, 필기원1, 속기원2

※ 8급행정직에서 9급행정직으로 정원규칙 조정(97.12.2)

제2장

의정소감

○ 북구의회 초석이 되면서
(김성보 의 장)

○ 진정한 지방자치란?
(윤두환 부의장)

○ 의정활동을 마감하면서
(이상원 의 원)

○ 자기개혁과 반성은 정치권과 공공부분부터
(진한걸 의 원)

○ 진정한 지방자치는 "자치"와 "분권"
(조승수 의 원)



제2장 의정소감

북구의회의 초석이 되면서

김 성 보 의장

친애하는 북구주민 여러분!

외환위기로 IMF의 긴급구제금융이 지원된 이후 우리 경제는 회생의 몸부림을 치며 우리 사회에 많은 충격과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국가적, 사회적 어려움속에서도 초대북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일년이 지났고, 저는 7년간의 짧지않은 모든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초대 북구의회 의장을 지냈던 지난 일년을 되돌아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동안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과 초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당시 북구행정을 이끌어오신 황성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우리는 100만 시민의 기대와 여망속에서 역사적인 울산광역시 승격을 맞이하여 전 시민의 환영과 기쁨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 북구가 당시 울주구와 중구일부를 합하여 새로운 신설 자치구로 탄생하게 되었으나, 신설구로서 행정여건과 도시기반시설 등 모든면에서 열악한 조건으로 황무지에서 출발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우리 북구의회는 기존 시의원 여섯명과 경남도의원 한명 등 일곱명의 최소단위

의원으로 구성되어 저는 초대 북구의회 의장에 취임하게 되었으며, 금년 삼월에는 염포동이 북구에 편입됨으로써 의원수는 여덟명이 되었습니다.

'91년 풀뿌리 민주주의가 부활되면서부터 지방의원의 길을 걸어왔지만 신설구의회 의장으로서 집행부와의 관계정립과, 당면한 현안사업추진, 특히 북구청사의 조기 건립문제 그리고 각종 의정활동과 의회운영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저의 의원생활 육년보다도 지난 일년이 더 길고 힘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사에 선례가 없었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겸임하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각종 민원처리 등 바쁜 의사일정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초대 북구의회는 의회개원을 비롯한 의사진행과 안건심사, 각종 의정활동등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미래 북구의회의 기반을 다지며 튼튼한 초석을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 지방기초의원과 북구의회의장을 지내오면서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구조적 모순과 무보수 명예직이란 지방의원의 위치와 역할, 지방의원의 전문성, 단체장과 공무원의 의회에 대한 인식전환 문제 등 몇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체험하기도 하였으나 현행 지방자치의 일천함으로 생각하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으로 대변되는 지방자치가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실시한 지방자치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소시민으로 돌아가지만 그동안 나름대로 쌓아온 의정경험을 통하여 우리 북구와 지역발전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해 뒤에서 봉사하고자 하며 다시 한번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란?

윤 두 환 부의장

지난해 우리는 심각한 경제난속에서도 100만 시민의 뜨거운 성원속에서 역사적인 울산광역시가 승격되었으며 11만 지역주민의 기대속에서 북구가 신설 자치구로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와 지방화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지난 91년 30여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로 제가 지방의원에 길을 걸어온 지도 어느덧 7년이란 무수한 세월이 흘렀으며, 광역시의원과 초대북구의회 부의장으로서 의정활동을 펴온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북구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초대북구의회의 부의장으로서 지난 1년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감을 간단히 피력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지금까지 반쪽 지방자치를 해왔으며 지난 95년 민선자치단체장이 등장함으로써 완전 지방자치가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다운 지방자치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요원한 지방자치제도속에서 신설구로서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북구의회가 개원하여 당면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각종 민원해결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뛰어왔지만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집행부 역시 행정여건이나 각종 취약한 도시기반시설 등 신설구에 따르는 급증하는 행정수요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설북구 1년은 집행부나 의회 모두가 자치구로서 정착과 독자적 발전의 기반을 다진 하나의 과도기 상태였다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 구청장이 취임하므로써 북구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모습을 갖추게 되기는 하였으나 지난 1년의 과정을 돌이켜 볼 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길을 가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를 보면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의 목적이 행정의 민주화와 능률화, 조화와 균형을 이룬 지역발전 그리고 국가의 민주발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적으로 최소한의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자치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당초 목적을 무색케 할 수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능력향상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지방자치의 발전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자치입법권이나 지방재정자치권의 확대 및 지방재정력 향상과 지방의원의 유급 전임직으로서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문제 등은 지방자치의 성공을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며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방자치의 앞날은 그다지 밝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지방자치를 실제적으로 이끌어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련공무원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재고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들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가 발전하듯 우리의 지방자치도 시간과 더불어 발전하리라 믿으며 또한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의정활동을 마감하면서……

이 상 원 의원

1995년 6월 27일 지방선거에서 나는 울산제 10선거구(농소, 강동, 범서, 웅촌, 삼동)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무소속으로 제5대 경상남도의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그해 7월 14일부터 경남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동안 농소지역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과 대통령선거인단으로 당선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세번째의 주민의 직접선거에서의 당선은 내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큰힘이 되었다. 경남도의회 무소속 동우회 부회장과 96년도 예산결산위원, 96년도 결산검사위원 등 중책을 맡아 활동하면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농소, 강동 등 선거구역 내에 28억원의 도비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고 각종 민원해결에 밤과 낮이 없었다.

교통이 불편하여 도의회가 열릴때면 새벽에 출발하여 밤늦게 돌아오면서 차에서 새우잠을 자면서도 의원의 본연의 의무인 대의기능과 감시기능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며 울산출신 의원이기에 100만 울산시민의 숙원이던 울산광역시 승격을 위하여 동료의원을 설득시키기 위하여 경남도를 세차례나 순방하는 초조한 걸음도 감내해야 했다.

울산광역시 승격안이 도의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될 때 성취감에 따른 희열을 맛보기도 했다. 울산출신 경남도의원들은 97년 7월 14일 경남도의회 동료의원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어야 했다. 다음날인 7월 15일은 대망의 울산광역시 승격일, 나는 울산광역시 승격과 함께 초대 울산광역시 의원과 초대 북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해야 했다. 울산출신 경남도의원 12명은 허탈한 심정을 억누르며 온갖 수모를 감내해야 했다. 읍면동 출신의 기초의원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은 도의원들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고 의정활동의 공백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경남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나의 선거구역인 울산제10선거구에 28억원의 도비를 지원받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산재한 많은 아파트 입주자를 위하여 하자보수, 식수해결, 준공검사 등 폭주하는 민원해결에 밤과 낮이 없었기에 경남도의원으로서 정말 후회없는 의정활동을 마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울산광역시 승격에 관한 특별법에는 울산출신 경남도의원에게 울산광역시 의원과 구의원을 겸하도록 하여 의정활동에 혼선을 가져와야 했다. 그러나 오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앞만 보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못마땅하여 자신의 입신출세를 위하여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망각한 채 가장 깨끗하고 인자한 척하면서 가족과 주위사람까지 충동질하여 친구도 동료의원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함하는 못난 인간과 글을 배우기는 커녕 초등학교 은사라는 기억에도 없는 사람이 교육위원에 출마하여 담임을 했다고 허위진술을 하면서 집도 모르는 자기집에 찾아와서 돈을 요구했다는 비정하고 못난 스승(?)도 덩달아 누명을 씌워 나는 죄없는 죄인이 되어 의정활동에 공백을 초래하여야 했고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일에 차질을 가져왔으며 내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과 한을 남겼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들을 용납할 수 없으나 먼 훗날 반성하고 용서를 구할때 관용을 베풀 수 있으리라.

초대 북구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마감하게 되니 너무도 착잡한 심정이며 짧은 기간이지만 할 일 많은 북구와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아쉬움이 많아 후회스러움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제 언론인의 한사람으로서 내 사랑하는 고장 북구와 북구주민을 위하여, 그리고 100만 울산광역시민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북구지역 주민모두에게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가정엔 항상 행운이 충만하길 빌고 또 빌며 미력이나마 북구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자기개혁과 반성은 정치권과 공공부분부터

진 한 걸 의원

북구의정백서 발간에 따른 의정소감 원고 청탁을 받고보니, 무엇을 어떻게 쓰야할 지 한동안 고민 됐습니다.

1년전 북구 개청을 앞두고 임시청사 위치 선정을 놓고 벌어진 그당시 논란과 결론은 현재 시자체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스며 있기에 다시 한번 고집해 보고자 합니다.

재정상 열악한 북구가 임시청사를 왜 북구관내 시유지를 두고, 현재 남구의 담배인삼공사 건물(1천여평)을 년간 6억2,000만원 임대하는 방식으로 결정난 당시의 배경에는 현재 우리 행정의 무소신과 무책임, 소지역 이기주의 등이 함축되어 난 결론이었슴을 단언하면서, 한번의 판단오류가 구민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주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11만5천 구민들이 이용할 구청의 위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의 효율성, 교통편의성, 행정 접근성, 민원 이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해당 구의 중심 지역에 건립이 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시 북구청 설치준비단은 북구청 임시 청사 위치를 처음부터 북구지역에 선정한다는 대전제하에 북구관내 시유지는 물론 개인 사유지 등 포함한 광범위한 부지를 조사 검토한 끝에 대상부지를 9개소 중 여타 7개소는 관련법규 저촉 등으로 건물신축이 불가하고 2개소(양정동 정수장부지와 농소읍 상안리)만 가능

함에 따라 두 곳으로 압축하여 한 곳을 택한다는 원칙으로 진행되어 가다가 결론 없는 지리한 회의반복과 집행부의 무소신으로 45일이상 시간만 낭비한 채 급기야 개청의 일정 촉박으로 양심지역 조립식으로 건립할 시 집행부의 느닷없이 갑자기 조립식 내구년한이 어떠니, 장마철 雨期니 하며, 처음부터 논의되어온 양정, 농소 지역을 배제한 채 지금의 담배인삼공사 건물임대 쪽으로 방향선회를 유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1만 구민의 편의를 외면한 남구지역의 건물 임대방식 결정은 선거를 다분히 의식한 무책임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북구청사를 북구도 아닌 남구에 있는 담배인삼공사의 협소한 1천여평 건물을 년간 임대료 6억2천만원 임대료를 주고 임대로 결정 난것은 2년이내 본청사 완공을 전제로 했지만 현재 본청사건립은 언제 완공될 지 아무도 모릅니다. 북구의 재정상 관내에 있는 양정동 구 정수장 부지인 시유지에 임시청사를 건립하여, 본청사 건립까지 청사로 활용하다가 본청사로 이전후에는 그 자리에 市·區산하 사업소나 기타 구민회관으로 재활용할 경우 예산의 효율성이 극대화됨은 재론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힌 상식이하의 결정이 난것은 당시 공직자들의 예산에 대한 인식이 구민의 혈세 개념이 아니라 쓰고 나면 지하에서 또 나오는 샘물로 생각하는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현 임시청사의 극심한 주차난과 북구청이 남구에 있는 관계로 많은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 할 뿐만 아니라, 본 청사를 2년이내 준공을 전제로 임대한 임시청사는 공사 지연에 따른 대책도 없이 매년 6억2천만원의 임대료 지불은 북구청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37%에 그치는 북구청이 시유지를 두고도 임대로 인한 예산 낭비의 책임은 어느 누구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국가적 위기 시대에 사회의 어느 분야보다도 스스로 먼저 책임을 통감하고 뼈를 깎는 자기개혁과 반성은 정치권과 공공부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직적 현 조직개념을 수평적 조직개념인 팀제로 개편하고, 공직사회 내부 깊숙히 잠재되어 있는 문서행정 습성 폐단이 낳은 현 직제순과 승진우선 부서를 현

재의 간접부서가 아니라, 구민에게 헌신적이고, 창의적인 청백리 공무원이면 누구라도 먼저 승진되어야 합니다. 어느 부서에 근무하든 세월만 흐르면 좋은 자리에 가고, 또 세월이 흐르면 승진한다는 기존 관행대로 인사를 한다면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고 봅니다.

임용일이 늦어도 구민에게 헌신적인 자세로 봉사하고 창조적인 노력으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서 자치행정발전에 기여한다면 대접받는 인사개혁이 요구됩니다.

현재의 공무원 종신 고용으로는 그 무엇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책임성과 경쟁력은 상급자의 지시나, 엄포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시스템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공무원 채용시 계약직 등으로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해야만 경쟁력이 창출됨을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국난은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모든 행정행위의 실명제로 책임있는 구정을 기대하며 구민과 아픔을 함께하는 북구의 역동성의 한 축이 되도록 모든 공직자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자치"와 "분권"

조 승 수 의원

과거에는 근대화의 부족으로부터 생기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은 근대화가 몰고 온 노동문제(고용 · 실업문제), 다양한 도시문제, 환경문제, 복지문제, 교육문제 등 "삶의 질"의 결핍을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이 변화해야 합니다. 문제해결의 절반은 행정의 몫입니다. 주민이 고통 받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삶을 영위하고 있는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정치참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고, 압력하는 것을 통해 주민이 실질적인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또 다른 절반의 몫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와 '분권'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는 '행정'과 '사무'에 머무르고 있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올바른 지방자치가 정착되려면 '주민자치'와 '자치단체의 분권'이 관건입니다.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례제정발의와 시정의 견제 역할 등 지방의원으로서 보람찬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욕에 비해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도 많이 느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 원년을 맞아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공동체, 환경과 개

발이 조화된 환경공동체, 주민 참여로 운영되는 자치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와 의회, 지역주민이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노력한다면 지방자치는 빠른 시일에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제3장

의원개원 및 원구성

제1절 개원준비

제2절 원구성 및 개원

제3장 의회개원 및 원구성

제1절 개원준비

1. 의회사무국 설치

○ 19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3호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울산광역시북구청 개청준비단이 97. 1. 17 발족되어 황성환 단장으로 한 준비요원들이 북구의회 개원을 위하여 각종의회관련 법규정비와 개원준비를 차질없이 하여 97. 7. 15 울산광역시북구청 개청과 더불어 직원 11명(국장 1, 전문위원 1, 직원 9)으로 의회사무국이 설치되었음.

2. 의회관련 조례 · 규칙 제정

○ 의회설치에 따라 관계법규에 의거 의회관련법규 14건을 제정 공포

조 례	규 칙
1.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의설치 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2.울산광역시북구의회공인조례 3.울산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4.울산광역시북구의회에출석 · 답변할 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5.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6.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 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7.울산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 및운영에관한조례 8.울산광역시북구의회에서증인등비 용지급에관한조례 9.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 상금지급에관한조례	1.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2.울산광역시북구의회청원심사규칙 3.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4.울산광역시북구의회기및울산광역 시북구의회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5.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

3. 의회청사 집기 배치

○ '97. 7. 10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585-9번지 한국담배인삼공사 건물내(북구청 7층)에 임시의회 청사로 지정하여 본회의장, 소회의실, 의장실, 부의장실, 사무국장실, 사무국 등을 배정하고 집기와 음향기기 방송장비 등을 설치하여 역사적인 제1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개원준비를 하였음.

4. 의원등록

○ '96. 12. 31 법률제5243호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 부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구관할구역 출신인 경상남도의회의원 제10선거구, 울산시의회 의원선거구인 농소읍, 강동면, 진장동,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출신의원 7명이 '97. 7. 15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으로 등록하였으며

○ '98. 2. 24 대통령령 제1562에 의한 "광주광역시북구등4개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3월 1일 울산광역시 동구 관할구역중 염포동지역이 북구로 행정구역이 조정됨에 따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염포동선거구 조승수의원이 98. 3. 2자로 북구의회의원으로 신고 등록하게 되어 의원정수가 7명에서 8명으로 증가하게 되었음.

제2절 원구성 및 개원

1. 집회공고

최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7월15일09시에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 집회공고 하였으며 집회일시는 97년7월15일20시로 공고하였음.

2. 본회의장 의석배정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의석을 배정

3. 제1차본회의(의장단 선거)

97년7월15일 20시에 개회된 제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7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김성보의원의 사회로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하고 당선된 김성보의장의 사회로 부의장을 선출하였으며, 의장에 김성보의원, 부의장에 윤두환의원을 선출하였음.

4. 의장단선거 실시결과

○ 투표참석 의원 : 7명

○ 선거방법 : 무기명 투표실시

구 분	1차	2차	3차
의 장	정석수 3표 한성두 3표 무 효 1표	정석수 3표 김성보 3표 기 권 1표	정석수 3표 김성보 3표 무 효 1표
부 의 장	윤두환 4표 진한걸 2표 기 권 1표	1	1

○ 회의규칙 제8조 제3항에 의거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때는 연장자를 당선토록 되어 있어 김성보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

○ 부의장은 과반수를 얻어 윤두환의원이 당선되었음.

5. 개 원 식

○ 개원식은 98년 7월 15일 21시에 북구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의원 7명과 황성환북구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2명과 유관기관 단체·주민 등 20여명이 초청된 가운데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음.

개 원 식 순 서

- 개 원 식
-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의원선서
- 개 원 사(의 장)
- 축 사(구청장)
- 폐 식

6. 개 원 사

친애하는 구민여러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황성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역사적인 울산광역시 출범과 더불어 신설 북구개청과 북구의회 개원의 희망찬 새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뜻깊은 북구의회 개원에 즈음하여 자치구 발전의 벅찬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완성하기 위해 동료의원 모두가 온 정성을 다하여 헌신과 봉사의 정신으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북구의원 여러분께서는 신설 자치구의 개원과 더불어 공업과 농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도농형태의 자치구 발전을 위해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해결사의 역할과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대변할 대변자로서 막중한 책무와 의무를 다해야 하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년동안 의원 각자의 소명의식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여 오면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초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기초를 굳게 다지고 21세기를 눈앞에 둔 무한한 경쟁의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살기좋은 북구 건설에 의원 모두가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임시청사에서 개원식을 개최합니다만 임시청사 시대를 조기에 청산하고 본청사를 건립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울산광역시 출범과 북구개청, 북구의회 개원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관계공무원들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회 개원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황성환 부구청장님과 내빈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7. 7. 15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장 **김 성 보**

7. 축 사

울산광역시북구부구청장 황성환입니다.

저는 지난 1월 29일 울산광역시북구설치준비단장을 맡은 바,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그간의 정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다시 의원여러분을 뵙게되어 반가운 마음이 그지 없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보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토록 염원하던 울산광역시 출범과 함께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신설되는 뜻깊은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지역의 발전과 울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왔습니다만 이제 북구의회가 신설됨에 따라 북구의 주민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는 물론 지방자치를 한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견인차적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개청되는 우리들의 북구는 공업과 농어업이 공존하는 지역적 특성을 지닌 반면 신주거단지로 급부상하면서 행정수요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 등이 제1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각종 현안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부의 의지가 조화를 이룰때 그 결실이 앞당겨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400여 북구 전공무원은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하는 한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살기좋은 북구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할 각오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구정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의회 의사당이 협소하고 시설또한 불비합니다만 본청사를 조기에 건립하여 명실상부한 의사당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보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축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7. 7. 15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직무대행 **황 성 환**

제4장

집회현황

○ 제1절 회의개최현황

○ 제2절 안건처리현황

제4장 집회현황

제1절 회의개최현황

1. 집회일람

'97.7.15~'98.6.30

구분	개회일수					회기일수	본회의 개의일수	비고
	임시회			정기회	총계			
	구청장 집회요구	의원 집회요구	계					
계	2	7	9	1	10회	60일	50일	
'97	1	3	4	1	5	46	37	
'98	1	4	5		5	14	13	

2. 연도별 의회개최 일람

□ 본회의

'97.7.15~'98.6.30

	정기회			임시회		
연도	회수	회기	차수	회수	회기	차수
계	1	35	20	9	25	23
1997년도	1	35	20	4	11	10
1998년도				5	14	13

※ 정기회 차수에 97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 제외됨.

3. 회기별 집회 및 본회의 개최일람

回別	會別	집회요구자	집 회 공고일	집회기간	회기	본 회 의 개회일수
제1회	임시회	북구청장	97. 7. 15	97. 7. 15	1	1
제2회	〃	윤두환의원외 2인	97. 7. 29	97. 8. 4 ~8. 6	3	3
제3회	〃	윤두환의원외 2인	97. 9. 18	97. 9. 24 ~9. 25	2	2
제4회	〃	이병우의원외 2인	97.10.24	97. 10. 31 ~11. 4	5	4
제5회	정기회		97. 11. 19	97. 11. 25 ~12. 29	35	27
제6회	임시회	윤두환의원외 2인	98. 2. 6	98. 2. 13 ~2. 19	7	6
제7회	〃	북구청장	98. 2. 23	98. 2. 26 ~2. 27	2	2
제8회	〃	정석수의원외 2인	98. 3. 20	98. 3. 26 ~3. 27	2	2
제9회	〃	한성두의원외 2인	98. 4. 22	98. 4. 28 ~4. 29	2	2
제10회	〃	조승수의원외 2인	98. 6. 9	98. 6. 15	1	1

제2절 안건처리현황

1. 회기별 안건처리현황

'97.7.15~'98.6.30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수	기 간	일수	계	예산안	결산	조례안	동의안(승인)	건의안	결의안	청원	보고	질문	기타
제1대의회 합 계		60일	159	5		112	2				6	1	33
소계	97년도	46일	127	4		100	2				2		19
제1회	97.7.15~97.7.15	1일	97	1		94							2
제2회	97.8.4~97.8.6	3일	5								1		4
제3회	97.9.24~97.9.25	2일	5			1							4
제4회	97.10.31~97.11.4	5일	6	1			1						4
제5회	97.11.25~97.12.29	35일	14	2		5	1				1		5
소계	98년도	14일	32	1		12					4	1	14
제6회	98.2.13~98.2.19	7일	4								1		3
제7회	98.2.26~98.2.27	2일	7			3					1		3
제8회	98.3.26~98.3.27	2일	8			3					1		4
제9회	98.4.28~98.4.29	2일	5	1							1	1	2
제10회	98.6.15~98.6.15	1일	8			6							2

2. 주요안건 처리내역

'97.7.15~'98.6.30 울산광역시북구의회

回數	會期(日數)	附議案件							
		議案番號	案件名	提出日時 및 提出(發議)者	本會議上程年月日(第次)	審議(議決)結果			
						委員會		本會議	
						年月日第回	結果	年月日(第次)	結果
1	97.7.15~7.15(1일)	1~4	•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안)등 4건	97.7.15 윤두환 의원외 4명	97.7.15 (제1차)			97.7.15 (제1차)	원안가결
		5~94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등 90건	97.7.15 구청장	〃			〃	원안가결
		95	• 97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			〃	원안가결
2	97.8.4~8.6(3일)	96	•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7.8.1 윤두환 의원외 1명	97.8.4 (제1차)			97.8.4 (제1차)	원안가결
			• 97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97.8.4~8.5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사회국, 보건소, 산업건설국, 의회사무국 보고
		97	• 울산광역시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	97.8.6 의장제의	97.8.6 (제3차)			97.8.6 (제3차)	추천: 정재룡 윤원기
3	97.9.24~9.25	98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7.8.26 구청장	97.9.24 제1차			97.9.24 (제1차)	원안가결

回數	會期(日數)	附議案件							
		議案番號	案件名	提出日時 및 提出(發議)者	本會議上程年月日(第次)	審議(議決)結果			
						委員會		本會議	
						年月日 第回	結果	年月日(第次)	結果
	(2일)	99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97.9.11 구청장	97.9.24 (제1차)			97.9.25 (제2차)	의견서 채택
		100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7.9.12 윤두환외1	97.9.24 (제1차)			97.9.24 (제1차)	원안 가결
4	97.10.31 ~ 11.4 (5일)	101	'98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97.10.28 구청장	97.11.4 (제4차)			97.11.4 (제4차)	원안 가결
		102	'97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7.10.28 구청장	97.10.31 (제1차)			97.11.4 (제4차)	수정 가결
		10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7.10.27 이병우외2	97.10.31 (제1차)			97.10.31 (제1차)	원안 가결
5	97.11.25 ~ 12.29 (35일)	104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7.11.18 구청장	97.12.23 (제18차)			97.12.23 (제18차)	원안 가결
		105	'98당초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7.11.21 구청장	97.11.25 (제1차)			97.12.22 (제17차)	원안 가결
		10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7.11.24 진한걸외1	97.11.25 (제4차)			97.11.25 (제1차)	원안 가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북구청사건립추진	97.12.15 구청장	97.12.15 (제12차)			97.12.15 (제12차)	총무과
		107	청사정비기금차입의결의건	97.12.9 구청장	97.12.15 (제12차)			97.12.15 (제12차)	원안 가결
		108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97.12.16 구청장	97.12.24 (제19차)			97.12.24 (제19차)	수정 가결
		109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97.12.16 구청장	97.12.24 (제19차)			97.12.26 (제20차)	원안 가결
		110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7.12.26 구청장	97.12.24 (제19차)			97.12.24 (제19차)	원안 가결
		111	울산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7.12.16 구청장	97.12.24 (제19차)			97.12.24 (제19차)	원안 가결
		112	'97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7.12.19 구청장	97.12.22 (제17차)			97.12.29 (제22차)	원안 가결

回數	會期(日數)	附議案件							
		議案番號	案件名	提出日時 및 提出(發議)者	本會議上程年月日(第次)	審議(議決)結果			
						委員會		本會議	
						年月日 第回	結果	年月日(第次)	結果
			'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 의결의건	97.12.29 의장	97.12.29 (제22차)			97.12.29 (제22차)	원안 가결
6	98. 2.13 ~2.19 (7일)	11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 의건	98.2.6 한성두외1	98.2.13 (제1차)			98.2.13 (제1차)	원안 가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98.2.10	98.2.13 (제1~6차)			98.2.13~19 (제1~6차)	전실 과소
7	98. 2.26 ~2.27 (2일)	114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 원조례중개정조례안	98.2.24 구청장	98.2.26 (제1차)			98.2.26 (제1차)	원안 가결
		115	울산광역시북구동명칭과구역획 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8.2.24 구청장	98.2.26 (제1차)			98.2.26 (제1차)	원안 가결
		116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 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8.2.24 구청장	98.2.26 (제1차)			98.2.26 (제1차)	원안 가결
		117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 의건	98.2.24 한성두외1	98.2.26 (제1차)			98.2.26 (재1차)	원안 가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오피스텔관련업무보고)	98.2.24	98.2.27 (제2차)			98.2.27 (제2차)	기획 감사실 지방세과 건축과
8	98. 3.26 ~3.27 (2일)	118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 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8.3.21 구청장	98.3.26 (제1차)			98.3.26 (제1차)	원안 가결
		119	울산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 회조례중개정조례(안)	98.3.21 구청장	98.3.26 (제1차)			98.3.26 (제1차)	원안 가결
		120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98.3.21 구청장	98.3.26 (제1차)			98.3.26 (제1차)	원안 가결
		121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 의건	98.3.21 구청장	98.3.26 (제1차)			98.3.26 (제1차)	원안 가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사치성재산부과에따른업무보고)	98.3.26	98.3.26 (제1차)			98.3.26 (제1차)	지방세과

回數	會期(日數)	附議案件							
		議案番號	案件名	提出日時 및 提出(發議)者	本會議上程年月日(第次)	審議(議決)結果			
						委員會		本會議	
						年月日 第回	結果	年月日(第次)	結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강동동사무소 안전진단결과 및 개보수 추진상황 •염포 해안도로 침하에 따른 대책 추진 상황 ○현장확인의건 •염포 해안도로 침하지역 •도로개설 민원 발생지역 •강동 어물동 교량상태 확인 •강동지역 오피스텔 •강동동사무소 균열상태 확인		98.3.27 (제2차)			98.3.27 (제2차)	
9	98. 4.28 ~4.29 (2일)	122	구정질문	98.6.8 진한결외2	98.4.29 (제2차)			98.4.29 (제2차)	
		123	'98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8.6.8 구청장	98.4.28 (제1차)			98.4.28 (제1차)	원안가결
10	98. 6.15 ~6.15 (1일)	124	울산광역시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안)	98.6.8 구청장	98.6.15 (제1차)			98.6.15 (제1차)	원안가결
		125	울산광역시북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98.6.8 구청장	98.6.15 (제1차)			98.6.15 (제1차)	원안가결
		126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8.6.8 구청장	98.6.15 (제1차)			98.6.15 (제1차)	원안가결
		127	울산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98.6.8 구청장	98.6.15 (제1차)			98.6.15 (제1차)	원안가결
		128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8.6.8 구청장	98.6.15 (제1차)			98.6.15 (제1차)	원안가결
		129	울산광역시북구보건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98.6.8 구청장	98.6.15 (제1차)			98.6.15 (제1차)	원안가결
		130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8.6.8 조승수외2	98.6.15 (제1차)			98.6.15 (제1차)	원안가결

3. 진정서 처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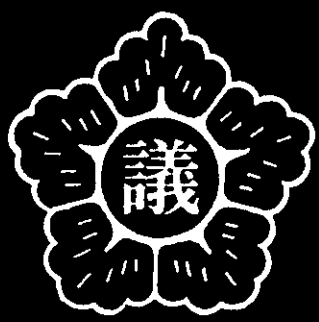
□ 진정서 처리내역

접수건수	처리결과				비고
	계	완료	추진중	불가	
2	2	2			

□ 진정서 처리내용

민원명	접수일자	처리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내용
계			2건		
상안교 조속건설 및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건의	97.8.14	97.8.20	북구 농소3동 상안동 680-1 이종운외 1,018명	• 동천강을 가로질러 농소1동과 농소3동을 연결하는 상안교는 안전진단결과 차량통행 불가로 잠수교를 이용하고 있으나, 호우시 시내버스 통행불가로 주민들이 불편하므로 상안교 조속건설과 상안교에서 달천회관까지 약 4㎞ 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하여 줄것을 건의함	• 97.8.18 건설도시과 이송처리 -상안교건설:부산국토관리청 및 진도건설 협조요청(98년말까지 시공조치)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 98년 구예산확보 시행검토
도시계획선 변경에 따른 진정	97.8.18	97.9.10	북구 강동 어물동 구암부락 통장 이원우 외 4명	• 북구 어물동.구암부락도로(지방도1027호)의 확장공사시 저촉건물이 많고 마을을 상·하로 횡단함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도시계획도로를 마을뒤로 우회변경 건의	• 97.8.20 건설도시과 이송처리 -도시계획 재정비시 참고 하겠음 (울산광역시)

제5장



회의개최

제 1 절 제 1 회 임시회
제 2 절 제 2 회 임시회
제 3 절 제 3 회 임시회
제 4 절 제 4 회 임시회
제 5 절 제 5 회 정기회
제 6 절 제 6 회 임시회
제 7 절 제 7 회 임시회
제 8 절 제 8 회 임시회
제 9 절 제 9 회 임시회
제10절 제10회 임시회

제5장 회의개최

제1절 제1회 임시회

1. 개최배경

○ 97년 7월 15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가 설치되어 종전의 울산지역 경상남도의회 의원 1명과 울산시의회 의원 6명 등 의원 7명으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직무대행으로 부구청장이 97년 7월 15일 집회일을 결정하여 공고함에 따라 최초집회를 소집하게 되었고, 원구성을 위한 의장단 선출과 울산광역시북구조례제정등 90건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4건등 '97년도 울산광역시북구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2. 의사일정

제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97.7.15

시 간	내 용	소요시간	비 고
09:00	○ 최초집회소집공고	5분	구청장
	○ 공고사항의원통지 (광역시의장단선거후구두통지)	1분	시의회
19:40	○ 의원등록	20분	
20:00	○ 집회개시 • 사무보고(사무국장) • 의장직무대행자등단및인사 • 사무국직원소개및인사	3분 3분 4분	
	○ 의장선거 • 감표위원지명(의장직무대행자) • 선거요령설명 및 호명(의사계장) • 투표(전의원) • 개표(사무직원,감표위원) • 당선자선포(의장직무대행자) • 당선인사	10분~ 20분	
	○ 부의장선거 • 절차:의장선거 절차와 같음 • 진행:의장	10분~ 20분	

시 간	내 용	소요시간	비 고
	○ 정회	10분~ 20분	
21:00	○ 의회개원식	10분	
21:20	○ 제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안)등4건의 규칙(안) ○ 조례안,예산안등 의결 ※제안설명:부구청장 ○ 산회 선포	60분	

3. 본회의 활동

○ 제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는 회기를 1997년 7월 15일 1일간으로 하였으며

○ 97년 7월 15일 20시에 개의하여 의사계장 직무대행으로 유병태총무과장의 사회로 의사진행을 하였고

○ 이종영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 개원식에 앞서 초대의장단 선출을 하여 의장에 김성보의원, 부의장에 윤두환의원을 선출하여 원구성을 하였고 21시43분에 회의중지를 하고

○ 당일 22시에 황성환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간부공무원 2명과 유관기관 단체장, 주민대표 등 20여명이 초청된 가운데 개원식을 가졌다.

○ 개원식에 이어 22시13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이종영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며, 제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여 7월15일 하루만 회기로 정하고 윤두환의원외 4명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북구의회규칙 등 4건의 규칙(안)을 윤두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원안가결 하였으며

○ 울산광역시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안) 등 90건의 조례(안)과 97년도 울산광역시북구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하

여 일괄상정후 황성환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건에 대하여는 가칭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운영협의회에서 3차에 걸쳐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출되었기에 본회의에서는 질의·토론하는 의원이 없어 구청장의 제출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당일 22시25분에 산회를 하였음.

4.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안)등 4건 (의안번호 1~4호)

1) 심의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7. 15 윤두환의원외 4명

○ 회부일자 : 97. 7. 15

○ 상정일자 : 제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주　　문

○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등 4건을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발의하여 제정하고자 함.

3) 제안이유

○ 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3호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설치된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규칙 4건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안)

○ 울산광역시북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

○ 울산광역시북구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 울산광역시북구의회기및의회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

5) 심의결과

○ 본회의 심의 : 원안가결

□울산광역시북구조례안 90건 (의안번호 5~9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7. 7. 15 북구청장

○ 회부일자 : 1997. 7. 15

○ 상정일자 : 제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97년 7월 15일 상정의결)

2) 주 문

○ 울산광역시북구 설치이전과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정의 연속성이 계속 유지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 울산시 조례를 기본골격으로 유지하고 북구설치준비단과 5개구, 군 준비단의 합동작업, 울산광역시 설치준비단과 내무부의 검증, 입법예고 등 여러절차를 걸쳐 90건의 조례안을 확정하고 97년 5월 19일 북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97년 5월 26일 상임위원별로 심사를 완료하고 북구의회의 심의를 받기 위함.

3) 제안이유

○ 96년 12월 31일 법률5243호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울산광역시북구가 설치됨에 따라 자치구시대에 잘맞는 자치법규안을 마련하여 주민복지증진과 능률적인 자치행정을 이루고자 함.

4) 주요내용

의안번호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상위법령 및 근거
5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	의회사무국의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
6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공인조례	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지방자치법 제15조
7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지방자치법 제54조

의안번호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상위법령 및 근거
8	울산광역시북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	지방자치법 제37조
9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2
10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11	울산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제47조
12	울산광역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의회에서의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지방자치법 제15조
13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15조
14	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구정조정위원회를 둔다	지방자치법 제15조
15	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	각종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지방자치법 제15조
16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구에 두는 행정기구 설치와 그 사무분장의 대강에 대하여 규정	지방자치법제102조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0조
17	울산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관한 자문을 얻기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의안번호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상위법령 및 근거
18	울산광역시북구보조금관리조례	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교부방법 및 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지방재정법 제14조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3항
19	울산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구의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지방재정법 제18조의3
20	울산광역시북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조례와 규칙등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지방자치법 제14조
21	울산광역시북구법률변호사에관한조례	고문 법률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지방자치법 제15조
22	울산광역시북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울산광역시북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철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방자치법 제15조
23	울산광역시북구소송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울산광역시북구 또는 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방자치법 제15조
24	울산광역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
25	울산광역시북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	구의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법에관한법률등 전산관련 법령 및 규정에 관련된 사항	지방자치법 제15조
26	울산광역시북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3항
27	울산광역시북구공인조례	구 공인의 제작·관수방법·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지방자치법 제15조

의안번호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상위법령 및 근거
28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지방자치법 제15조
29	울산광역시북구여비조례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	〃
30	울산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
31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년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32	울산광역시북구포상조례	울산광역시북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	지방자치법 제15조
33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35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및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21조
36	울산광역시북구시험수당지급조례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지방자치법 제15조
37	울산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통장의 사기앙양을 위해 통장자녀중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38	울산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통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의안번호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상위법령 및 근거
39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울산광역시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를 규정	지방자치법 제6조
40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 장려하며 연구 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
41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향상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상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지방자치법 제15조
42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의 설치와 운용	지방자치법 제15조
43	울산광역시북구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청소년기본법 제13조
44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지방자치법 제15조
45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새마을규약에 의하여 조성되고 있는 마을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	〃
46	울산광역시북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
47	울산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	물품의 취득, 보관, 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지방재정법 제94조
48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를 체계화하여 지방재정자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지방재정법 제72조 및 제77조

의안번호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상위법령 및 근거
49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	구세의 세목, 과세적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방세법 제3조
50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	구세의 과세면제와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	지방세법 제9조
51	울산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	지방자치법 제15조
52	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	구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53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 및 검사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규정	〃
54	울산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을 통하여 주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구정발전을 위하여 구정에 관한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공공기관의공개정보보호에관한법률
55	울산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
56	울산광역시북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지급이 부족한 생활보호 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기금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생활보호법 제10조, 제11조
57	울산광역시북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지역의료 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구, 동 및 통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지방자치법 제15조

의안번호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상위법령 및 근거
58	울산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구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 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지방자치법 제15조
59	울산광역시북구보육조례	영육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향상시키며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립보육시설등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지방자치법 제15조, 영육아보육법
60	울산광역시북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	이웃돕기 성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금고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지방자치법 제15조
61	울산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사항 규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62	울산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63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폐기물관리 · 수집 · 배출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폐기물관리법
64	울산광역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방자치법 제15조
65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공영주차장의 체계적 관리 및 노외주차장 설치의 촉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주차장법 제7조
66	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주차장법 제21조의2

의안번호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상위법령 및 근거
67	울산광역시북구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	공설시장관리 및 사용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규정	지방자치법 제15조
68	울산광역시북구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규정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제8조
69	울산광역시북구양수기대부조례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	지방자치법 제15조
70	울산광역시북구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운영조례	심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 같은법시행령 제67조 내지 제68조
71	울산광역시북구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에관한조례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설치제한 지역을 지정하여 농어촌 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상수원 및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업소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72	울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
73	울산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도로법 제43조
74	울산광역시북구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

의안번호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상위법령 및 근거
75	울산광역시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
76	울산광역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	수방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
77	울산광역시북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규정	소하천정비법 제22조
78	울산광역시북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
79	울산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80	울산광역시북구건축조례	건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건축법
81	울산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 규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82	울산광역시북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제7항
83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
84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	보건소의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지역보건법 제14조
85	울산광역시북구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촉탁의료인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	의료법 제62조 제3항
86	울산광역시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의안번호	조 례 명	주 요 내 용	상위법령 및 근거
87	울산광역시북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5조
88	울산광역시북구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보건소에서 결핵환자에게 투약하는 항결핵제의 보급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결핵예방법 제29조제3항
89	울산광역시북구보건진료소설치조례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
90	울산광역시북구보건진료소진료비조례	진료받은 자에 대한 진료비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지방자치법 제15조
91	울산광역시북구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
92	울산광역시북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	동의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에 관한 사항 규정	지방자치법 제4조
93	울산광역시북구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	동정의 주요시책에 관하여 동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동에 동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지방자치법 제42조
94	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지방자치법 제4조

5) 심의내용

○ 본회의심의 : 원안가결

□ '97년도 울산광역시북구 세입 · 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95호)

1) 심사경과

○ 제출일시 및 제출자 : 1997. 7. 15 북구청장

○ 회부일자 : 1997. 7. 15

○ 상정일자 : 제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주 문

○ 신설된 북구의 97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북구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함.

3) 제안이유

○ 97년 6월 27일 '97울산광역시북구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사전심사(안)을 제출하여 97년 7월 2일 울산광역시북구의원협의회에 협의하고 '97. 7.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제1회 북구의회의 임시회에서 심의를 받고자 함.

4) 주요내용

① 예산총칙

제1조 1997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회 계 별	'97예산액	기정액	증 감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2,185,080	0	22,185,080	665,550
일 반 회 계	21,279,081	0	21,279,081	638,372
특 별 회 계	905,999	0	905,999	27,178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84,063	0	84,063	2,521
의 료 보 호 기 금	24,238	0	24,238	727
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	138,261	0	138,261	4,147
주 차 장	130,000	0	130,000	3,900
농 공 단 지 조 성 사 업	529,437	0	529,437	15,883

제2조 세입 ·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1997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4조 1997년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0백만원으로 한다.

제5조 1997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6조 1997년도 계속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60,888천원으로 한다.

② 세입예산총괄표(일반+특별)

(단위:천원)

구 분		'97예산액	구성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소 계	새마을소득사업	특별지원	의료보호기금	생활보호안정기금	주차장	농지조성사업	단지조성
합 계		22,185,080	100.0	21,279,081	905,999	84,063	24,238	138,261	130,000	529,437		
세입	지 방 세	5,356,000	24.1	5,356,000	-	-	-	-	-	-		
	세 외 수 입	2,003,527	9.1	1,550,032	453,495	84,063	-	138,261	130,000	101,171		
	경상적세외수입	1,376,087	6.2	1,374,887	1,200	1,200	-	-	-	-		
	임시적세외수입	627,440	2.8	175,145	452,295	82,863	-	138,261	130,000	101,171		
	지방교부세	-		-	-	-	-	-	-	-		
	지방양여금	87,695	0.4	87,695	-	-	-	-	-	-		
	보 조 금	14,737,858	66.5	14,285,354	452,504	-	24,238	-	-	428,266		
	국고보조금	1,519,964	6.9	1,072,308	447,656	-	19,390	-	-	428,266		
	시비보조금	13,217,894	59.6	13,213,046	4,848	-	4,848	-	-	-		
	지 방 채	-	-	-	-	-	-	-	-	-		

③ 세출예산총괄표(일반+특별)

(단위:천원)

구분		'97예산액	구성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소계	새마을소득사업	특별지원	의료보호기금	생활보호안정기금	주차장	농지조성사업
합계		22,185,080	100.0	21,279,081	905,999	84,063	24,238	138,261	130,000	529,437
세출	경상예산	12,028,735	54.2	11,936,081	92,654	368	-	-	92,286	-
	인건비	4,628,334	20.9	4,605,129	23,205	-	-	-	23,205	-
	관서운영비	274,562	1.2	274,562	-	-	-	-	-	-
	경상적경비	7,125,839	32.1	7,056,390	69,449	368	-	-	69,081	-
	사업예산	9,739,048	43.9	8,982,112	756,936	50,000	24,238	138,261	15,000	529,437
	국고보조사업	2,135,117	9.6	1,581,442	553,675	-	24,238	-	-	529,437
	양여금사업	114,153	0.5	114,153	-	-	-	-	-	-
	시비보조사업	2,739,736	12.4	2,739,736	-	-	-	-	-	-
	자체사업	4,750,042	21.4	4,546,781	203,261	50,000	-	138,261	15,000	-
	채무상환	-	-	-	-	-	-	-	-	-
	지방채상환	-	-	-	-	-	-	-	-	-
	지방채무부담행위상환	-	-	-	-	-	-	-	-	-
	예비비	417,297	1.9	360,888	56,409	33,695	-	-	22,714	-
	예비비	417,297	1.9	360,888	56,409	33,695	-	-	22,714	-
	기타	-	-	-	-	-	-	-	-	-

④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표

○세 입

(단위:천원)

구 분	'97예산액	구성비	비 고
합 계	21,279,081	100.0	
100 지 방 세	5,356,000	25.2	
111 보 통 세	2,297,000	10.8	
112 목 적 세	3,009,000	14.2	
113 과 년 도 수 입	50,000	0.2	
200 세 외 수 입	1,550,032	7.3	
210 경상적세외수입	1,374,887	6.5	
211 재산임대수입	47,816	0.2	
212 사 용 료 수 입	38,000	0.2	
213 수 수 료 수 입	409,857	1.9	
214 사업장생산수입			
215 징수교부금수입	522,964	2.5	
216 이 자 수 입	356,250	1.7	
220 임시적세외수입	175,145	0.8	
221 재산매각수입	29,300	0.1	
222 이 월 금	-	-	
223 기부금및기금수입	47,887	0.2	
224 전 입 금	30,300	0.1	
225 융자금회수수입			
226 부 담 금			
227 잡 수 입	59,845	0.3	
228 과 년 도 수 입	7,813	0.1	
300 지 방 교 부 세			
400 지 방 양 여 금	87,695	0.4	
500 조 정 교 부 금			
600 보 조 금	14,285,354	67.1	
610 국 고 보 조 금	1,072,308	5.0	
620 도 비 보 조 금	13,213,046	62.1	
700 지 방 채	-		
710 국 내 차 입 금	-		
720 국 외 차 입 금	-		
730 융 자 금 수 입	-		

○세　　출

(단위:천원)

구　　분	'97예산액	구성비	비　고
합　　계	21,279,081	100.0	
1000 일 반 행 정	8,249,168	39.2	
1100 입법및선거관리	366,485	1.8	
1200 일 반 행 정 비	7,882,683	37.0	
2000 사 회 개 발	5,912,783	27.8	
2100 교육및문화비	1,099,323	5.2	
2200 보건및생활환경	2,573,847	12.2	
2300 사 회 보 장 비	1,388,849	6.5	
2400 주택및지역사회	850,764	3.9	
3000 경 제 개 발	6,531,325	30.7	
3100 농수산개발비	313,035	1.5	
3200 지역경제개발비	197,218	0.9	
3300 국토자원보존	6,001,072	28.2	
3400 교 통 관 리 비	20,000	0.1	
4000 민 방 위 비	224,917	1.0	
4100 민방위관리비	224,917	1.0	
4200 소 방 관 리 비	-		
5000 지원및기타경비	360,888	1.7	
5100 지 방 채 상 환			
5200 재 지 출 금			
5300 교 부 금			
5400 예 비 비	360,888	1.7	

□ 심사결과

○본회의 심의 : 원안가결

제2절 제2회 임시회

1. 개최배경

○ 제2회 임시회는 북구청 개청이후 처음으로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처리상황 보고 청취와 울산광역시교육위원 추천을 위하여 97년 7월 27일 윤두환의원외 2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7월 29일 집회공고하여 8월 4일 개최되었으며 회기는 97년 8월 4일에서 8월 6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다.

2. 개 회 사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황성환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울산광역시 승격과 더불어 북구청개청 및 북구의회개원 이후 처음 집회인 제2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북구는 신설된 구로서 기존 있던 구보다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또 모든 일들이 처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도 아랑곳없이 고생하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 치하드리며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북구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10만 구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그 어느 자치구 보다도 발전하는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전 의원이 합심단결하여 당면한 모든 현안 문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심도 있고 현실성 있게 다루어 자치구 체제가 조속히 정착되어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른 자치구에 뒤지지 않고 모든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살기 좋은 북구를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우리 북구는 또한 기존의 중구와 울주군 일부가 합쳐져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민 화합에 역점을 두고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도·농통합형 자치구로서 21C 울산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합시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울산광역시 교육위원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임시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7. 8. 4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장 **김 성 보**

3. 의사일정

제2회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97.8.4~8.6(3일간)

일시	차수	부의안건	비고
'97.8.4 (월) 10:30		(개 회 식)	본회의장
10:50	1	1.제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제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본회의장
11:00		4.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사회국)	소회의실
'97.8.5 (화) 10:30	2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보건소) (산업건설국) (의회사무국)	〃
'97.8.6 (수) 14:00	3	1.울산광역시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	본회의장

4. 본회의 활동

□ 제1차 본회의(97. 8. 4)

○ 제1차 본회의는 10시37분에 개의되어 제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 4일에서 8월 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질의·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의결과 제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한성두의원과 정석수의원으로 선임하였고, 당일 11시 15분부터 17시 55분까지 기획

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사회국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자치구로서 기획감사실기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의원질타가 있었음.

○ 특이사항으로 정석수의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회의통보서 발송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로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어 10시 47분에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여 회의통보서 발송건에 대하여 진상규명 확인결과 호계우체국에서 전달하지 못하였음.

□ 제2차 본회의(97. 8. 5)

○ 제2차 본회의는 10시 37분에 개의되어 총무사회국, 보건소, 산업건설국,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18시 30분까지 하여 환경위생과의 동천강오염에 대한 대책과 보건소의 하계방역의 문제점에 대하여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다.

□ 제3차 본회의(97. 8. 6)

○ 제3차 본회의는 14시에 개의되어 울산광역시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교육위원 후보자 정재룡, 김종철, 윤원기, 최해언후보의 소견발표를 5분간씩 청취하고, 1차투표에서 정재룡후보를 선출하고, 2차투표에서 윤원기후보를 선출하여 15시10분에 폐회되었다.

5.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의건

1) 보고현황

○ 보고서 제출일자 : 1997년 8월 1일

○ 보고일자 :1997. 8. 4~97. 8. 5(2일간)

○ 보고부서 : 전부서

○ 보 고 자 : 실·국·소·과장(세부사항)

2) 보고내용

○ 전부서 공통사항

- 기본현황(기구표현황, 정현원현황, 분장사무 등)
- '97예산편성현황
- '97주요업무추진계획
- 현안사업
- 문제점 및 대책등
- 기타보고사항

3) 주요시정요구사항

○ 예산부서에서는 현재의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됨.

○ 각종 조례에 대한 위원회 구성과 일선 행정조직이 조기에 정착되어야 함.

○ 구세부과에 정확성을 기하여 과오납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

○ 노사의 동향과 산업현장의 갈등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역할이 필요함.

○ 6월에 폭우로 유실된 상안잠수교는 예비비를 사용하더라도 복구를 해야 함.

□ 울산광역시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의건 (의안번호 제97호)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97. 8. 6 의장제의

○ 회부일자 :97. 8. 6

○ 상정일자 : 제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97. 8. 6) 상정의결

2) 주　　문

○ 울산광역시 교육위원 2명을 선출하여 추천코자 함.

3) 제안이유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5조 및 동법시행령제4조의규정에 의거 교육위원 후보자 2명을 시의회에 추천하여야 하므로 추천방법을 미리 결정하여 추천코자 제안함.

4) 추천방법

○ 추천인원 : 2인(단, 2인중 1인은 경력자야 하며, 2인 모두 경력자로 할 수 있음)

○ 추천방법 : 무기명 2인 동시투표로 선출(회의록 참조)

○ 입후보자 : 4명(회의록 참조)

5) 심의결과

○ 정재룡, 윤원기후보를 선출하여 시의회에 추천함.

6. 질의답변요약서

제2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97.8.4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정석수의원	○ 구법률고문 변호사 선임은 됐는지? 어떻게 선임 했는지?	□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 울산김기현 변호사와 부산에서 한분, 두분으로 선임 됐으며, 울산광역시와 협의에 의해서 선임 했음.
한성두의원	○ 본구가 결원율이 가장 높은 이유와 신규직원이 제일 많은데, 신규직원 배치 계획은?	□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 결원율에 대해 시청 내무국장님께 건의를 했고 본청결원율 87명인데 신규직원 87명이 왔는데 전부 9급 신규임. 몇 사람만 동에서 본청으로 이동시켰고 신규가 동에 배치됐음.
이상원의원	○ 신청사 건립 요강에 대해 문의 현재 내놓은 구청 건립계획이 시청계획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인지?	□ 총무과장 유병태 ○ 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발췌해서 예산부분 소요사업비 부분은 구청에서 파악을 했고 설계용역비도 본청 예산부에 계상이 안되어 이런 부분도 개입했음.
진한걸의원	○ 체납현황에 보면 신성개발(주)가 부도로 11억4,100만원 정도 체납됐는데 세무행정에서	□ 지방세과장직무대리 강함순 ○ 신성개발(주)의 현재 채권 확보가 제방 350㎡, 임야 일부가 공유지분이 압류되어 있음.

제2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97.8.4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부도가 나기전 미리 구상권 확보를 했는지? 고액체납자 관리하는 체계가 있는지? 금고선정을 수의계약하고 있는데 공개입찰을 하도록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구상권 확보를 위해 전국은행연합회에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등록되어 금융상 제재를 받음. 금고선정 조례제정 용의는 검토하도록 하겠음.
이상원의원	○ 고지서 송달이 북구청 개청이후 농소, 강동 지역에 주민들에게 전달이 제대로 되는지?	□ 지방세과장직무대리 강함순 ○ 1차적으로 납기개시 5일전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세법에는 원칙으로 하고 있음. 10만원이상되는 금액은 등기로 그이하는 직원이 통·반장을 통해 전달하고 있음 2차 반송되는 부분은 주민등록 전산망을 재확인해 송부하고, 그래도 반송되어 오는 것은 공시송달을 해놓고 공시송달 기간내에는 가산금을 붙이지 않음. 그외에는 전달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한성두의원	○ 예산상에 구세가 53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세입 부분 전반적인 검토를 했는지? 했으면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 지방세과장직무대리 강함순 ○ 검토를 했음 ○ 주민세가 3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5억원정도가 부족할것 같고 공동시설세 4,500만원, 면허세 4,100만원, 재산세 8,000만

제2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97.8.4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원 정도 감해서 도합 8,000만 원 정도 감이 되어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함.
이병우의원	○ 120 기동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 역할이 무엇인지? 〔보충설명〕 120 기동대의 목적이 주민 민원의 접수나 기동대원이 직접 다니면서 주민불편사항을 모아서 각 담당부서나 기동대가 할 수 있는것은 기동대에서 하는 것으로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여되도록 일을 찾아서 하면 많으니까 잘 활용해서 당초의 목표대로 기대에 부응하도록 요망.	□ **시민과장 이동훈** ○ 관내 순찰을 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여 각실과로 통지하며 시정토록 하고 있음.

제2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97.8.4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진한걸의원	○ 북구 관내에 불법농지전용으로 인해 무허가 시설이나 건축물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이후에 감사의 지적사항, 또 해당행위내역 및 관계되는 공무원의 징계처리 내역은 무엇인지?	○ 6월16일부터 24일까지 9일동안 감사를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37건을 통보했음.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음.
진한걸의원	○ 북구관내의 구 울주구 일부지역에서는 상당한 산림훼손을 야기시키면서까지 토석채취를 계속 갱신해 주는데 북구 관내에도 토석채취 허가가 된 이후에 기간이 연장된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현황이 있는지?	○ 서면으로 제출하겠음
진한걸의원	○ 현재 행정소송 6건이 고등법원 5건, 대법원 1건이 계류중에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떤 부분이 행정소송이 걸려 있는지?	○ 서면으로 제출하겠음
진한걸의원	○ 전산교육에 엑셀교육을 4, 5시간정도해서 기별로 20명, 5기가 일일 5시간씩 하도록 돼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교육을 굳이 나가서 받아야 되는 것인지?	○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아는데 신규로 온 사람들은 전산을 다룰려고 하니까 어려운점이 있어서 계획을 세웠음. 이 사항에 대해 다시 검토하겠음.

제2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97.8.4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한성두의원	○ 의회에 와서 사무처리 보고를 할때 아주 형식적으로 만들어 졌다는 것을 지적하며 9월말에 추경을 한다는데 추경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지금 현재 예산편성 돼 있는 것을 보면 불요불급한 것이 많이 돼 있는데 목간의 운영이라던지 세입의 일부가 있으면 그와 더불어 해야 될 사항이 있고 안해야 될 사항이 분석을 해보면 나타나기 때문임.
한성두의원	○ 그렇다면 그 당시에 우리가 사전에 예산심의를 할때 상당히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도 언급이 안됐음. 그리고 우리가 타절예산에 의해 가지고 이쪽에 편성된 부분이 많이 있음. 타절 예산이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여기에 전부 무더기로 통과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아는대로 설명요망.	○ 그 자료를 파악했음.
한성두의원	○ 타절예산말고 신규사업을 했을때 여러가지 문제 있는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투자규모나 이런 것을 투자심의위원회로 별도로 해야 될 문제도 있고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될 문제도 있음.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앞으로 모든 행정을 하는데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그때 그때 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순간 순간에 한번씩 협의를 거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전 협의토록 하겠음.

제2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97.8.4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한성두의원	○ 지금 일용인부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 현재 일용인부 배정된 것이 112명인데 그 112명 전원 다 운영하고 있는지? 오늘 보고서에 일용인부 112명인데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음. 오늘 현재 몇 명 근무하고 있는지? 재료비는 어떻게 하는지?	○ 기획감사실에서 일용인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112명 전원 다 운영하고 있지 않음. 현재 근무인원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음 재료비도 못쓰도록 규제를 하고 있음.
한성두의원	○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28개 위원회 중 몇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현재 하나도 설치 안된건지?	○ 각 실과별로 일축해 가지고 통보하도록 돼 있음. 아직 설치된 것은 보고를 받지 못했음.
한성두의원	○ 행정망 프로그램은 시전산실하고 협의가 잘되는지?	○ 지금 잘되고 있음.
한성두의원	○ 풀 예산에 여비도 있고 임의 보조금도 있고 소규모사업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어떻게 할것인지 설명요망.	○ 내용만 뽑아봤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겠음.

제2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97.8.4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이상원의원	○ 울산공항으로 인한 도시발전 저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계자료가 나온게 있는지? 울산비행장이 도시발전을 저해 한다는데 어떤 부분이 발전을 저해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놓은게 있는지? 진장동을 앞으로 개발한다고 하니까 진장동이 도시개발되면 고도제한이 어떻게 걸리는지? 〔보충설명〕 앞으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것이 현재 이륙과 착륙시 농소쪽 동천강을 갈라서 동쪽 방향으로 뜨는데 거기가 아주 고층 아파트기 때문에 이쪽으로 항로를 해도 되는지? 구청에서 이런걸 세부적으로 알아가지고 자료를 제출 바람.	○ 조사된건 있지만 자료는 없음. 공항이 있음으로 해서 고도제한이라든지 소음이나 또 그쪽의 모든 발전을 하기 위한 통제를 많이 받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돼있는게 없음.
이상원의원	○ 시책 개발팀부분에 우수시책개발참여자 인사우대 및 표창 시행이라고 해놨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돼있는지?	○ 세부적인 계획은 안했음.

제2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97.8.4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진한걸의원	○ 북구에 동별 체육시설이 현재 7개 동인데 업무보고에는 세군데 있고 해안4대대쪽의 사격장이 도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울산시가 공유재산취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공원화 하는 것을 울산시장이 본회의에 답변한 바도 있고 북구 문화공보실의 체육지원계에서 굳이 양정동 뿐만 아니라 각동에 체육공원을 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노동 재충전 할 수 있는 공간확보 차원에서 밀도있게 찾아나서서, 양정동 사격장 부분은 왜 공원화가 안되고 있는 것인지? 구차원에서는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는 본청이나 건설교통부쪽에 구에서 능동적으로 어떻게 하면 공원화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요망.	□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 공원부지는 구 사격장 부분을 한번 더 파악을 하고 또 잡종지로 되어 있는것은 어떻게 공원화가 될 수 있는건지 관계부서에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하겠음.
진한걸의원	○ 본의원이 일년에 경로당을 수차례 방문하는데 주민계도지가 없는데 실제 경로당에 배부가 되고 있는지?	○ 경로당은 이야기만 해주시면 배부하겠음.

제2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97.8.4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진한걸의원	○ 주민계도지가 소리없이 동정이나 구정에 협조하는 사람이나 어려운 가운데에도 소리없이 선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계도지가 더가야 되는것이 아닌가 그점에 대해 의견은?	□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주민계도지 배부처를 구정에 협조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은 지금 현재 선정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임.
이병우의원	○ 울주군에서 농소와 강동 새마을지도자들에게도 주민계도지를 공급을 했는데 북구가 되면서 새마을지도자에게는 계도지를 끊었는지?	□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 파악이 아직 안되어 있음.
이병우의원	○ 송도선생 유적지 복원 계획은 어디서 근거가 되어서 이렇게 했는지, 도면이라든지 자료를 요구하겠음. 그리고 어떻게 해서 복원계획을 하게 될 추진경위를 아는대로 설명 바람.	○ 중구청에서 인계된 공문에 의거 발췌한 것임. 계속 업무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음.
한성두의원	○ 효자 송도선생 유적지 복원계획에 대해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광역시 본청에서 이 업무를 해야된다고 보는데, 북구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지 협의	□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보고 본청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북구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해 보겠음.

제2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97.8.4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할 용의가 있는지? 구예산으로 하기가 힘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요망.	
		□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한성두의원	○ 계도지가 지금 현재 체제가 배달이 되는 지역이 있고 배달이 안되는 지역이 있음. 이 문제를 파악해 본 적이 있는지?	○ 파악을 안해 봤음.
한성두의원	○ 체육보조금이 예산지침에 체육단체는 정액보조단체임. 지금 현재 체육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광역시 체육회가 발족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치구에는 실질적으로 체육회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런데 예산이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 체육회가 구성이 되면은 지원해 줄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집행은 검토를 안해봤음.
한성두의원	○ 체육시설 10억원을 가져오는데 광역시 예산 10억원을 보조받아서 이 사업을 하게 되어었는지? 이 사업에 대해 아는대로 설명요망. 당초 예산을 본청 사회진흥과	○ 이 사항에 대해 인계 받은 공문밖에 없음. 관련법규를 찾아서 전용이 되면 전용을 해서 감정을 하도록 하겠음.

제2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97.8.4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에서 21억원을 잡았고, 당초 예산에 20억원을 요구했지만 10억원 밖에 못가져 왔는데 제일 급한것이 토지매입비 전에 감정료를 넣어야 되는데 감정료를 못넣음. 그것은 토지매입비에서 전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진한걸의원	○ 구정홍보 사진촬영게시 및 관리에 구정홍보를 위한 사진촬영 인화 게시 및 관리를 공보계 직원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결론은 일용직을 채용해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그냥 사진 찍는것도 일용직을 채용하겠다는 발상을 가지게 된 계기를 설명 바람.	□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 제가 도에 있을때 사진기사가 있어서 기록보존을 잘 했는데 여기와서 보니 자치구인데 이런 것이 없어서 되겠느냐 해서 이렇게 해서 기록보존을 하는데 미비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했음.
진한걸의원	○ 청사건립 추진사항을 보면 지가보상 추진이 애초에 잡았던 예산에 추가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현재 구입장에서 지가보상 해결을 어느시점까지 하고 또 구체적인	□ 총무과장 유병태 ○ 본 업무는 광역시 본청 회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이 업무가 우리구를 넘어 온다면 특별추진기획단을 만들고 각과에서 유능한 사람을 뽑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

제2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97.8.4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실시설계나 세부적인 추진사항들이 앞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북구청의 본 청사 계획이 북구민들이 어느기간까지 참아야 주차장도 원활하고 북구관내의 민원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지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요망.	나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시에서 계속해서 추진을 해줘야지 우리 북구청사가 완료되는 대로 이익이 안되겠느냐 생각되고 세부적으로 언제 청사가 완료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우선 7월말까지 농지전용 협의를 하고 후속조치에 들어 갈려고 계획했던 것이 전용협의가 안끝나고 있는 사항임.
진한걸의원	○ 토요전일 근무제건에 대해서 묻겠는데 원래 도입 취지가 여러가지로 바쁜 시민들의 민원을 토요일 오후에 이용하고 밀렸던 민원업무 처리를 우리구에서도 같이 부응하는 측면에서 도입했다고 생각됨. 실제로 토요전일 업무에 민원일들의 건수가 어느정도 되는지 이 부분들을 앞으로 이렇게 유지하는게 바람직한 것인지 그점에 대해 소신있는 답변을 바람.	□ 총무과장 유병태 ○ 토요전일 근무제는 우리 주민들이 민원처리를 토요일 오후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첫 목적이 있는데 부수적으로 제가 앞에서 보고서에 담은대로 우리 직원들의 재충전의 기회도 되고 또 여가선용기회도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것임. 토요일 오후에 민원처리 건수는 파악을 하지 못했음.

제2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97.8.4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한성두의원	○ 현재 농소에는 읍·면이 동으로 바뀌면서 과거의 이장은 임명했고 통장은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에 의하면 이 위촉도 제대로 안한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 파악해 본적이 있는지?	□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 농소1동은 통·반장 위촉이 됐음. 2, 3동은 추천 내지 조정중에 있는데 촉구하고 있음.
부의장 윤두환	○ 청사부지 전체가 몇 평인지? 특수학교 부지는 몇 평인지? 1만4,889평을 일괄 매수한다는 계획은 잡았는지? 일괄매수를 한다면 60만원을 잡았을때 50억원이 계상이 됐고 39억3,300만원이 모자란다는 얘기죠? 평균 60만원을 잡은 것은 감정원이 잡은게 아니고 대충 잡은 것인지?	□ 총무과장 유병태 ○ 전체 1만4,889평임. 특수학교 부지는 5,000평임. 토지감정 소장이 도면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감정결과 공시지가가 평당 27만5,300원인데 실지 감정가로는 50만원을 이야기함.

제2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97.8.4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부의장 윤두환	○ 청사 바닥면적을 몇 평으로 해서 4층까지 올리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게 있는지? 〔보충설명〕 광역에서 지원을 받을려면 우리계획부터 확실히 잡아 놓고 해야지 무조건 광역에만 의존할 수 없음.	□ 총무과장 유병태 ○ 시청에 계획이 있음.
한성두의원	○ 상안교를 세번 갔다 오셨다 했는데 대책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 이 교량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과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음. 문제는 국토관리청에서 다리를 고쳐야 되는데…… 현재 잠수교 800m위에 신탁교라고 해서 큰 교량이 있음. 비가 안올때는 대형차량만 다니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 비가 많이 오면 신탁교도 통행하도록 하고 있음.

제2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97.8.4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의장 김성보	〔보충질의〕 앞으로 우수기가 다가오니 구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 점검을 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도시과와 협의해서 상세한 업무를 서면으로 보고 바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 예, 서면으로 보고 하겠음.

제2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97.8.5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진한걸의원	○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이 거의 유명무실하게 일부 소수 노인에게 혜택이 가는 결과로 효율이 거의 없는 것이 아닌지? 금년 한해 실시 재평가 한후 다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만큼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효과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이 부분을 계속해야 할 이유를 설명 바람.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임정순 ○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추진할 계획임. 청소년들이 할아버지 선생님들이 지도 했을때 간섭 받기를 싫어한다고 함. 그냥 선도를 해서는 청소년들에게 먹혀 들어가지를 않음.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안하려고 함.
한성두의원	○ 북구가 신설되고 난 다음에 의료보험이 이원화 되고 농소, 강동은 울주군 의료보험에, 나머지 동은 중구 의료보험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업무가 중구나 울주군 중 하나로 단일화 돼야 되는데 과장님의 소신은?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임정순 ○ 자치구로서 북구가 개청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함.
한성두의원	○ 청소년 어울마당은 시·도 보조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고등학교에서 주로 한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 방학을 이용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결재과정에 있음. 방학을 이용해 한 7일정도 토요일 오후에 할 계획임.

제2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97.8.5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의장 김성보	○ 교통수단 예산 부족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 바람.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임정순 ○ 울주구에서 농소, 강동이 편입되었고 중구에서 2개동이 편입되었는데 중구에서는 분기에 지급하기 때문에 7월초에 효문동과 송정동은 지급 했는데 울주구에서 강동, 농소를 지급을 안해서 북구로 넘어 왔음. 당초예산에 없어 북구에 지원된 예산을 일단 노인들에게 드리기로 했음.
부의장 윤두환	○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보조지원이 14세대 28명인데 우리 북구에 14세대정도 밖에 안되는지? 지원액이 410만원이 한세대당 지원액인지?	□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 14세대 전부임. 1인당 14만원정도 매월 지급됨.
부의장 윤두환	○ 올해 예산에 어린이놀이시설 유지비가 얼마나 있는지? 또한 유지보수비는 없는지?	○ 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터 밖에 없음. 예산은 책정이 안돼 있음. 유지보수비는 지금은 책정이 안돼있는데 추경에 없을 계획임.

제2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97.8.5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한성두의원	○ 분뇨 및 정화조 위탁처리비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 설명요망.	□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 분뇨 및 정화조 위탁처리비는 일반가정이나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관계가 없고 공중화장실이나 공동적인 곳에서 나오는 것을 운반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처리비로 주는것으로 알고 있음.
진한걸의원	○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관련해서 내년부터 30평 식당까지 의무사업장으로 확대하면서 30평 자리의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할려면 퇴비화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 시하고 각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자체처리 할 수 있는 용기를 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고속발효기를 설치 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별도로 사전에 검토해서 계몽하고 조치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이상원의원	○ 환경미화원 49명중 농소1,2,3동 합쳐서 6명인데 한동에 두명씩 배치 했는지?	□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 처음에 광역시가 승격됨으로해서 준비단에 인계받은 대로 1차적으로 그지역에 배치를 했음. 그외에 기동청소반을 운영해서 오전에 문전수거를 해놓고 별도로 쓰레기가 많은 지역에는 기동청소반 청소차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미화원을 동원해서 수시로 기동청소는 시행

제2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97.8.5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하고 있음.
한성두의원	○ 방역사업부분인데 북구가 되기 전에는 주 1, 2회 뿌렸는데 북구가 되고 방역사업을 안하는데 방역사업의 약제라든가 장비가 다 인수가 되는건지? 약제는 배분 됐는지?	□ 보건소장 박혜경 ○ 농소1동은 기존 그대로 사용하고 농소2,3은 배정계획을 잡아 놨음. 약제 또한 배정계획을 잡아 놨음.
진한걸의원	○ 우리 보건소 약품관리에 있어서 영양제만 모두 소진이 돼서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데 약품관리를 어떻게 감시감독을 할 계획인지?	□ 보건소장 박혜경 ○ 등록돼 있는 1종 보호대상자들에게 영양제를 배분해주고 임산부들에게 빈혈약, 영·유아들에게 영양제를 배분해 주었음. ○ 보건의료수요를 작년에 비해 몇 % 올려서 계획을 잡다보니까 해마다 등록인원은 늘어가고 영양제가 모자라 배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진한걸의원	○ 달천농공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조성사업이후에 평당 분양가하고 국·도·시비가 6억 5,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완공된후에 기존 중소기업을 운	□ 지역경제과장 배성무 ○ 달천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울산공동화사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음. 행정적인 지원문제는 울산시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총괄업

제2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97.8.5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영하고 있는 사람들과 사전에 여론조사를 통해 조율해서 하는 것인지?	무는 울산공동화사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5, 60개 업체에 대해 거의 선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음. 업체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약 286억9,000만원정도 됨. 부담해서 약 70%정도 토지를 매수하고 남은 것이 농공단지 조성사업자 선정, 착공문제가 놓여 있는데 이 문제도 시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음.
한성두의원	○ 농어민학자금관계인데 입학이 된 사람은 수혜 혜택이 그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학하는 실업계고등학교의 1*ha*이내 영세농민의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실업계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광역시 승격후 5년간 계속지원 해 나가는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음.
진한걸의원	○ 북구의 무허가 건축물 단속계획은?	□ 건축과장 직무대리 유병옥 ○ 무허가를 짓는건 쉽고 철거는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일용직 단속요원 2명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순찰하여 기초할때부터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사전예방 위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음.

제2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97.8.5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진한걸의원	○ 배출업소와 관련해서 효문 중소기업공단 같은 경우에 F.R.P 화이바그라스라는 것은 유리섬유인데 선진국에는 사용금지 돼 있음 폐암을 유발시키는 물질인데 거의 매일 배출 하는데 여기서 중점관리 해야될 업소가 어디고 주민들에게 계몽을 해서 주의해야 될 업소는 어느동에 어떤 업소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바람.	□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 효문공단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음. 유해 물질이 나오는 공장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토록 하겠음.
진한걸의원	○ 추경에 정자회센타에 2,000만원을 반영하겠다 하셨는데 이것이 어느정도 필요한 것이고 추경편성 성격에 맞는 것인지? 해양수산부에 아직 승인도 안났는데 예산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신다는게 추경의 예산 성격을 봐도 문제가 있고 수익자부담 원칙에 봤을때도 시가 구 예산을 가지고 해주고 또 사후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 이 문제는 광역시 이전에 시에도 진정서가 들어갔고 울주구에도 진정서가 들어간 상태로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광역시 승격된 이후 북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겠다는 회신을 했었음. 현지 확인결과 회센타가 지금 건립 중인데 거기에 화장실 등 아무것도 없는데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필요성에 의해 말씀드린 것임.

제2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97.8.5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이상원의원	○ 경상북도 모화 위에 공장이 들어서서 동천강으로 폐수를 바로 흘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경상북도 지역인데 행정기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 시 환경보호과에서 경주시에다 동천강변에 있는 유해 공장이 어떤곳인지 조사 자료를 다 의뢰해 놓은 상태임.
진한걸의원	○ 육아교실 부분은 출장 교육을 하면 어떤지?	□ 보건소장 박혜경 ○ 보건소 내에서 하면 보건업무를 보면서 할 수가 있는데 출장을 가게되면 제가 모든 민원을 다 봐야되는 상황에서 아직은 어렵고 인력이 충원되면 언제든지 달려 가겠음.
한성두의원	○ 보건소가 현재 이용도가 저조하고 국민보건제도 등의 도입으로 기능이 점차 축소되는 방향이고, 또 민간의료기관이 많이 생겨 전염병에 관한 예방관리나 건강진단 프로그램 등이 앞으로 좀 전환이 돼야 되지 않는지? 또한 보건소 의료 행정기능이 감소 추세로 앞으로 보건소가 계속 존치가 돼야 되는지, 어떤식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지 소장님의 의견은?	□ 보건소장 박혜경 ○ 북구는 신설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이라는 업무는 크게 많지는 않음.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도 굉장히 다양한데 보건소에서 진료업무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진료업무는 일반 민간에게 넘겨주고 그외 공공의료 부분을 우리가 담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임.

제2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97.8.5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 보건소장 박혜경
한성두의원	○ 북구관내 보건지소가 2군데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 계획은?	○ 폐쇄를 하게 되면 진료원들이 전부 집에가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도 인력을 잃어 버리게 되는 상황임. 폐쇄하지 않으면서 그 인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생각하고 있음.
한성두의원	○ 우리 북구에 보건소가 신설이 됐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알려야 하는데 우리 주민들은 북구에 보건소가 있는지 잘 모름. 이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킨 다음 간판을 확보했고, 보건소 창문 4층에 북구보건소라고 써붙여서 멀리서도 보이도록 했고 들어오는 입구에도 간판을 여러개 붙였음.
		□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이병우의원	○ 산업건설국내에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몇 개의 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어느정도 결성 되었는지?	○ 심의위원회의 자세한 상황은 지금 파악이 안됐음. 다만 한가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현재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별도로 하지 않았고 나머지 위원회는 구청의 조례에 의해서 전부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지역경제과장 배성무
진한걸의원	○ 올해 노동쟁의가 많이 감소 되었지만 북구자치구가 노사의	○ 저희 관내에 24개 노조가 있고 노사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2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97.8.5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동향이나 산업현장의 갈등의 사안들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중간에서 조정 역할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대응을 할 것인데 전혀 업무보고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 상황에서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노동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 기아의 영향 등으로 해서 광장히 쉽게 타결되는 전망임.
		□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한성두의원	○ 농지법에 의해 준농림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각종 농기구라든가 여러가지 농사자금이라든가 전업농 이런것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과연 준농림지역으로 선정이 가능한지? 또 그동안 농수산부와 절충이 있었는지? 울산광역시에서 농소, 강동만 문제가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람.	○ 강동지역과 농소지역의 농어민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농발법 제66조에 보면 준농어촌 지역이 있음. 준농어촌 지역이 저희와 유사한 부산시의 자료를 조사해 봤을때 지원하는데 큰 문제가 없음. 준농어촌 지역이 될려면 일단 GB구역이나 농어촌 지역내에 있는 지역은 전부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최대한 농어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면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 농림수산과장 이완식
한성두의원	○ 동천강이 폐천 되었을 경우 각종 농지에 대한 용수로 확보문제에 대해 대책은?	○ 용수원이 필요하다면 확보하는 방향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음.

제2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97.8.5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 농림수산과장 이완식
한성두의원	○ 경지정리내의 농로를 포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청에 있을때 서면질문에 하겠다는 내용의 답을 받았는데 만약 용수원을 새로 확보했을때 용수로도 같이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냐 이 부분도 검토해볼 용의가 있는지?	○ 농로 포장 문제도 역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음.
한성두의원	○ 산림감시원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재해가 났을때 어떤 대책이 있는지?	○ 산불감시원의 재해 발생 대책은 적립된 대책은 없음. 과거 강동에 사망사건의 예를 들어보면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기준에 의해서 1,000만원 미만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음. 사안이 발생하면 대책을 그때 그때 다시 강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한성두의원	○ 금년도 농사 작황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병충해 발생 현황이라든가 공동방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해대책 양수기 부분에 대해 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 벼농사 병충해 문제는 농촌지도소에서 그때 그때 발생사항 통보를 받고 있음. 통보된 정보에 의해 동에 하달하고 저희 직원들도 해당농가에 방문 직접 확인지도를 하고 있음. 양수기는 예산상으로 양수기

제2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97.8.5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구입 예산이 일부 있음. 앞으로 양수기를 구입하고 관정은 아직 점검을 못했음.
이병우의원	○ 공항에서 내려오는 수로가 비가 50~60㎜만 오면 농소쪽 공단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위의 공단쪽으로 범람을 해서 역류가 되어 계속 침수가 되는데 공단이 지정승인만 받아 놓고 수년째 그냥 방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농사짓는 분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적은 예산으로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지?	□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 현장에 가보고 농지개량조합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음.
부의장 윤두환	○ 명촌교에서 효문까지 가는 공해완충녹지도 구로 이관이 되었는지?	□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 시에서 관리하고 있음. 구에서는 근린공원하고 도로변 화단을 관리함.
이상원의원	○ 건축허가는 300평 넘는것은 시청에서 허가가 나지만 그 나머지는 구청에서 허가를 내야하는데 여기에 굉장한 민원이 예상되는데 이 문제를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건축행정을 해 나갈지 설명 바람.	□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현재 건축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인·허가 관계 업무임. 더욱 적극적으로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앞으로 이 분야에 더욱 신경을 쓰겠음. 건축허가도 주민들이 법에 아무런 하자 없으면 신속하게 해 나갈 각오가 되어 있음.

제2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97.8.5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진한걸의원	○ 북구에 상수도 보급이 전혀 안되면서 건축허가가 남발되다 보니까 민원이 야기되는데 북구청의 관내 건축허가를 원칙없이 계속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 보급률도 끌어 올리는 도시기반을 갖춘 후에 건축허가가 나는게 타당하지 않은지 그점에 대해 답변요망.	□ 건축과장직무대리 유병옥 ○ 건축허가를 내면서 소형건물이나 이런 종류는 상수도, 하수도가 안들어 온다 해도 규제가 어렵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상·하수도가 구비된 후에 허가를 해야된다 하는건 공감하고 있음. 농소의 경우 2000년 상반기에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 그것도 물론 정상적으로 추진됐을때 이야기임.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만약에 공동주택 허가가 신청이 된다면 그 입주시기와 상수도 공급시기를 맞추어서 가능할때 허가를 하도록 하겠음.
이상원의원	○ 각종 사업보조인부임. 재료비 일용, 상용일용을 각 구별로 구분해 놨는데 북구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지?	□ 지적과장 김실근 ○ 일용 상용의 인원수를 더 늘이지 않고 고정시켜 놨음.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원을 조정해서 다른 구청과 시전체 인원을 준비단에서 조정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한명밖에 못바뀌니까 재료비로서 계산된 걸로 알고 있음.

제3절 제3회 임시회

1. 개최배경

○ 제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는 97년 8월 2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의안심의를 위하여 97년 9월 17일 윤두환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7년9월18일 집회공고를 하여 97년 9월 24일부터 97년 9월 25일까지 2일간의 회기로 개최되었다.

2. 개 회 사

존경하는 황성환부구청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가지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는 이때 제3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먼저 지난 울산광역시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일어난 일련의 일들을 돌이켜 보면서, 오늘 이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한 의장님을 비롯한 몇몇 의원님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북구의회 의장직무대행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구민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체념만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비온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옛말이 있듯이 지난 일을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 새로운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울산광역시와 북구가 출범한지도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북구의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광역시민이라는 높은 자긍심을 갖고 더욱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스스로의 자치역량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앞에 놓인 21C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펼쳐 보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북구의 새로운 출발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새롭게 하여 자치구체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결기구로서 지역발전과 전체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개정조례(안) 및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 의견청취의건등이 다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임시회가 주어진 일정에 따라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7. 9. 24

울산광역시북구의회 부의장 **윤 두 환**

3. 의사일정

제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97.9.24~9.25(2일간)

일시	차수	부의안건	비고
'97.9.24 (수) 10:00 10:50		(개 회 식)	본회의장
	1	1.제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본회의장
		3.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5.제3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소회의실
'97.9.25 (목) 10:30	2	1.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계속)	소회의실

4. 본회의 활동

□ 제1차 본회의(97.9.24)

○ 제1차 본회의는 의원7명 중 4명의 의원이 출석하여 10시 37분에 개의하여 이종영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보고받고, 제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여 97년 9월 24일부터 97년 9월 25일까지 2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 윤두환의원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 북구청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한용규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백용한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은 후 질의 · 토론을 하여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심도있게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후 심의를 하기로 했다.

○ 제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이병우의원, 진한걸의원을 선임하고 11시 58분에 회의중지하고, 고려화학(주), 염포동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현장확인을 하여 편입되는 염포동주민 및 기업체의 의견수렴활동을 하였다.

□ 제2차 본회의(97.9.25)

○ 제2차 본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되어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 따른의견청취의건을 계속 상정하여, 어제의 현장확인을 바탕으로 의원들이 열띤 토론을 하여, 염포동 북구편입에 따른 북구의회 종합의견을 채택하고 11시 40분에 폐회되었다.

5.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8호)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7년 8월 26일 북구청장

○ 회부일자 : 1997년 9월 24일

○ 상정일자 : 제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97. 9. 2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서 요지

가. 제안이유

○민법부칙 제3조 제4항의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는 내용중 공무소는 읍 · 면 · 동 · 출장소도 해당된다고 대법원이 유권해석 함에 따라

○ '97. 9. 24 대법원에서 읍·면·동·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 내무부에 협조 요청하여

○ '97. 6. 14 대법원 개선안에 대하여 각급 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국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 보호등을 위하여 '97. 9.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종전에는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수수료 600원을 받아오던 것을

○동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1건에 수수료 600원을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로 징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제안된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법부칙제3조제4항에 의거 사법부 소속기관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 부여의 공증업무를 97년 4월 24일자 대법원에서 읍·면·동·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방안 수립(민원부칙제3조제4항에 대한 대법원의 유권해석) 하였음.

○검토의견으로는 민법부칙제3조제4항에 의거 종전에는 사법부 고유의 공증업무를 97년 4월 24일 대법원 유권해석에 의한 제도개선 마련에 의하여 97년 6월 14일 대법원에서 자치단체장의 의견수렴 등으로 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내무부와 합의한 사항으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북구 동사무소에서 대행하는 것임으로 북구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 보호는 물론 북구 세수증대를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본회의 심의 : 원안가결

□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안번호 제99호)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7년 9월 11일 북구청장

○ 회부일자 : 1997년 9월 24일

○ 상정일자 : 제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 ('97. 9. 2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97. 4. 21 염포동 엄상섭외 2,038명의 주민들의 행정구역의 불합리와 주민불편을 사유로 북구 편입을 희망하는 탄원을 울산시의회에 제출

○ '97. 5. 16 울산시의회 내무위원회 심의

○ '97. 5. 28 울산시의회에서 처리의견서를 울산시로 이송

○ '97. 6. 14 ~ 7. 14 염포동 전체주민에 대한 북구 편입 우편설문실시

○ '97. 7. 26 울산광역시에서 북구에 지시되어 지방자치법 제4조 1, 2항의 규정에 의거 북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음.

나. 주요골자

○ 염포동 기본현황

- 면적 및 세대 : 7.72㎢(3,814세대 11,810명)

- 통반조직 : 29통 153반

○ 행정구역 조정대상 및 사유

구간경계조정	조 정 사 유
1개소	행정구역의 불합리와 주민 불편해소

○ 구간경계조정 내역

구 분	조정규모			조정후			조정사유
	면적	세대수	인구	면적	세대수	인구	
동구 염포동 → 북구 염포동	7.72㎢	3,814	11,810	159.4㎢	34,979	112,811	○ 1, 2차에 걸쳐 주민설문조사 결과 59.8%가 북구편입 희망 ○ 주민불편해소

3) 전문위원 검토요지

○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지역적 배경으로 양정동과 염포동은 생활권이 동일하고 주민의 80%이상이 현대계열사에 종사하는 관계로 생활 및 문화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이며, 그리고 1979년 염포1, 2동으로 양정천을 경계로 분동되어 1981년 염포2동에서 양정동으로 명칭변경 양정동, 염포동으로 나누어져 종전 중구 관할구역이었으나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96. 12. 31)에 의거 양정동은 북구로 염포동은 동구로 관할구역이 조정됨에 따라 97년도 4월 21일 동구 염포동 146-5번지 엄상섭외 2,038명의 염포동 주민들의 행정구역 불합리와 주민불편사유로 행정구역을 동구에서 북구로 변경해 달라는 청원을 조승수 시의회의원(염포동소속)의 소개로 울산시의회에 제출되어 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청원심사결과 염포동 주민의 의견수렴(설문조사) 절차를 위하여 울산시장에게 이송되었으며 이에 따른 설문조사실시 및 결과는 (총무사회국장, 총무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음.

○ 검토의견으로서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폐치, 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관계법규에 부합되며 해당지역 주민의 열망도와 관련 지역주민의 여론은

설문조사결과 찬(59.8%), 반(40.2%) 양분된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동구 존치를 원하는 염포동 1001-7번지 이상한 외 1,227명의 진정서가 동구청에 접수('97. 9. 9)되는 등 주민간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지난 9월 11일 동구의회 제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행정구역 조정안이 부결 처리된 사항을 감안할 때 광역시로 승격된지 2개월이 지난 지금 무엇보다도 대시민 화합이 절실히 요구됨으로 편입(경계조정)이라는 하나의 명제를 놓고 지역내 마을간 양분된 주민의 의견 불일치와 설문조사에 나타난 수치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도 등 현지여건을 고려할 때 대시민 화합과 풍요롭고 조화로운 새북구건설이라는 미래지향적이고 실현가능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본회의 심의 : 의견서 채택

<table>
<tr><td colspan="5">종 합 의 견 서</td></tr>
<tr><td>대 상 지 역</td><td colspan="4">동구 염포동 ➔ 북구 염포동</td></tr>
<tr><td colspan="5">○ 염포동 북구편입은, 인구와 세수증대 그리고 염포동 주민의 다수의견을 존중하여 북구편입을 찬성한다. 다만 주민의견 수렴결과 60대 40의 수치는 과반수가 넘었으나 동구 잔류를 희망하는 소수의견도 있으므로, 성내부락 주민은 해당기관에서 구역주민의 이해갈등을 해소토록 노력바랍니다.

1997년 9월 25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td></tr>
<tr><td>찬반표의
해당란에 ○</td><td>찬성</td><td>○</td><td>반대</td><td></td></tr>
</table>

6. 질의답변 요약

제3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97.9.24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진한걸의원	○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관련된 민원 부분은 대다수가 서민층에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음. 그래서 구청이나 각 동에서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세입자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는 주민홍보 체계가 어떻게 서 있는지?	□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 본 업무는 사법부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고유업무를 행정기관이 대행하는 것이고 수수료 징수 근거규정이 기 제정 시행중에 있으므로 시·군·구 수수료징수조례는 의회개회식때 개정 반영하고 우선 시행하도록 지시가 있었음. 그래서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음. 동별로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까지 17건이 처리되었음. 주민 홍보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홍보자료 제출도 하고 방송에도 의뢰하였으며 회의 때마다 지시도 여러차례 하였음. 아울러 9월 정례반상회 의제로 채택 홍보하겠음.

제3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97.9.24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한성두의원	○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 조정에 따른 주민설문 조사 결과에 시기가 안 나와 있는데 1차 설문조사는 언제 했고, 2차 설문조사는 언제 했으며, 또 한 번에 족하지 않고 1, 2차로 나누어 조사한 이유는?	□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 설문조사 대상자 전체 3,814명 중 1차에 응답자가 1,719명인데 이것으로 주민의사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회수되지 않은 2,095명에 대해 2차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했음.
한성두의원	○ 성내 부락은 동구에 그대로 있기를 원하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고 편입을 했을때 여러 가지 장·단점은 비교해 본일은 있는지?	□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 성내 부락을 빼고는 장·단점을 분석해 보지 못했음.
	○ 행정구역이 존폐가 되어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임. 역사적인 사건인데, 적어도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성내부락을 제외했을 때의 어떤 장·단점, 문제점을 비교, 분석해 보아야지 여기에는 장점만 나와 있지 단점은 안 나와 있음. 울산시가 광역시로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염포동의 주민으로 봐서는 동구에 그대로 있느냐, 북구에 편입되느냐는 것은	○ 예, 그렇게 하겠음.

제3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97.9.24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큰 역사적인 흐름임. 이런 중요한 사안인데도 자료가 비교 분석도 안 됐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셔서 내일이라도 자료를 제출 바람.	
이병우의원	○ 자료가 의회에서 낸 자료하고 행정에서 낸 자료가 세금도 틀릴뿐만 아니라 인구수도 잘못된 것 같고, 이것을 바로해 주시고, 한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중에 성내마을에서 의견수렴을 한 것이 전체 염포동민의 의견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주민 설문조사 결과 1차에 3,814세대 중에 응답수가 1,719세대가 나오고 2차는 거기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냈다고 그랬는데 1, 2차가 전부 같은 것이나 마찬가지임. 결과적으로 1차에 응답하고 대답을 하지 않은 사람이 2차에 했다고 하는데 선별이 잘 되는지?	□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 의회에서 낸 자료하고 저희들이 낸 자료하고 틀리는것 같음. 저희들 자료는 동구하고 세입, 인구 등 전반적인 숫자가 맞음. 다시 한번 챙겨 보겠음. 그리고 주민설문 조사에 대한 것은 1차에서 반도 회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주민의사를 발할 수 없다해서 2차 설문조사를 하였음. 그래서 2차에 954명해서 1, 2차 합해서 72% 조사가 된 것 같음. 결론적으로는 지리적으로 성내마을이 도로하나를 경계로 해서 동구쪽으로 산 밑에 붙어 있어 이쪽하고는 다소 주민들 생각이 다른 것으로 봄.

제4절 제4회 임시회

1. 개최배경

○ 제4회 임시회는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의를 위하여, 1997년 10월 23일 이병우의원외 2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10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여 1997년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5일간 개최되었다.

2. 개 회 사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황성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는 이때 제4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먼저 지난 울산광역시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일어난 일련의 일들로 인하여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북구의회 의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자리를 같이하지 못한 두분의 의원님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으며 하루빨리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일들을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 구민의 여망과 시대상황을 직시하면서 의회에 부여된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7월 15일 100만 시민의 벅찬 기대와 여망속에서 울산광역시가 승격되고, 북구가 새롭게 출범한 지도 벌써 100여일이 지나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자치구 행정체계의 틀을 잡기 위해 짧은 기간에 벅찬 출발을 하느라 시행착오도 없지 않았을 것이나,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장기적이고 신중한 계획과 추진으로 발전된 북구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5일간의 일정으로 97년도 제1회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몇가지 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임시회가 주어진 일정에 따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황성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7. 10. 31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장 **김 성 보**

3. 의사일정

제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97.10.31~11.4(5일간)

일시	차수	부의안건	비고
'97.10.31 (금) 10:30		(개 회 식)	본회의장
	1	1. 제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97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본회의장
		○ '97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기획감사실소관 - 문화공보실소관 - 총무사회국소관 - 산업건설국소관	소회의실
'97.11.1 (토) 10:00	2	1. '97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의회사무국소관 2. 예산안심의관련등현장확인의건	소회의실
'97.11.2 (일)		(공 휴 일)	
'97.11.3 (월) 11:00	3	1. '97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보건소소관 - 예산안계수조정 2. '97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3. 의안심의관련등현장확인의건	소회의실
'97.11.4 (화) 11:00	4	1. '97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 - 총액의결 2. '98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3. 당면현안사업현장확인의건	소회의실

4. 본회의 활동

□ 제1차 본회의('97. 10. 31)

○ 제1차 본회의 10시 30분에 개의되어 이종영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안접수현황을 보고받고

○ 제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97년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5일간의 회기를 결정하였으며 예산(안)심의 및 안건처리에 따른 질의 ·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이병우의원외 2명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가결하고

○ 1997년 10월 2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 제1회 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용국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해당실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보고받고 질의 · 토론이 있었으며 16시 10분에 산회를 하였다.

□ 제2차 본회의('97. 11. 1)

○ 제2차 본회의는 10시에 개의되어 97년도 제1회 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이 계속 상정되어 이종영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 · 토론을 하였으며 예산(안)심의와 관련하여 북구청사건립부지 등 현장을 방문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10시 17분에 회의를 정회하고 현장확인을 실시했다.

□ 제3차 본회의('97. 11. 3)

○ 제3차 본회의는 10시 13분에 개의되어 97년도 제1회 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여 박혜경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강한원 산업건설국장 및 해당과장으로부터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받고 질의 · 토론을 하였으며 오후에는 97년도 제1회 세입 · 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 의장제의로 '97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을 의결하고 16시 12분에 내일 심의할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농소2, 농소3동사무소 신축예정부지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

□ 제4차 본회의('97. 11. 4)

○ 제4차 본회의는 11시에 개의되어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여 백용한 전문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 후 총괄설명을 듣고 총액의결은 백용한 전문위원이 설명한 내용을 확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 97년 10월 28일 북구청장으로 제출된 '98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한용규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하고 11시 59분에 회의를 정회하여 당면현안사업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6시에 폐회를 하였다.

5.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97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02호)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7년 10월 28일 북구청장

○ 회부일자 : 1997년 10월 31일

○ 상정일자 : 제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 ('97. 10. 3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7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 제출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97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내역(총괄)

(단위:천원)

구분	계	기정	금회 (제1회추경)	비고
합 계	25,600,418	22,185,080	3,415,338	
일 반 회 계	24,767,520	21,279,081	3,488,439	
특 별 회 계	832,898	905,999	△73,101	
새마을소득사업운용	84,063	84,063	0	
의 료 보 호 기 금	38,756	24,238	14,518	
생보자생활안정기금	138,261	138,261	0	
주 차 장	42,381	130,000	△87,619	
농공단지조성사업	529,437	529,437	0	

3) 심의결과

○ 본회의 : 수정가결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천원)

회계별		기정예산액(당초)	금회요구액(A)	예산심의내역					확정예산액(예산총액)	%	일시차입금
				삭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계		22,185,080	3,415,338	0	19,647	0.5	396,503	416,150	25,600,418	100	768,009
일반회계		21,279,081	3,488,439	0	16,647	0.4	360,888	377,535	24,767,520	96.7	743,025
특별회계		905,999	△73,101	0	3,000		35,615	38,615	832,898	3.3	24,984
기타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84,063	0	0	0		33,695	33,695	84,063		2,521
	의료보호기금	24,238	14,518	0	0		0	0	38,756		1,162
	생활보호자생활안정자금	138,261	0	0	0		0	0	138,261		4,147
	주차장	130,000	△87,619	0	3,000		1,920	4,920	42,381		1,271
	농공단지조성사업	529,437	0	0	0		0	0	529,437		15,883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심의(삭감)내역

(단위:천원)

구 분		기정예산액	금회요구액	삭 감 액	확 정 액	비 율
합 계 (일반+특별)		22,185,080	3,415,338	19,647	25,580,771	0.5
계(일반)		21,279,081	3,488,439	16,647	24,750,873	
부 서 별	의회사무국	313,963	5,845	0	319,808	
	기획감사실	4,707,738	△225,141	0	4,482,597	
	문화공보실	1,224,255	△3,286	0	1,220,969	
	총무과	1,994,970	4,623,742	11,117	6,607,595	
	지방세과	151,185	△14,371	0	136,814	
	시민과	106,111	△19,005	1,522	85,584	
	민방위재난관리과	167,578	△7,100	0	160,478	
	지적과	160,853	△37,705	624	122,524	
	지역경제과	217,218	34	0	217,252	
	농림수산과	741,194	89,024	0	830,218	
	환경위생과	187,460	△79,249	0	108,211	
	환경미화과	1,602,945	△643,404	0	959,541	
	보건소	721,000	16,196	0	737,196	
	사회복지과	1,388,849	△59,908	0	1,328,941	
	건설도시과	5,760,991	△7,302	0	5,753,689	
	건축과	69,275	△8,136	3,384	57,755	
	농소1동	245,933	△17,476	0	228,457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심의(삭감)내역

(단위:천원)

구 분		기정예산액	금회요구액	삭 감 액	확 정 액	비 율
	농 소 2 동	257,149	△19,739	0	237,410	
	농 소 3 동	221,291	△17,949	0	203,432	
	강 동 동	248,525	△18,812	0	229,713	
	진 장 동	144,346	△12,167	0	132,179	
	효 문 동	222,008	△25,155	0	196,853	
	송 정 동	198,573	△14,149	0	184,424	
	양 정 동	225,671	△16,348	0	209,323	
기타특별회계	계 (특 별)	905,999	△73,101	3,000	829,898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산업	84,063	0	0	84,063	
	의료보호기금	24,238	14,518	0	38,756	
	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	138,261	0	0	138,261	
	주 차 장	130,000	△87,619	3,000	39,381	
	농공단지조성사업	529,437	0	0	529,437	

□ '98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의안번호 제101호)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7년 10월 28일 북구청장

○ 회부일자 : 1997년 10월 31일

○ 상정일자 : 제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97. 11. 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5조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취득재산

• 토지 ..... 2필지 2,995㎡(906평)

• 건물 ..... 2동 2,314㎡(700평)

○ 취득재산 현황

농소2동사무소 신축사업

가. 부 지

• 지 번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009-2번지

• 지 목 : 전(田)

• 면 적 : 1,995㎡(603평)

나. 건 물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 연면적 : 1,157㎡(350평)

다. 사 업 비 : 1,182백만원(부지매입비 300백만원, 건축비 882백만원)

라. 사업기간 : '98. 1. 1 ~ '98. 12. 31(1년간)

농소3동사무소 신축사업

가. 부　　지

• 지　번 :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367-1번지 일원

• 지　목 : 임(林)

• 면　적 : 1,000㎡(302평)

나. 건　　물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 연면적 : 1,157㎡(350평)

다. 사 업 비 : 1,382백만원(부지매입비 500백만원, 건축비 882백만원)

라. 사업기간 : '98. 1. 1 ~ '99. 12. 31(2년간)

• 1단계(1998년) : 부지매입

• 2단계(1999년) : 설계 및 건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97년 10월 2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1호의 '98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요내용을 보면 취득재산 2건으로 토지가 2필지 2,995㎡(905평)이고 건물이 2동에 연면적 2,314㎡(700평)임.

첫째, 농소2동사무소 부지 및 건물신축입니다.

97년 7월 15일 울산광역시로 승격됨에 따라 울주구 농소읍이 북구로 편입 3개동으로 분동, 농소2동은 종전 농소읍사무소로 사용하던 건물에 농소1, 2동이 함께 협소하고 불편하나마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

○ 그러므로 토지이용계획상 도시계획구역외 준농림지역인 중산동 1009-2번지 전 1,995㎡(603평)를 취득,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157㎡

(350평) 규모의 농소2동사무소를 신축하여 동민의 불편해소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둘째, 농소3동사무소 부지 및 건물신축입니다.

상기 설명과 같이 농소3동은 상안동 아진APT 입구 상안동 371-6번지의 아진건설 분양사무실을 증축하여(50평) 무상임대(99년 7월까지)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 그러므로 국토이용계획상 도시계획구역외 준도시지역인 상안동 367-1번지 일원 임야 1,000㎡(302평)를 취득,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157㎡(350평) 규모의 농소3동사무소를 신축하여 동민의 불편해소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과 구정조정위원회(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완료(97년 10월 24일)등 관련법규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9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부지 및 건물취득건을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심의결과

○ 본회의 심의 : 원안가결

6. 질의답변 요약서

제4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97.10.31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진한걸의원	○ 중안선관위에서 주민계도지 배포가 사전선거운동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는데 법리상 주민계도지 배포를 계속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검토를 해 봤는지?	□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옛날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는 줘도 된다는 선관위의 답변이 있었음. 앞으로 공문이 내려와서 정상적으로 보급하지 말라고 하면 보급을 안하도록 하겠음.
진한걸의원	○ 북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행차가 아세아 버스여서 현대자동차 사택쪽에 출입이 안되어 일부 구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데 왜 울산에서 생산되는 차를 구입하지 않고 멀리 있는 아세아 차를 구입했는지?	□ 총무과장 유병태 ○ 지난 광역시 승격과 함께 기존 울주구에서 활용하던 차량을 기사까지 포함해서 인수받은 사항인데 울주군의 이동도서관 차량을 알아보고 교환이 가능하면 추진을 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현대측에 양해를 구해서 운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는 도리밖에 없음.
이병우의원	○ 북구청사 설계 공모비 300만원은 어디에 기준을 두었는지?	□ 총무과장 유병태 ○ 예술회관 공모한 것을 참고로 하였는데 우리구는 1등은 당선작으로 설계권을 주고 2등작은 한사람만 줄 계획임. 300만원을 계상하였음.

제4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97.10.31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진한걸의원	○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지와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의 세입이 당초예상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	□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그달 그달 필요한 것만 내려주기 때문에 당초 약3억7,000만원 잡았습니다만 현재 약 26억원을 월별로 정기예금 시키고 있는데 이자율이 최고 높은 12%로 자금이 필요하면 또 풀어줘야 되니까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자세입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 같음.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중구와 울주구에서 인수된 체납액이 약 350만5,000원 중에서 징수가능한 것이 약 114만3,000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2,430만3,000원을 감하게 되었음.

제4회 임시회(제3차 본회의) '97.11.3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의장 김성보	○ 농촌에서는 땅 몇평 가지고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측량기점을 확실히 좀 해주길 바람.	□ 지적과장 김실근 ○ 그 관계는 내년부터는 지적도면을 전산화 함. 그렇게 되면 앞으로 1㎝도 안 틀리는 측량이 될것임.
부의장 윤두환	○ 요즘 지상보도에 의하면 독감예상인원을 잘못 예상하는 바람에 독감예방백신이 품귀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북구사정은 어떤지?	□ 보건소장 박혜경 ○ 북구도 마찬가지임. 일단 10월 30일자로 1차 예방접종을 중단하고 학교나 단체로 접종해야 하는 2차 물량을 확보했음. 보건소에 독감예방접종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독감예방접종 기 예산을 다 쓰고 다른 여유가 있는 예산을 당겨서 쓰면서 물량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제5절 제5회 정기회

1. 개최배경

○ 제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조례안, 동의(승인)안 등 각종 의안심의를 위하여 1997년 11월 19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하여 1997년 11월 25일 개최되었다.

○ 제5회 정기회에서는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건의 안건심의가 있었으며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997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회기는 1997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였다.

2. 개 회 사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황성환 부구청장님, 김기현 강북교육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35일간의 회기로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게 될 제5회 정기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우리 북구의회 개원이후 첫 정기회로서 그 의미와 역할은 매우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신설구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북구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발전과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격려와 성원을 다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7월 15일 울산광역시 승격과 북구 신설 이후 지방화 시대에 새로운 도약의 장을 열면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며, 시대적 소명의식과 막중한 책임감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소수의 의원으로 현안사업과 각종 도시기반시설, 환경문제, 민생문제 등과 관련하여 현장위주의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여러가지로 미흡한 사항도 많았으리라 생각되며, 앞으로 더욱 겸허한 자세로 연구하고 노력하여, 우리 의회에 부여된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북구의 최대 현안사업인 청사신축이 조기착공 건립되어 민원불편이 해소되도록 집행기관은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야 될 줄로 압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의 결산의 의미가 있는 이번 정기회에서 다루어질 행정사무감사와 98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모든 안건들이 알차고 심도있게 처리되어 이번 정기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어 10만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회는 울산광역시의회 회기와 중복이 되어 있어 일정상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기회가 주어진 일정에 따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주신 황성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7. 11. 25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장 **김 성 보**

3. 의사일정

제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97.11.25~12.29(35일간)

일시	차수	부의안건	비고
'97.11.25 (화) 10:30		(개 회 식)	본회의장
개회식 직 후	1	1. 제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건 2. '97울산광역시북구행정사무감사계 획서의결의건 3.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제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본회의장 • 제안설명 :구청장 • 예산안 회부 • 14:00 :시의회 감 사
'97.11.26 (수) ~ '97.11.29 (토) (4일간)	2~5	감사실시에따른현장확인	• 시의회 감사실시 (11.20~ 11.29)
'97.11.30 (일)		(일 요 일)	
'97.12.1 (월) ~ '97.12.6 (토) (6일간)		행정사무감사실시	※감사실시 일정〔별표1〕
'97.12.7 (일)		(일 요 일)	
'97.12.8 (월) ~ '97.12.13 (토) (6일간)	6~11	예산안예비심사및현장확인	• 12.8 10:00 시본회의 • 시의회예산· 결산심사 (12.8~12.11) • 시의회예특심사 (12.12~12.15)

일시	차수	부의안건	비고
'97.12.14 (일)		(일 요 일)	
'97.12.15 (월) ~ '97.12.17 (수) (3일간)	12 ~ 14	'98예산안심의	• 12.16 14:00 시본회의 ※ 예산안 심의일정 -〔별표2〕
'97.12.18 (목)		(대 선 일)	
'97.12.19 (금) ~ '97.12.20 (토) (2일간)	15 ~ 16	'98예산안심의	
'97.12.21 (일)		(일 요 일)	
'97.12.22 (월) 11:00	17	1.'98년도세입 · 세출예산안(계속) - 총액의결 -	본회의장 • 14:00 시상임위
'97.12.23 (화) ~ '97.12.24 (수) (2일간)	18 ~ 19	(추경예산안, 일반안 심의)	• 시의회 의안심사
'97.12.25 (목)		(성 탄 절)	
'97.12.26 (금) ~ '97.12.27 (토) (2일간)	20 ~ 21	(추경예산안, 일반안 심의)	• 시의회 의안심사

일시	차수	부의안건	비고
'97.12.28 (일)		(일 요 일)	
'97.12.29 (토) 11:00	22	1.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의결 (각종의안의결)	본회의장
		(종 무 식)	• 15:00 시본회의

'97행정사무감사실시의사일정

제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97.12.1~12.7(7일간)

일 시	수 감 부 서	감 사 내 용	비 고
'97.12.1 (월) 10:30	○ 기획감사실 소관 ○ 문화공보실 소관	• 업무보고 • 질의 · 답변 • 현장확인	소회의실
'97.12.2 (화) 10:30	○ 총무사회국 소관 • 총무과 • 지방세과 • 시민과	〃	〃
'97.12.3 (수) 10:30	○ 총무사회국 소관 • 민방위재난관리과 • 사회복지과 •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과	〃	〃
'97.12.4 (목) 10:30	○ 산업건설국 소관 • 지역경제과 • 농림수산과 • 건설도시과	〃	〃
'97.12.5 (금) 10:30	○ 산업건설국 소관 • 건축과 • 지적과 ○ 보건소 소관	〃	〃
'97.12.6 (토) 10:30	○ 의회사무국 소관	〃	〃
'97.12.7 (일)	(일 요 일)		

'98예산안심의의사일정

제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97.12.15~12.22(8일간)

일시	차수	부의안건(부서명)	비고
'97.12.15 (월) 10:30	12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기획감사실 • 문화공보실 • 총무사회국 - 총무과, 지방세과	
'97.12.16 (화) 10:30	13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총무사회국 -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 14:00 시본회의 (예산안)
'97.12.17 (수) 10:30	14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산업건설국 - 지역경제과, 농림수산과, 건설도시과, 건축과, 지적과	
'97.12.18 (목)		(대 선 일)	
'97.12.19 (금) 10:30	15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보건소 ○ 의회사무국 ○ 계수조정	
'97.12.20 (토) 10:30	16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97.12.21 (일)		(일 요 일)	
'97.12.22 (월) 11:00	17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총액의결 -	본회의장 • 14:00 시상임위

4. 본회의 활동

□ 제1차 본회의(97. 11. 25)

○ 제1차 본회의는 10시에 개회식을 마치고 10시 40분에 개의되어 초청인사인 김기현 강북교육청 교육장의 인사가 있었고, 이종영 의회사무국장의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안접수현황을 보고 받았으며,

○ 제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회기를 11월 25일에서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하였다.

○ 의장제의로 '97울산광역시북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을 상정하여 '97년 12월 1일에서 12월 7일까지 7일간 감사일정을 의결하였으며

○ '97년 11월 1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한된 199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황성환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고,

○ 의장제의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하였고, 또한 제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회의록 서명의원을 진한걸의원과 한성두의원을 선임하고 10시 55분에 산회를 하였다.

□ 제2차 본회의(97. 11. 26)

○ 제2차 본회의는 16시에 개의되어 의장제의로 행정사무감사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하고 농소2동 관내 주민계도지 배부사항 확인과 농소동 체육공원 조성사업 확인을 실시했다.

□ 제3차 본회의(97. 11. 27)

○ 제3차 본회의는 15시 30분에 개의하여 의장제의로 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하고, 강동해안 가로등 설치공사확인 및 강동산하지역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 제4차 본회의(97. 11. 28)

○ 제4차 본회의는 15시 30분에 개의하여 의장제의로 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하고, 중산동 수출화훼단지 추

진사업과 보건소 의약품 재고량 및 보관실태를 현지 확인했다.

□ 제5차 본회의(97. 11. 29)

○ 제5차 본회의는 14시에 개의하여 의장제의로 행정사무감사실시에따른 현장확인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하고, 화봉동 어린이놀이터 관리실태를 확인했다.

□ 제6차 본회의(97. 12. 10)

○ 제6차 본회의는 15시에 개의하여 당초의사일정 12월 8일 제6차와, 12월 9일 제7차 회의는 시의회 의사일정관계로 개의하지 못하여, 당초 제8차 회의를 제6차로 하고 12월 29일을 제20차 회의로 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으며, 의장제의로 98년도예산(안)심의에따른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하고, 강동동 구암마을회관보수 대상지와 당사 신현간 농어촌도로 정비공사 대상지를 확인하였다.

□ 제7차 본회의(97. 12. 11)

○ 제7차 본회의는 15시에 개의되어 의장제의로 98년도예산(안)심의에 따른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하고, 양정동 457-4번지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대상지를 현지 확인하였다.

□ 제8차 본회의(97. 12. 12)

○ 제8차 본회의는 15시에 개의되어 의장제의로 98년도예산(안)심의에 따른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하고, 송정저수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대상지를 현장 확인하였다.

□ 제9차 본회의(97. 12. 13)

○ 제9차 본회의는 14시 30분에 개의되어 의장제의로 98년도예산(안)심의에따른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하고, 연암동 4~8통 보도블럭 설치공사 대상지와 호계경로당앞 안길포장공사 대상지를 현장 확인하였다.

□ 제10차 본회의(97. 12. 15)

○ 제10차 본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되어 이종영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정기회 회기기간중에 의안제출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북구청사 건립추진 상황보고를 한용규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 또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청사정비기금차입의건을 상정하여 한용규 총무사회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및 심의를 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기획실, 문화공보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받고 질의·토론 및 심의를 하여 15시 45분에 산회를 하였다.

□ **제11차 본회의**(97. 12. 16)

○ 제11차 본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하여 98년도 세입·세출(안) 심의를 위하여 지방세과, 민방위재난관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및 심의를 하여 12시 05분에 산회를 하였다.

□ **제12차 본회의**(97. 12. 17)

○ 제12차 본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하여 98년도 세입·세출(안) 심의를 위하여 강한원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산업건설국 소관 총괄보고를 받고 지역경제과, 농림수산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보고를 받고 질의·토론 및 심의를 하여 12시 30분에 산회를 하였다.

□ **제13차 본회의**(97. 12. 19)

○ 제13차 본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되어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여 박혜경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이종영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받고 질의·토론 및 심의를 하여 14시 30분에 산회하였다.

□ 제14차 본회의(97. 12. 20)

○ 제14차 본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하여 98년도세입 · 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12시 25분에 산회를 하였다.

□ 제15차 본회의(97. 12. 22)

○ 제15차 본회의는 15시 30분에 개의하여 이종영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정기회 회기중 의안접수현황에 관하여 보고사항을 보고받고

○ 11월 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금일 제출되어 박용국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 답변 및 심의를 하여 윤두환 부의장의 심의결과서 보고 후 원안가결 하였으며

○ 97년도 제2회 일반 · 특별회계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1997년 2월 1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박용국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16시에 산회하였다.

□ 제16차 본회의(97. 12. 23)

○ 제16차 본회의는 16시에 개의되어 97년 11월 1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한용규 총무사회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 토론과 심의를 하여 원안가결하고 16시 15분에 산회를 하였다.

□ 제17차 본회의(97. 12. 24)

○ 제17차 본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하여 97년 12월 1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에 한용규 총무사회국장 및 강한원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백용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해당과장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 답변을 하고 조례안은 심의하여 3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의보류하여 12시 25분에 산회하였다.

□ 제18차 본회의(97. 12. 26)

○ 제18차 본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하여 97년 제2회 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을 계속 상정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사회복지과, 산업건설국, 보건소에 대하여 해당 실 · 국 · 소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설명을 받고 질의 · 답변과 심의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제17차 본회에서 심의보류한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질의답변과 심의를 하여 원안가결하고 12시에 산회하였음.

□ 제19차 본회의(97. 12. 27)

○ 제19차 본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하여 97년도 제2회 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여 토론과 계수조정을 하고 12시 30분에 산회하였음.

□ 제20차 본회의(97. 12. 29)

○ 제20차 본회의는 13시 30분에 개의되어 의장제의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의결의건과 97년도제2회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윤두환부의장이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서와 예산(안) 심의결과서를 낭독하고 낭독된 의결서를 원안가결하여 13시 48분에 제20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5회 정기회를 폐회함.

5.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4호)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7년 11월 18일 북구청장

○ 회부일자 : 1997년 12월 23일

○ 상정일자 : 제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
(97년 12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동행정추진의 중심이 되는 동의 계장임용을 현재 구청장이 능력이나 자질보다는 경력을 위주로 임용하고 있어, 동행정 추진에 다소 비능률적인 면이 있으며,

○ 또한 능력이나 자질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검정할 수 있는 동장에게 동의 계장 임용권을 권한위임하므로써 동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별표2〕동에 권한 위임하는 사무중 총무과 위임사무중 2. 바 다음에 위임사무명란에 동의 계장 보직관리, 근거법령란에 지방자치법 제95조를 각각 신설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본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구청장이 동의 계장 임용을 해오던 임용권을 동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직원의 전문성과 적성를 고려 적격한 위치에 임용될 수 있도록, 동장에게 동의 계장임용권 위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한 사항임.

○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동법 9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 관계법규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그러나 구청장의 소속부분에 대한 임용권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 동의 계장 보직인사와 관련하여 시행상 제반여건 그리고 위임시기 적절 등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4) 심사결과

○ 본회의 심의 : 원안가결

□'98당초일반 · 특별회계세입 · 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105호)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 당　초 : 97년 11월 21일 북구청장

- 1차수정 : 97년 12월 22일 북구청장

○회부일자 : 1997년 11월 25일

○상정일자 : 제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
제10차~제15차(97.12.15~97.12.22) 상정의결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98당초일반 · 특별회계세입 · 세출예산(안)을 의회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98당초예산(수정)세입 · 세출예산내역(총괄)

(단위:천원)

회계별	예산액	%	기정예산액	%	증감	비고
계	37,973,702	100	40,680,177	100	△2,706,475	
일반회계	35,586,187	93.7	38,292,662	94.1	△2,706,475	
특별회계	2,387,515	6.3	2,387,515	5.9	-	
새마을소득사업	87,380	0.2	87,380	0.2	-	
의료보호기금	933,952	2.5	933,952	2.3	-	
생보자생활안정금	118,300	0.3	118,300	0.3	-	
주차장	124,830	0.3	124,830	0.3	-	
농공단지조성사업	1,123,053	3.0	1,123,053	2.8	-	

나. 예산규모(총괄)

(단위:천원)

회계별	예산액	%	기정예산액	%	증감	비고
계	37,973,702	100	40,680,177	100	△2,706,475	
일반회계	35,586,187	93.7	38,292,662	94.1	△2,706,475	
특별회계	2,387,515	6.3	2,387,515	5.9	-	
새마을소득사업	87,380	0.2	87,380	0.2	-	
의료보호기금	933,952	2.5	933,952	2.3	-	
생보자생활안정금	118,300	0.3	118,300	0.3	-	
주차장	124,830	0.3	124,830	0.3	-	
농공단지조성사업	1,123,053	3.0	1,123,053	2.8	-	

다. 일반회계 세입 · 세출 예산내역

○세 입

(단위:천원)

회계별	예산액	%	기정예산액	%	증감	비고
계	35,586,187	100	38,292,662	100	△2,706,475	
지방세	10,464,000	29.4	10,464,000	27.3	-	
보통세	4,644,000	13.0	4,644,000	12.1	-	
목적세	5,750,000	16.1	5,750,000	14.9	-	
과년도수입	115,000	0.3	115,000	0.3	-	
세외수입	2,776,527	7.8	2,778,827	7.3	△2,300	
경상적세외수입	2,409,868	6.8	2,409,868	6.3	-	
임시적세외수입	366,659	1.0	368,959	1.0	△2,300	
조정교부금	14,502,261	40.8	14,502,261	37.9	-	
지방양여금	-	-	-	-	-	
보조금	7,843,399	22.0	10,502,261	27.5	△2,704,175	
국고보조금	2,497,361	7.0	2,497,361	6.4	45,825	
시비보조금	5,346,038	15.0	8,096,038	21.1	△2,750,000	
지방채	-	-	-	-	-	

○세 출

• 장 · 관별

(단위: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	기 정 예 산 액	%	증 감	비고
계	35,586,187	100	38,292,662	100	△2,771,677	
일 반 행 정	16,607,882	51.9	20,197,117	52.7	△3,589,235	
입법및선거관리	876,808	2.5	923,508	21.1	△46,700	
일 반 행 정 비	15,731,074	44.2	19,273,609	31.6	△3,542,535	
사 회 개 발	8,836,509	24.3	9,179,001	24.0	△542,492	
교 육 및 문 화 비	691,965	1.9	866,273	2.3	△174,308	
보건및생활환경	4,190,389	11.8	4,255,591	11.1	△65,202	
사 회 보 장 비	3,007,922	8.5	3,060,726	8.0	△52,804	
주택및지역사회	746,233	2.1	996,411	2.6	△250,178	
경 제 개 발	8,626,319	24.2	8,258,423	21.6	367,896	
농 수 산 개 발 비	654,693	1.8	680,173	1.8	△25,480	
지역경제개발비	262,359	0.7	285,773	0.7	△23,414	
국 토 자 원 보 존	7,689,267	21.6	7,272,477	19.0	416,790	
교 통 관 리 비	20,000	0.1	20,000	0.1	-	
민 방 위 비	264,570	0.7	275,195	0.7	△10,625	
민 방 위 관 리 비	264,570	0.7	275,195	0.7	△10,625	
지 원 및 기 타 경 비	1,450,907	4.1	382,926	1.0	1,067,981	
예 비 비	1,450,907	4.1	382,926	1.0	1,067,981	

• 세세항별

(단위:천원)

회계별	예산액	%	기정예산액	%	증감	비고
계	35,586,187	100	38,292,662	100	△2,706,475	
경상예산	18,610,213	52.3	19,269,560	50.3	△659,347	
인건비	9,250,143	26.0	9,275,275	24.2	△19,132	
관서운영비	609,409	1.7	612,809	1.6	△3,400	
경상적경비	8,744,661	24.6	9,381,476	24.5	△636,815	
사업예산	15,525,067	43.6	18,640,176	48.7	△3,115,109	
국고보조사업	3,301,331	9.3	3,209,381	8.4	91,650	
지방양여금사업	-	-	-	-	-	
시도비보조사업	6,559,951	18.4	9,341,451	24.4	△2,781,500	
자체사업	5,663,785	15.9	6,089,044	15.9	△425,259	
채무상환	-	-	-	-	-	
지방채상환	-	-	-	-	-	
채무부담행위상	-	-	-	-	-	
예비비등	1,450,907	4.1	382,926	1.0	1,067,981	
예비비	1,450,907	4.1	382,926	1.0	1,067,981	
기타	-	-	-	-	-	

4) 심사결과

○ 본회의 : 원안가결

○ 심의내역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의결조서

(단위:천원)

회계별		요구액			심의내역		예비비	확정예산액(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계	당초	수정	세입	세출			
총계		37,973,702	40,680,177	△2,706,475	0	0	1,489,346	37,973,702	1,139,208
일반회계		35,586,187	38,292,662	△2,706,475	0	0	1,450,907	35,586,187	1,067,585
특별회계		2,387,515	2,387,515				38,439	2,387,515	71,623
기타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87,380	87,380				36,531	87,380	2,631
	의료보호기금	933,952	933,952					933,952	28,018
	생활보호자생활안정자금	118,300	118,300					118,300	3,549
	주차장	124,830	124,830				1,908	124,830	3,744
	농공단지조성사업	1,123,053	1,123,053					1,123,053	33,691

□ 청사정비기금차입의결의건 (의안번호 제107호)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7년 12월 9일 북구청장

○ 회부일자 : 1997년 12월 15일

○ 상정일자 : 제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97. 12. 1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북구청사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울산광역시 재원 부족으로 한국지

방재정공제회의 청사정비기금을 차입하여 북구청사 건립비로 사용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차입규모 : 5,500,000,000원

○ 차입방법 : 증서 차입채

○ 기　　간 : '98.1.1 ~ '99.12.31(2년간)

○ 차입이자 : 상환잔액에 대하여 연 3%의 특별회비 납부

○ 상환조건 :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 원리금 및 이자상환액 : 6,407,500,000원

(원금 5,500,000,000, 이자 907,500,000원)

○ 상환재원 : 북구에서 상환(울산광역시 예산13320-221)

('97.12.6일자승인)

○ 년도별 청사정비기금 상환계획

(단위:천원)

구분 / 년도별	계	원 리 금	이 자	비 고 (상환잔액)
계	6,407,500	5,500,000	907,500	5,500,000
2000년	357,500	275,000	82,500	5,225,000
2001년	706,750	550,000	156,750	4,675,000
2002년	690,250	550,000	140,250	4,125,000
2003년	673,750	550,000	123,750	3,575,000
2004년	657,250	550,000	107,250	3,025,000
2005년	640,750	550,000	90,750	2,475,000
2006년	624,250	550,000	74,250	1,925,000
2007년	607,750	550,000	57,750	1,375,000
2008년	591,250	550,000	41,250	825,000
2009년	574,750	550,000	24,750	275,000
2010년	283,250	275,000	8,250	0

3) 전문위원 검토요지

○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2 제1항1호의 지방채 발행대상인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에 부합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 제1항2호(지방채의 종류등)의 차입금에 의한 부족재원의 조달계획은 관계법규에 부합된다고 하겠음.

○ '98년도 당초예산 심의 중에 제출한 사항은 법령에 근거한 사전적 절차에 어긋난다고 하겠으나, 북구청사 건립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부족재원 조달을 위하여 신중히 검토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심의결과

○ 본회의 심의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8호)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7년 12월 16일 북구청장

○ 회부일자 : 1997년 12월 24일

○ 상정일자 : 제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 ('97. 12. 2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구세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제77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로 신설되어 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로 구세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 관한규정이 신설되어 97년 10월 4일부터 시행토록 되어있어, 상위

법령과 중복 규정하고 있는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의 구세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동시에 지방세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규정을 마련하여 구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구세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규정 마련(안 제15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
- 예산 범위내에서 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에 근거하여 출석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지급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주요 내용은 97년 7월 15일 제정된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44호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 제15조의 구세심의위원회를 97년 10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로 조례의 조의 제목을 변경코자 함.

○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등을위한조례)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울산광역시 지방세 13430-428(97년 10월 21일)로 시달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처리지침(준칙)에 따라 조례의 조의 제목 개정은 관련법규에 부합된다고 하겠슴으로, 본 조례 개정은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조세 행정의 질적 향상과 세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변경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9호)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7년 12월 16일 북구청장

○ 회부일자 : 1997년 12월 24일

○ 상정일자 : 제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
제18차 본회의('97. 12. 24 ~ '97. 12. 26)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등을위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구세감면조례가 97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과세면제 등을 연장할 수 있는 내무부준칙이 지방세13400-388 (97. 10. 13)호로 일괄 허가되어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울산광역시북구구세를 감면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있음.

나. 주요골자 : 회의록 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주요내용은 북구구세감면조례의 과세면제 등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른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코자 하는 내용임.

○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으로서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등을위한 조례)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및 내무부 일괄 승인에 의거 조세감면조례 개정은 관련법규에 부합된다 하겠슴으로, 본 조례개정은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본회의 심의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0호)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7년 12월 16일 북구청장

○ 회부일자 : 1997년 12월 24일

○ 상정일자 : 제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 ('97. 12. 2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3항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별 처분기준과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300만원이하 또는 100만원이하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67조에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또한 위 내용과 같이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기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운영하고, 다만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구청장이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 따라서 조례 제20조로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7〕을 규칙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울산광역시의 과태료 부과기준(금액)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음.

○ 별표4의 쓰레기 봉투의 판매가격 중 일부가 현실과 불합리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조문 전면개정

• 조례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기준을 규칙으로 정함

○ 별표7의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 별표4의 쓰레기 봉투의 공급판매가격중 단독주택용 상차비 → 처리비, 처리비 → 봉투제작비로, 공동주택용 봉투제작비 → 수집운반비, 수집운반비 → 상차비로 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주요내용은 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인 별표 7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과, 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3조의 쓰레기봉투의 공급, 판매가격 기준인 별표 4의 단독 및 공동주택과 사업장용조례 내용 중 오기된 부분의 자구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임.

○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과태료 부과 징수의 구청장에게 위임" 규정과, 울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1조(과태료부과기준)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법규 및 상위조례에 부합된다고 하겠슴으로, 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제20조의 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조항 신설과, 동 조례 제13조의 조문내용 중 자구 수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심의결과

○ 본회의 심의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1호)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7년 12월 16일 북구청장

○ 회부일자 : 1997년 12월 24일

○ 상정일자 : 제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

('97. 12. 2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 건축법 제5조의3 규정에 의하여 일부조항이 현실과 불합리하여 일부 누락조항의 신설과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3항 제9호 규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울산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 제4조제1항을 "위원회는 영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개정한다.

○ 제18조 다음에 18조의2(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대행), 18조의3(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을 신설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주요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9호의 법령개정(97년 9월 9일)에 따라 "기타건축물 조례로 정한다는 사항"을 "기타 법령에서 지방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 변경된 규정을 상위 법령의 개정 범위내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 건축법 제23조 제1항과 동법 제72조와 관련한 북구 건축조례에 누락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임.

○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으로는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지방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개정법령에 맞게 북구건축조례를 개정하는 조치이며, 건축법 제5조제3항에서 열거한 조항(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특별시·광역시·도의조례) 중 광역시 조례를 준용할 수 없는 규정을 북구건축조례제정시 누락된 조항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관련법규 및 상위조례에 부합되고, 민원처리와 관련한 조례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본회의 심의 : 원안가결

□ '97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12호)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7년 12월 19일 북구청장

○ 회부일자 : 1997년 12월 26일

○ 상정일자 : 제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
제19차 본회의('97. 12. 26 ~ '97. 12. 27) 상정의결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7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의회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함.

3) 주요골자

가. '97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 예산내역(총괄)

(단위:천원)

구 분	계	기정예산액	증 감	비고
합 계	25,724,868	25,709,868	15,000	
일 반 회 계	24,790,800	24,775,800	15,000	
특 별 회 계	934,068	934,068	-	
새마을소득사업운용	84,063	84,063	-	
의 료 보 호 기 금	38,756	38,756	-	
생보자생활안정기금	138,261	138,261	-	
주 차 장	42,381	42,381	-	
농공단지조성사업	630,607	630,607	-	

나. 예산규모(총괄)

(단위: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	기 정 예 산 액	%	증 감	비고
계	25,724,868	100	25,709,868	100	15,000	
일 반 회 계	24,790,800	96.4	24,775,800	96.4	15,000	
특 별 회 계	934,068	3.6	934,068	3.6	-	
새마을소득사업	84,063	0.3	84,063	0.3	-	
의 료 보 호 기 금	38,756	0.2	38,756	0.2	-	
생보자생활안정금	138,261	0.5	138,261	0.5	-	
주 차 장	42,381	0.2	42,381	0.2	-	
농공단지조성사업	630,607	2.4	630,607	2.4	-	

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내역

○세 입

(단위: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	기 정 예 산 액	%	증 감	비고
계	24,790,800	100	24,775,800	100	15,000	
지 방 세	4,215,365	17.0	4,215,365	17.0	-	
세 외 수 입	981,020	4.0	981,020	4.0	-	
경상적세외수입	919,393	3.7	919,393	3.7	-	
임시적세외수입	61,627	0.3	61,627	0.3	-	
조 정 교 부 금	10,257,556	41.4	10,257,556	41.4	-	
지 방 양 여 금	-	-	-	-	-	
보 조 금	9,335,859	37.6	9,321,859	37.6	15,000	
국 고 보 조 금	1,220,008	4.9	1,205,008	4.9	15,000	
시 비 보 조 금	8,116,851	32.6	8,116,851	32.6	-	
지 방 채	-	-	-	-	-	

○세 출

• 장 · 관별

(단위: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	기 정 예 산 액	%	증 감	비고
계	24,790,800	100	24,775,800	100	15,000	
일 반 행 정	1,425,238	46.1	1,425,238	46.1	-	
입법및선거관리	358,342	1.4	358,342	1.4	-	
일 반 행 정 비	11,066,896	44.7	11,066,896	44.7	-	
사 회 개 발	4,884,930	19.7	4,884,930	19.7	-	
교 육 및 문 화 비	1,082,796	4.4	1,082,796	4.4	-	
보건및생활환경	1,724,269	7.0	1,724,269	7.0	-	
사 회 보 장 비	1,297,281	5.2	1,297,281	5.2	-	
주택및지역사회	780,584	3.1	780,584	3.1	-	
경 제 개 발	6,233,946	24.5	6,233,946	24.5	-	
농 수 산 개 발 비	368,925	1.5	368,925	1.5	-	
지역경제개발비	170,505	0.7	170,505	0.7	-	
국 토 자 원 보 존	5,674,516	22.2	5,674,516	22.2	-	
교 통 관 리 비	20,000	0.1	20,000	0.1	-	
민 방 위 비	189,834	0.7	174,834	0.7	15,000	
민 방 위 관 리 비	189,834	0.7	174,834	0.7	15,000	
지 원 및 기 타 경 비	2,056,852	9.0	2,056,852	9.0	-	
예 비 비	2,056,852	9.0	2,056,852	9.0	-	

• 세세항별

(단위:천원)

회계별	예산액	%	기정예산액	%	증감	비고
계	24,790,800	100	24,775,800	100	15,000	
경상예산	8,544,973	33.3	8,544,973	33.3	-	
인건비	3,839,701	15.0	3,839,701	15.0	-	
관서운영비	259,782	1.0	259,782	1.0	-	
경상적경비	4,447,490	17.3	4,447,490	17.3	-	
사업예산	14,188,975	57.9	14,173,975	57.9	15,000	
국고보조사업	1,697,678	9.2	1,697,678	9.2	15,000	
지방양여금사업	-	-	-	-	-	
시도비보조사업	7,918,156	30.8	7,918,156	30.8	-	
자체사업	4,558,141	17.9	4,558,141	17.9	-	
채무상환	-	-	-	-	-	
지방채상환	-	-	-	-	-	
채무부담행위상환	-	-	-	-	-	
예비비등	2,056,852	8.8	2,056,852	8.8	-	
예비비	2,056,852	8.8	2,056,852	8.8	-	
기타	-	-	-	-	-	

4) 심의결과

○ 본회의 심의 : 원안가결

○ 심의내역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의결조서

(단위:천원)

회계별		기정예산액(당초)	금회요구액(A)	예산심의내역					확정예산액(예산총액)	%	일시차입금
				삭감액(B)			예비비				
				세입	세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계		25,600,418	124,450	0	0		2,095,467	2,095,467	25,724,868	100	771,746
일반회계		24,767,520	23,280				2,056,852	2,056,852	24,790,800	96.3	743,724
특별회계		832,898	101,170				38,615	38,615	934,068	3.7	28,022
기타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84,063	-				33,695	33,695	84,063		2,522
	의료보호기금	38,756	-						38,756		1,163
	생활보호자생활안정자금	138,261	-						138,261		4,147
	주차장	42,381	-				4,920	4,920	42,381		1,272
	농공단지조성사업	429,437	101,170						630,607		18,918

6. 주요 질의 · 답변요약서

제5회 정기회(제10차 본회의) '97.12.15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한성두의원	○ 북구 신청사 부지 매입이 부진한 이유는?	□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 매입대금을 추산할 때 27억 5,000만원 정도인데, 올해 시에서 지원해 주는 당초 예산은 시비로 계상된 것이 아직 없습니다. 단, 1회 추경때 14억 6,000만원, 공제회비 27억 5,000만원이 오기는 하지만 건축비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부지매입 예산은 없음.
	○ 시에서 7,800평만 사라는 문서가 있습니까?	○ 97년 9월 12일 북구청사 매입확정 과정에서 예산사정으로 우선 부지 7,800평만 사라는 지시가 있었음.
진한걸의원	○ 임의단체 보조금 1억원중 8,000만원이 남았는데 1억 8,300만원이 증액된 이유와 향후 집행계획은?	□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 기준경비로 지침상 2억 8,300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7월 15일로 광역시가 되어 쓸 수 있는 기간이 짧았고, 임의보조단체에서 신청을 해야 자금 지급을 하는데 신청건수가 적었음. ○ 새마을과 바르게살기가 임의보조단체로 되어 있지만 하나의 지정보조단체로 되기 때문에

제5회 정기회(제10차 본회의) '97.12.15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거기에다 하고 나면 돈이 약8,500만원정도가 집행되고 1억 9,000만원정도가 남게됨. 또한 나머지 1억원 정도는 수정예산에 반영시켜 다른지역사업을 하도록 조치계획임.
	○ 전산 개발비로 1,990만원이 있는데 행정망용 S/W 구입시 기대효과는?	○ 지방세 업무와 예산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빠른속도로 계산을 할 수 있고 자료나 데이터가 잘 나올 수 있음.
진한걸의원	○ 초과근무수당비 지급에 실제근무시간과 일치하는가? 〔보충설명〕 우리 경제가 어려운만큼 초과근무수당지급시는 성격에 맞게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 전직원이 매일 하지는 않지만 기자실이 있어 직원 몇 명은 늦게까지 남아 근무를 할 때 직원 복지후생차원에서 직원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기도 함.
부의장 윤두환	○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500만원과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500만원이 있는데 중복성은 아닌가?	□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 시책추진일반추진비는 공보실의 업무활동비이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구청장의 구정홍보활동비임.
	○ 정액보조단체금으로 체육회지부에 480만원이 있는데 북구에 지금 체육회가 없는데 예산은?	○ 내년 6월 선거후 북구 체육회지부를 결성해 지부에 전액 지원할 계획임.

제5회 정기회(제10차 본회의) '97.12.15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의장 김성보	○ 민간경상보조에 구청장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에 5개당 1,000만원이 있는데 내용은?	□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고 일개배에 200만원이면 많은 돈이 아님. 내년에는 북구에 테니스, 게이트볼,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겠음.
	○ 시설에 구암마을회관 보수가 있는데 우리관내 다른 마을회관의 상태조사는 했는지? 〔보충설명〕 마을회관보수는 정상적 관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니 중·장기 계획에 의해 순위를 정해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람.	□ 총무과장 유병태 ○ 마을 회관은 총 35개소가 있는데 전수조사는 하지 못했고, 해당 동에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보고가 있는 것을 계상함.
	○ 농소2, 3동사무소 부지 토지매입 및 건립에 드는 비용은 당초 시비 보조를 받기로 했는데, 전부 구비로 되어 있는 이유는?	○ 재원확보를 위해 청사정비기금 55억원 승인신청을 내무부에 할 때 같이 2억여원 해서 4억원을 승인요청을 했는데, 내무부에서 동사무소 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해 줄 수 없다고 했음.

제5회 정기회(제11차 본회의) '97.12.16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부의장 윤두환	○ 재산세가 전년도보다 17억원이나 불어났는데 이유는?	□ 지방세과장 강함순 ○ 5월 1일 현재의 재산에 대해서 부과한 것인데, 광역시전 중구와 울주구에서 부과한 것에서 약 9% 증액됐는데 18억 8,700만원은 목표달성이 가능함.
	○ 사업소세는 직원 숫자에 따라 많고 적은지?	○ 사업소세는 두 가지로 부과함. 재산할 사업소와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있는데, 재산할은 사업장 면적의 제곱미터당 250원을 부과하는데 단, 연면적이 330㎡이상 되는 사업장에 한하여 부과함. 종업원할은 법인체 종업원 보수의 0.5/100를 부과함.
이병우의원	○ 과년도 수입에 대한 설명은?	□ 지방세과장 강함순 ○ 체납세액의 30%정도 올해 목표로 잡았음. 현재 체납세가 41억원 정도인데 아마 이월돼서 넘어가면은 30%정도 할 수 있는데 과다책정되었음. 체납세는 목표량보다 실적이 낮지만 최선을 다하겠음.

제5회 정기회(제11차 본회의) '97.12.16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진한걸의원	○ 재난대책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 위원회가 주로 하는 일은? 〔보충설명〕울산은 각 공단 등 재난의 위험이 많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됨.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 조례상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는 8월 10일자로 구성되어 한 번의 모임이 있었음. ○ 재난관리업무라는 것이 사고발생전에는 인재사고를 재난이라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비상소집을 하고 대책을 협의함.
이병우의원	○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한 설명은?	□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 전에도 있었던 부분으로 행려사망자 가매장비하고 시주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운동복, 모자, 기념품 등 지원 부분임.
한성두의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명은?	□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 신청에 의해 보청기, 휠체어, 지팡이의 수요량을 파악해 지원할 계획임. 건널목에 음향기기 설치도 가능함.
진한걸의원	○ 경로당식당을 어디에 지원하고 있는가?	□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 경로당식당은 내년도 첫 신규사업으로 아직 51개소 경로당을 둘러보지 못해 아직 지원하지 못했는데 할 만한 위치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임.

제5회 정기회(제11차 본회의) '97.12.16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한성두의원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과 세입 28,650만원의 설명은?	□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 현재 체납액이 97년도 2기분을 제외한 3,834만원임. 우리가 부담금을 받아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세입을 시킵니다. 그 중 10%의 징수교부금을 받아 2%는 광역시 예산으로 하고 8%만 우리예산으로 편성한 것 2,650만원임.
진한걸의원	○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차량 운영계획은?	□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 시범단지 공동주택 1,000세대를 선정해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송차량을 구입해 적판장으로 수송해 처리함. 하지만 현재 시범단지 및 적판장도 선정이 안되있는 상태임. 늦어도 내년 1/4분기 내에는 선정을 해서 조성해야됨.
	○ 차를 4대 구입하는데, 설명은?	○ 개인주택 및 농촌지역은 공동주택이나 사업장에 비해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상태여서 분리배출이 정착되도록 안내해야 됨. 농촌지역은 큰차 진입이 불가능하고 2대 가지고 계속 재활용품을 수거하기에 힘이 듬.

제5회 정기회(제12차 본회의) '97.12.17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진한걸의원	○ 최근 목욕료 약 10% 기습인상에 대한 생각은?	□ 지역경제과장 배성무 ○ 목욕료가 2,300원에서 2,6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목욕협회측에서 시와 절충을 해오다 시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기습인상을 한 것임. 목욕료의 원가분석을 아직 해본 바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철저히 하고 모든 물가와 유가 인상으로 인하여 불가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듬. 시와 긴밀히 협조해 인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음.
	○ 주·정차위반과태료 전산프로그램을 설치하려는 이유는?	○ 현재 우리구만 전부 수기로 하고 있어 전체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음. 우리구는 신설구라 지난번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삭감되었는데 엄청난 인력이 소모되고 있는 실정임.
진한걸의원	○ 주·정차위반과태료 프로그램 설치비가 300만원인데 유지보수비가 90만원은 많지 않은가?	□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프로그램을 운용하면서 유지보수비는 계속 소모됨. 설치비보다 유지관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음.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겠음.

제5회 정기회(제12차 본회의) '97.12.17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이병우의원	○ 기타보상금에 휴경논 쌀생산화 경운비 지원은?	□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현재 휴경논을 일제 조사하고 있는데 예상 면적은 12㏊임. 휴경논을 생산화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농기계를 임대해 경운에 드는 비용을 구에서 보상해 주는 것임.
이상원의원	○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108명에 5,800만원중 시비가 반이고 구비가 반인데, 당초 전액 시비였는데 구에서 반을 부담하는 이유는?	□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당초에 전액 시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시에서 재정 형편상 구에서 좀 부담하는 것으로 한것 같음.
한성두의원	○ 천곡초등학교 진입로 확보예산이 많은데, 그 대책은?	□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 약 18억원의 예산이 부족한데 시에다 시비를 보조해 달라고 건의해 놓고 있는데, 어려운 것 같음. 내년도 추경에 올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의원님들의 선처를 부탁함.

제5회 정기회(제13차 본회의) '97.12.19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정석수의원	○ 북구보건소는 신설이라 필요한 장비가 많은데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박혜경 ○ 기본장비는 준비단에서 전 보건소에 자문을 구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는 큰 어려움이 없이 운영됨. 하지만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사업에 상당한 차질을 겪고 있음.
	○ 보건소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소장님 생각은?	○ 사실 방역예산 같은 경우 예산이 적어 일을 적게하면 그만큼 구민들에게 방역사업이 부진하니까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진료약이 없어서 환자를 못봐주게 되면 그것도 말이 아닌 것임. 요즘은 구민들의 보건소 이용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음.
진한걸의원	○ 의장표창 부상품 구입이 있는데, 올해 실적은?	□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 의회 활동을 위해 수고한 공이 있는 공무원이나 일반인들에게 준 예가 시에도 있음. 올해는 의회 기간도 적고해서 못했음. 내년에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임.

제6절 제6회 임시회

1. 개최배경

○ 제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북구의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듣고 의회 차원에서의 지원방향 및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1998년 2월 4일 윤두환의원외 2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2월 6일 집회공고를 하여 1998년 2월 13일에서 2월 19일까지 7일간 개최되었다.

2. 개 회 사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황성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7일간의 회기로 무인년 새해 첫 회기인 제6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늦게나마 새해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소망하시는 일들이 다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무인년 새해를 시작한 지도 벌써 4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사회는 IMF 시대를 맞아 외환위기는 넘겼다고 하나, 사회적으로 총체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제불황으로 기업의 부도, 실업자 급증, 높은 물가인상, 각종 사건사고 증가 등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안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 입니다.

특히나 이 사회의 지도층이 솔선수범하여 근검절약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실업자가 앞으로 급증하리라 예상되는데, 우리 북구는 특히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근로자 등 우리 북구주민의 생활안정에 역점을 두고 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상반기로 우리 북구의회 초대의원의 임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해 쉴틈없이 뛰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수고가 임기 마지막날까지 이어져 초대의원으로서 그 소임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7일간 일정으로 각실 · 국별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임시회가 주어진 일정에 따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황성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 2. 13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장 **김 성 보**

3. 의사일정

제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98.2.13~2.19(7일간)

일시	차수	부의안건	비고
'98.2.13 (금) 11:30		(개 회 식)	본회의장
	1	1. 제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본회의장
14:00		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기획감사실 ○ 문화공보실	소회의실
'98.2.14 (토) 10:30	2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 총무사회국 - 총무과 - 지방세과 - 시민과	소회의실
'98.2.15 (일)		(일 요 일)	
'98.2.16 (월) 10:30	3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 총무사회국 - 민방위재난관리과 - 사회복지과 -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과	소회의실
'98.2.17 (화) 10:30	4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 산업건설국 - 지역경제과 - 농림수산과 - 건설도시과	소회의실
'98.2.18 (수) 10:30	5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 산업건설국 - 건축과 - 지적과	소회의실
'98.2.19 (목) 10:30	6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 보건소 ○ 의회사무국	소회의실

4. 본회의 활동

□ 제1차 본회의(98. 2. 13)

○ 제1차 본회의는 10시 30분에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 개의되어 98년 1월 14일자 북구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지방세과장 박용국, 환경위생과장 배성무,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등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었고,

○ 이종영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사항과 폐회기간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었다.

○ 제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하여 98년 2월 13일에서 2월 19일까지 7일간의 회기를 결정하였으며

○ 본회기중에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에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한성두의원외 1인으로 발의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하고

○ 제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은 의장제의로 상정하여 이상원의원, 이병우의원을 선임하였다.

○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과 총무사회국 소관의 총무과, 환경미화과에 대하여 해당 실·국·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17시 55분에 산회를 하였다.

□ 제2차 본회의(98. 2. 14)

○ 제2차 본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되어 의장제의로 강동동사무소보수공사에따른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시키고, 현장확인을 위하여 10시 36분에 정회를 선포하고 강동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

□ 제3차 본회의(98. 2. 16)

○ 제3차 본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되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하여 총무사회국 소관의 지방세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해당국·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이 있었고

○ 97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자료파악 및 세수증대 계획에 대하여 지방세과장으로부터 특별보고사항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한 후 16시 07분에 산회를 하였음.

□ **제4차 본회의**(98. 2. 17)

○ 제3차 본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되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하여 산업건설국 소관인 지역경제과, 농림수산과, 건설도시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당국·과장으로부터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하여 13시에 산회하였다.

□ **제5차 본회의**(98. 2. 18)

○ 제5차 본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되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하여 건축과의 오피스텔현황 및 향후관리계획에 대하여 건축과장으로 특별보고를 받고 질의·토론이 있었으며

○ 산업건설국 소관인 건축과, 지적과에 대하여 98업무보고를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하였으며 12시 5분에 산회를 하였다.

□ **제6차 본회의**(98. 2. 19)

○ 제6차 본회의는 14시에 개의되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하여

○ 의회사무국,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건소장 및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98년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이 있었고,

○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북구청사 건립관련 입찰방식결정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여 17시 40분에 제6차 본회의 끝으로 제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마쳤다.

5.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1) 보고현황

○ 보고서 제출일자 : 1998년 2월 11일

○ 보고일자 : 98. 2. 13 ~ 98. 2. 19(7일간)

○ 보고자 : 실 · 국 · 소 · 과장

2) 보고내용

○ 전부서 공통사항

- 기본현황(기구표현황, 정 · 현원현황, 분장사무현황 등)
- '98주요업무추진계획
- 현안사업
- 문제점 및 대책

○ 특별보고요구사항

- 지방세과 :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자료파악 및 세수증대계획
- 건 축 과 : 오피스텔 관리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

3) 주요시정요구사항

○ 북구는 열악한 재정으로 세입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함.

○ 북구 실업팀(남자역도) 창단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욕이 없음

○ 북구청사 신축은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해야 함.

○ 강동 오피스텔은 변장기능으로 사치성 재산세를 부과해야 됨.

○ 물가안정과 고용안정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됨.

6. 질의답변 요약서

제6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98.2.13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부의장 윤두환	○ 98년도 긴축재정운영의 목표로 경상적 예산을 20~30% 삭감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당초예산이 아주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는데, 여기서 다시 추가로 20~30% 삭감한다면 과연 업무가 돌아갈런지 의문스럽고, 또 세수가 당초예산대로 안 걷어질 부분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요망.	□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 이 관계는 당초에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이 확정될때 10%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현재 왜 20~30%정도 삭감을 하느냐면은 정부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지침이 내려왔는데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안할 수도 없고해서 이번에 편성하려함. 그리고 세수부분은 다른것은 감액되는 것이 별로없고 면허세 같은 경우는 9,900만원이 당초보다 증액되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8,400만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고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2억 7,000만원이 더 추가로 세수가 증대될 것임.
한성두의원	○ 금년에는 쟁송사건억제와 승소율을 제고하겠다는 내용같은데 대체적으로 행정에서 처리를 제때 잘 안해줘서 행정소송이 들어온 것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직원들이 소홀해서 패소되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제도	□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 북구청이 개청되고 나서 8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5건은 종결이 됐고, 승소가 3건, 패소가 2건임. 주로 농소같은 경우에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 반려된 것에 대한 소송이 많은데 민원처리를 하는 부서에서

제6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98.2.13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가 활용이 안되고 업무가 안되니까 결국은 소송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는 요즘 불복고지제도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음.
이상원의원	○ 업무용 오피스텔은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내는데 일부 입주자들 중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계산서가 없고 그냥 부가세 몇백만원 하는 식으로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데 오피스텔이 업무용이면 국세인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전수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 국세는 우리가 조사를 못하고, 지방세는 건축과에 분양된 것 중에서 두사람 안 내고 전부 다 취득세, 등록세를 다 냈음. 지방세과에서 지금 조사중에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조사를 해서 부과세 관계는 세무서에 의뢰해서 확인을 하고 회기중에 보고하도록 하겠음.
정석수의원	○ 남자역도 실업팀 창단문제인데 선수발굴에 있어서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늦은감이 있고, 실업팀을 창단을 할려면 추경으로는 불가능한 것 아닌가, 그리고 감독은 대충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 저의 솔직한 심정으로는 금년도에는 선수확보가 어려울것 같고 현재 예산이 1억원 돼 있는데 삭감됐기 때문에 추경이 된다하더라도 선수들이 연봉계약이고 다른 팀으로 가고 하기 때문에 추경분야는 고려를 해봐야 됨. 그리고 감독은 조광제총무이사 하고 역도전무 홍순천씨가 적극 후원되고 있음.

제6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98.2.13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진한걸의원	○ 올해는 북구에서 농소 창평동 체육공원하고 양정동 사격장 자리에 공원지구 지정을 해달라고 북구청에 올라온 것을 봤는데 도시국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린벨트 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받은 후에 공원지구 지정이 돼야 된다는 식으로 답변이 돼 있는걸 제가 본적이 있는데 행정의 절차를 봤을때 공원지구 지정을 해 달라고 하기전에 시에서 얘기하는 그린벨트 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선결한 후에 공원지구 지정을 해야 맞다는 식으로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안이 접혀져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당계에서는 지금까지의 진행상태 라든지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됐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임.	□ 문화공보실장 이수식 ○ 시하고의 견해 차이는 우리구에서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우선으로 요구를 했고 도시국 도시계획과에서는 구자체에서 그린벨트내 행위허가를 먼저 받아서 그 행위허가와 기본조사 설계를 붙여서 올리면 즉시 도시계획 재정비 허가를 해 주겠다는 그런 차이가 있음. G/B구역내 행위허가 권한은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행위허가 할 수 있는 권한 일부분을 먼저 행위허가 해서 공원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일부 행위조성돼서 공원조성된 그 첨부를 붙여서 그 다음 기회에 도시 재정비계획에 반영을 시킬 생각을 하고 있음.

제6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98.2.13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부의장 윤두환	○ 북구청사 추진계획을 보니까 당초 계획은 97년 12월에서 99년 12월로 3년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괄입찰방식으로 한다고 해놨는데 일괄입찰로 추진이 되면 올 12월달로 계약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지금까지 하던 방식이 아니고 일괄입찰을 택해서 올 연말에도 착공이 되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했는가?	□ 총무과장 유병태 ○ 설계한 업체가 바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고 책임한계의 문제가 해소되고 한번 입찰가가 결정이 돼 버리면 설계를 잘못했다든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외에 설령 설계가 잘못 됐더라도 업체의 이미지 손상이 있어서 스스로 설계 변경을 할때라든지 그때는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보고 승인해주면 물가상승요인만 적용이 되지 그 외에는 일체 우리 부담이 없어짐. 원칙은 100억원이상 공사는 일괄입찰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기타 공사 방법으로 했을때 추진일정을 잡아보니까 결국 3개월정도 앞당겨진다고 봐지는데 이것은 기타 공사 방법으로 할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을 뿐더러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입찰방법을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아직 확정이 된것은 아님.

제6회 임시회(제3차 본회의) '98.2.16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진한걸의원	○ 실제 각가정이나 일반단체에서 고철을 모았을때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지원체계 부분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철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천이 잘 안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변요망	○ 현행 수거체계는 가정이나 공동주택이나 청소차가 진입하는 장소에 모아놓고 저희들한테 배차요구를 하게되면 저희들 차 가지고 수송해서 재생공사 내지 다른 수집상에 판매해서 개인 앞으로 송금해주는 그런 수거체제 밖에 안돼있는데 특히 농촌지역에 폐농기구 같은것은 인력으로서 차에 승차하기가 곤란한 무거운 부분은 고물협회에 전화를 하면 인력장비를 지원해 주도록 수거체제는 만들어 놨는데, 다만 폐농기구 같은것은 각 가정이나 들판에 방치해 놓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수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
		□ 지방세과장 박용국
진한걸의원	○ 북구관내에 오피스텔이 총 다섯개로 알고 있는데 북구관내에 세군데는 사치성재산 잠정판단을 했는데 나머지 두곳은 사치성 재산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는 것이라서 안했는지 아니면 조사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답변요망	○ 저희들 관내에 씨사이드, 경방, 대우마리나 3곳은 조사를 끝냈고 나머지 두개 동 신명동에 서강주택, 구유동에 동호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사를 안했는데 안한 이유는 분양중에 있기 때문에 분양이 완료되면 다시 조사를 하도록 하겠으

제6회 임시회(제3차 본회의) '98.2.16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나 지금 현재 저희들도 분명히 사치성 재산으로 해서 과세하도록 방침이 굳어져 있음.
이상원의원	○ 재산세는 16배이고 취득세는 7.5배정도의 세금이 나오리라는 생각은 안하고 그냥 아파트 분양 받는 식으로 받았을 것인데 많은 세금을 중과세했을 경우에 민원이 야기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아예 행정에서 미루는 것은 아닌지?	□ 지방세과장 박용국 ○ 그런것은 아니고 대법원판례에서 나온 사항이 저희들이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시와도 협의를 했고 호실마다 점검을 했는데 사무실로는 도저히 인정이 안되고 시한부 별장 비슷한데 저희들은 소송을 하더라도 사치성 재산으로 과세하겠다 그렇게 결론이 났음.
진한걸의원	○ 견문보고제 운영활성화에 관해서 우리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방 또는 중앙으로 교육을 많이 가는데 교육갔다온 이후에 당연히 교육갔다온 소감이나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는 체계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을 의무화한 이후에 레포트 검증은 어떻게 하겠는지?	□ 시민과장 이동훈 ○ 저희들 현재 교육은 거의없고 앞으로 신규교육이라든지, 어떤 교육을 가게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기관을 통해서 깊이있게 계획을 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음.

제6회 임시회(제3차 본회의) '98.2.16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이병우의원	○ 북구가 중구에 있을때 중구청 민방위과에서 강동가는데 상연암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수질이 나빠서 약사동하고 두개 동을 약품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7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안에 수질검사를 언제 했으며 수질검사의 결과가 어떤지, 요즘 시내쪽에서 생수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요망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 비상급수시설에 700만원 예산은 약품처리가 아니고 정화시설인데 중구청에 있을때 700만원 들여서 했었고, 이번에 북구청에서 700만원 들여서 시설했는 것이 10t 가량밖에 처리를 못하는 시설임. 그래서 이번에 북구청에서 다시 7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10t 더 늘렸는데 몇 년만에 처음으로 불합격이 나왔는데 주위환경을 깨끗이 하고 20t을 다시 정수해 가지고 물을 뜨면 물상태로 봐서는 합격된다고 보고 있음.
한성두의원	○ 비상급수시설을 금년도에 농소1, 2동에 선정해서 1개소에 한다는데 국·도비도 결정이 됐고 3,670만원인데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농소체육생활공원이 확정이 되어서 부지보상 중에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비상급수 시설을 하는것이 안좋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요망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 3,6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체육공원담당하는 공보실장에게 정식으로 요청은 안하고 구두로 위치좋은데 10평 내지 20평을 확보를 해놔라고 구두로는 협조요청을 해놨음.

제6회 임시회(제3차 본회의) '98.2.16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진한걸의원	○ 청소년어울마당 프로그램의 대상자 7개 학교 중에서 4개 학교가 청소년어울마당을 회의적으로 본다는 회신이 온 배경은 행정이 일반학교 정서하고 안맞아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과반수가 넘는 학교가 참여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곳에 예산을 1,800만원 들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벤트 회사에 다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학교측하고 절충할 필요가 있겠는가 차라리 이것을 다른 쪽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 국비사업이라서 꼭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횟수를 줄여서라도 저희들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다시 절충해보고 또 시나 상부기관하고 의논해서 꼭 필요한 학교에만 하고 그외 학교분은 다른곳에 쓰도록 노력하겠음.
한성두의원	○ 우리 북구의 동천강이 오·폐수에 오염이 돼서 죽어가고 있는데, 과거 울주군 시대때 동천강을 살리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만들려고 건설국까지 다 허가가 난 사항인데 어느날 울주군하고 울산시하고 통합되고 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에다 연결시키는 부분으로 해서 이것이 전부다 사장이 돼 버렸음.	□ 환경위생과장 배성무 ○ 동천강살리기운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바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음. 아울러 저희들이 동천강의 오염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호계천과 동천강이 합류되는 지점에 학술에 의한 근거를 두고 간이 정화시설을 설치해 놓고 상류와 하류에 대해서 수질을 측정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성공리에 끝난다고 하면은 약

제6회 임시회(제3차 본회의) '98.2.16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3,000 내지 7,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동천강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험 가동중에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음.
한성두의원	○ 오·폐수 정화시설을 해서 그 물이 다시 동천강에 방류가 돼야 되는데 동천강살리기 운동을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울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요망. 또 경주시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그 부분도 답변요망	□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 작년에 경주시청을 방문해서 시청관계자들과 우리과장, 계장이 가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경주시청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고 공문도 전달했을 뿐만아니라 합동으로 경주관내에 있는 기업체 전부를 방문했는데 물론 폐수야 기준치 이하로 현재는 되고 있음. 또 아울러서 코오롱에서 하고 있는 대단지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현재로서는 피해가 직접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음.

제6회 임시회(제4차 본회의) '98.2.17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진한걸의원	○ 여러가지 노사안정대책에 대해서 고용촉진훈련 등등 많은 안을 내놨는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정리해고법이 통과되도록 기다리면서 당장 봄이 되면 간부사원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현장 단위까지 대대적인 정리해고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앞으로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답변요망	□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주요 기업체에 대해서는 매년 사용자와 노사대표자들 간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인일사후견인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완을 해서 사실상 구단위에서 한계는 있지만 행정기관이 사용자와 고용자의 중간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대변해 줌으로써 서로간에 화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한성두의원	○ 작년도부터 농소지역에 LPG에서 도시가스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이 어느정도 되었는지, 또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요망	□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주민들은 결과적으로 싼 LNG 도시가스를 원하고 있고 교체하고자 함. 가격이 싸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니까 그쪽으로 가야 됨.

제6회 임시회(제4차 본회의) '98.2.17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진한걸의원	○ 목욕료가 작년말에서 금년까지 약20%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목욕업소에 유가가 반영된 시점이 작년 12월에 목욕료가 인상될때 그때 이미 상당 부분이 인상요인에 반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들어서 또 인상된 부분들은 행정에서 여러가지 한계는 있겠지만 이 부분을 한번 시범케이스로 입회 조사를 실시해서 과연 인상요인이 타당한지 실사를 하실 의향은 없는지?	□ 상공가스계장 김용종 ○ LPG에서 LNG로 바뀌는 것은 법적인 명시는 없음. 목욕요금 자체는 목욕협회하고 광역시하고 울산시 전체에 통일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2,300원에서 2,600원으로 올랐다가 다시 기습적으로 3,000원으로 올랐는데 목욕협회에서 거의 통보 형식으로 하는데 요금자체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저희관내 전 목욕업소를 샘플 조사를 해서 타당성 분석을 한 이후에 건의도 하겠음.
진한걸의원	○ 산불예방대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금년도 사업비가 2억9,000만원정도 되는데 산불예방 부분은 민간단체로 하여금 산불예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관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요망	□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산불 예방에 2억 9,144만 2,000원이 소요되는데 물론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민간에게 위탁했을 경우에 최종적인 책임을 그 사람들이 과연 져 줄 수 있을런지, 그 다음에 이 사업비로써 민간에게 위탁을 할 수 있을런지 그 자체가 다소 의문스러움.

제6회 임시회(제4차 본회의) '98.2.17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의장 김성보	○ 국도변에 가로수 벚꽃을 심기 위해서 강동 새마을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시의 과장님들께도 부탁을 했지만 우리구에서도 지원이 가능한지?	□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 사실 가로수 식재 관계가 현 예산에서 30%가 삭감이 된것으로 알고 있음. 그래서 일단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있는것 가지고도 어려운데 삭감이 되면 다른것에 차질이 생김. 이 외의 예산은 없는데 가로수 식재 기술적인 지원 업무는 저희들이 챙겨 보겠음.

제6회 임시회(제5차 본회의) '98.2.18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진한걸의원	○ 만약에 오피스텔에 들어가 있는 소유자의 부재중으로 문이 잠겨 있으면 행정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인지 방안이 있다면 법원쪽에서 우리가 내부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요망	□ 건축과장 유병옥 ○ 지금 관리상에는 문이 잠겨있을때 저희들이 행정요청을 해서 자기들이 응해주면 확인이 가능함.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사가지고 주거용으로 안쓰고 놔놓거나 상가를 사서 상가를 안쓰고 놔놓는다고 해도 불법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함. 현재 강동에 소재해 있는 오피스텔은 여름철에는 거의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름철 이용시기에 집중적으로 확인토록 하겠음.
이상원의원	○ 법원에다가 정식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해서 이 오피스텔이 당초계획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도저히 문이 안열린다고 하면 그쪽에서 집달관을 보내 주는지? 이런 문제까지도 전면 감사를 구청에서 안하겠다고 하면 본청하고 감사원에 정식의뢰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겠는지?	□ 건축과장 유병옥 ○ 감사요청을 하시고 의회에서 사무적 발동을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할 사항이 아닌것 같고 저희들은 법원 협조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모르고 있음. 형사관계법은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점검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니까 파악해 보고 최대한 점검이 되도록 하겠음.

제6회 임시회(제5차 본회의) '98.2.18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부의장 윤두환	○ 도시계획재정비가 이번에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면 다시 여기에 따라서 해제를 해야 되는데 계속 북구에서 보존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것이 있는지?	□ 건축과장 유병옥 ○ 그것은 재정비가 되면 업무자체가 구청으로 위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임이 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지구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검토할려고 하고 있음.
이상원의원	○ 하자보수기간 내의 하자보수는 부도가 나기전에는 그 건설업체에서 해야 되지만 부도가 나고 난 뒤에는 주택공제조합에서 하자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주택공제조합에서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주택공제조합에서 실사팀이 와서 보니까 요구한 공문은 있지만 그때 까지는 이 업체가 부도가 안나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할 일을 자기네들이 떠 맡았는데 기간이 넘어서 못해 주겠다 이런 정도에서 그치고 있다면 주민들만 완전히 손드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 구청에서 지금까지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 건축과장 유병옥 ○ 하자기간은 1년부터 10년까지 각 공정별로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안에는 사업주체이고 기간이 지나면 하자보증을 해놓은 기관에서 보증보험 또는 주택공제조합이 되는데 무지개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제조합에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돈이 들기 때문에 서로 하자의 다툼은 사실 있었는데 행정기관에서 주택공제조합에 할 수 있는 강제규정은 없음. 저희들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제6회 임시회(제5차 본회의) '98.2.18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진한걸의원	○ 북구에서 개별공시지가 현실하고 실제 공시지가가 가장 차이가 심한 부분이 강동 해안쪽인데 일반도심지는 공시지가에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안가는 실거래하고 현실하고 차이가 너무 동떨어진다는 것이 지금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정서인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라도 개별공시지가 해안가의 공시지가 실사를 앞으로 어떠한 방향쪽에서 할 것인지 답변요망	□ 지적과장 김실근 ○ 사실 강동쪽하고 진장, 명촌지구는 실제 지가평균 상승률보다 많이 상승되었음. 100% 상승요인이 되었을때 과연 종합토지세라든지 다른 세금에 대한 구세 사항도 생각을 안할 수 없는데 올해 표준지가 했는것도 사실 다른지역보다는 좀더 상승을 많이 하도록 해 놓았음. 그것을 한꺼번에 현실적으로 접근을 못하고 해마다 조정할때 조금씩 조금씩 올릴계획으로 있는데 사실 저희들 관내의 올해 지가표준 상승률은 약 2.9%인데 지금 강동해안 재정비지구는 15% 내지 20%의 상승요인을 만들어 놨음.

제6회 임시회(제6차 본회의) '98.2.19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진한걸의원	○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어렵고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구가 재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보건행정에 들어가는 예산은 시대가 시대인만큼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계신지?	□ 보건소장 박혜경 ○ 청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 계시는 자리에서 저희들 예산부족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3월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잡고 있음.
진한걸의원	○ 획일적으로 과거에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약 2만명 가까이 되는 인원들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각 보건소장님들이 한번 회의를 해서 중앙기관에 건의를 해서 현실에 맞게끔 올바르게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보건행정의 손길이 가야할 곳은 가야 되겠지만 무분별하게 혜택이 다 가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 보건소장 박혜경 ○ 지금까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 주고 있는 예방접종 약값은 사실은 몇 백원에서 몇 천원정도의 싼 약이었고 그것을 국비보조금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고가의 약이 나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료로 예방접종해 주는 것은 예산적인 문제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음. 다음에 소장님들과 모일 기회가 생기면 한번 의논해서 울산의 예방접종의 방향을 잡도록 하겠음.

제6회 임시회(제6차 본회의) '98.2.19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진한걸의원	○ 최근에 거창군에서는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전산화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멀티미디어 시대가 도래되고 구민이나 직업분야를 초월해서 전산이라는 것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보편화되는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의회가 먼저 선도하는 의미로써 검토해볼 의향은 없는지?	□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 국회나 서울시의회나 경북도의회 같은 곳에서 개발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설치비용이 3억원정도 소요되고 기능은 일자, 회기, 위원회별 신속한 내용 검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우리구의 실정을 봐서는 본청에 옮겨갈 때까지는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함.
부의장 윤두환	○ 총무과 업무보고에 북구청사 일괄입찰과 기타 공사방법이 있는데 굳이 일괄입찰을 해야 되는지, 또 일괄입찰과 기타 공사방법으로 했을때 공사기간이 일괄입찰로 했을때가 더 빨리 될 수 있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더 빨리 될 수 있다는 것인지, 기타 공사방법의 입찰방식으로 했을때의 문제점, 그리고 추진이 이렇게 늦어진 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요망	□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 일괄입찰이 된 것은 지난 12월 10일 구정조정위원회 할때에 위원들의 의견을 좇아서 종합적으로 결론이 난 것이 일괄입찰방법이 가장 유리하다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것이고 일괄입찰방법은 기타 공사방법보다 설계변경이 적고 일괄입찰 책임한계가 명확하므로 하자보수기간 중 유지관리가 원활하고 착공은 다소 늦을지 모르겠으나 건축의 견실성 또 공사의 추진을 봤을때 빠르다고 판단이 되며 지역업체의 참여가 어려워 불만이 다소 있을 수

제6회 임시회(제6차 본회의) '98.2.19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있지만 일괄입찰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대충 기술자들은 이렇게 말을 함. □ 총무과장 유병태 ○ 이 공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100억원이상 신규복합공종공사이니까 대형공사라고 정의가 되고 그러면 대형공사는 원칙이 대안입찰, 일괄입찰, 실시설계시공입찰 세가지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외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주장하시는대로 기타공사방법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입찰방식 심의를 요구할 적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세가지 방법으로 가지 아니하면 아니될 사유를 명기해 주면 심의위원회에서 기타공사로 승인을 해주는데 저희들도 구정조정위원회때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업체 참여의 길이 좁아지는 이 문제를 가지고도 심도있게 이야기가 나왔음. 과연 기타공사로 갔을때 이것은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전국입찰을 안할 수가 없는데 만

제6회 임시회(제6차 본회의) '98.2.19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약에 기타공사로 갔다고하면 울산으로 묶어 달라고 지역업체들의 압력이 무조건 들어올 건데 아무리 묶어 줄려고해도 법상 울산지역 하다못해 경남, 울산을 합하더라도 공사입찰을 제한을 할 수가 없음. 그렇다고 볼적에 전국입찰이 되는데 만약에 전국입찰을 해서 입찰공고를 하면 울산에 제가 알기로는 한 개 업체 아니면 두 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를 할것인데 지역업체가 낙찰이 될 확률이 만약에 50%이상만 되어도 충분히 기타공사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한번 해 볼것이지만 실질적으로 2, 3개 업체가 참여를 하더라도 낙찰될 확률은 아주 미미함. 그런점이 있어서 방법은 일괄입찰로 요구를 해 놨음.

제6회 임시회(제6차 본회의) '98.2.19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이병우의원	○ 우리 의원들이 받아 들이기에는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한 것 같은데 어느 것을 하든지 빨리 하겠다는 의지를 표시 안하고 입찰방법 결정을 가지고 한달을 잡아 놨는데 이것도 잘못됐지 않았느냐, 만약에 이것이 어떠한 소정의 절차를 다 밟는데 자기사업이라고 계산했으면 아마 6개월은 당겼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입찰방법 결정 문제는 1월 10일날 저희들이 울산시에 요구를 해 놨는데 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유보가 되어 있고 최대한 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또 하다보면 더 늦어질 수도 있음.
		□ 총무과장 유병태
진한걸의원	○ 이제는 어떤 형태이든간에 가급적이면 지방업체가 이 공사에 참여하도록 최대한 문호를 넓히면서 단지 책임성을 엄격하게 묻고, 행정이 편의주의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의 도움과 건실한 시공, 두개를 맞춰 나갈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지역에서 지역업체를 불신할때 과연 지역업체는 다른 시·도에 가서 공사수주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주차장 문제, 북구가 남구에 와 있는	○ 일괄입찰로 갈것이냐 기타공사로 갈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구에서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닌데 지난해까지 중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하다가 금년 2월 2일날 입찰방식 결정하는 것까지 중앙기술심의위원회에 올라올 필요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지방기술심의위원회로 넘겨졌는데 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단 저희들의 요구는 일괄입찰방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는 기타방법으로 요구

제6회 임시회(제6차 본회의) '98.2.19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지형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노정이 되고 있는데 입찰방법은 일괄입찰방식 그대로 할 것인지 답변요망 그리고 공사입행 기본계획서 작성이 왜 작년 12월부터 작성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도 답변요망	를 했으면 자기네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일괄입찰방식 쪽으로 가라고 할 수는 있겠지마는 일괄입찰로 요구를 하면 그것은 당연히 원칙이기 때문에 일괄입찰로 내려옴.
이상원의원	○ 부지 14억 6,000만원 예산이 모자라고, 나머지 건축비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일단 결정만 되면 돈은 바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14억원도 확보된다고 했을때 착공해서 설계했을 경우에 대충 준공을 언제쯤 보고 있는지?	□ 총무과장 유병태 ○ 지금 예산만 제대로 확보가 된다고 하면 99년도 1월달에 착공을 해서 건축기간을 2년 잡고 있는데 2000년 말에 가서는 건축이 완공될 것이라고 봄.

제7절 제7회 임시회

1. 개최배경

○ 제7회 임시회는 98년 2월 24일 공포된 대통령령 15,652호 광주광역시 북구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3월 1일부터 울산광역시 동구 염포동 구역 일부가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됨에 따라 관련조례안 개정과 오피스텔 관련 업무보고를 위하여 98년 2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8년 2월 23일 집회공고하여 2월 26일 개최되었다.

○ 제7회 임시회에는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 심의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으로 오피스텔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회기는 98년 2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2일간으로 하였다.

2. 개 회 사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황성환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겨울을 뒤로하고 희망찬 봄기운이 온누리에 약동하는 이때 2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제7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그동안 다소 논란이 있었던 염포동이 우리 북구에 편입됨으로써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종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고, 행정사무처리상황에 관한 오피스텔 관련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생활과 문화권이 북구지역이면서도 행정구역상 동구로 편입되어 관내기업체나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던 염포동이 북구로 편입되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염포동이 북구로 편입됨으로써 그동안 주민들이 겪어왔던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해소되리라 믿으며, 우리북구로서는 면적이나, 인구, 재정적인 면에서 구세가 크게 확대되는 만큼 북구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변경 과정에서 주민간의 의견 차이로 갈등도 있었던 만큼 집행부에서는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도에 계획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활기차게 시작될 새봄을 맞이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모든 사업이 시작부터 철저하고 빈틈없이 추진되어 예산낭비나 구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전의원이 한마음이 되어 당면한 모든 현안문제들을 보다 심도있고 합리적이고 현실성있게 다루어 자치구 체제가 조속히 정착하고, 다른 어느 구보다도 살기좋은 북구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주어진 일정에 따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주신 황성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 2. 26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장 **김 성 보**

3. 의사일정

제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98.2.26~2.27(2일간)

일시	차수	부의안건	비고
'98.2.26 (목) 10:30		(개 회 식)	
개회식직후	1	1. 제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건	본회의장
		4.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북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 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소회의실
'98.2.27 (금) 10:30	2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 오피스텔관련업무보고 (기획감사실,지방세과,건축과)	소회의실

4. 본회의 활동

□ 제1차 본회의(98. 2. 26)

○ 제1차 본회의는 10시 30분에 이어 10시 43분에 개의되었으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안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 제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여 회기를 98년 2월 26일에서 2월 27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였고

○ 본회기중에 의안심사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위한 질의·답변을 듣

기 위하여 한성두의원외 1명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 제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서명의원선임의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하여 진한걸의원, 한성두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였으며

○ 염포동 북구편입에 따른 조례안인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동명칭과구역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질의·토론과 심의를 하여 원안가결시키고 11시 25분에 산회하였다.

□ 제2차 본회의(98. 2. 27)

○ 제2차 본회의 10시 30분에 개의되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하여 북구관내 오피스텔 관련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업무와 관련된 기획감사실, 지방세과, 건축과에 대하여 해당실·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여 사치성 재산세 부과 및 오피스텔 용도변경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조사로 불법사항이 적발될시에는 행정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으며 11시 50분에 산회를 하여 제7회 임시회를 마쳤다.

5.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4호)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년 2월 24일 북구청장

○ 회부일자 : 1998년 2월 26일

○ 상정일자 : 제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98. 2. 26)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대통령령 제15652호('98. 2. 24)에 의한 광주광역시북구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3월 1일 울산광역시 동구 관할구역중 염포동 지역이 북구로 행정구역이 조정됨에 따라 해당 동사무소 공무원의 전입에 따른 공무원 정원조정

나. 주요골자

○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의 총수중 동에 두는 정원의 총수 조정

• 동 정원의 총수 "100명" → 동 정원의 총수 "114명"으로 조정

2)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내용은 97년 9월 25일 제3회 임시회시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으로 제출된 동구 염포동의 북구편입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번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인 동구 염포동 일부(주민거주지역 전체)가 북구로 편입됨에 따라 북구정원의 총수 중 동에 두는 정원의 총수 100명을 114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임.

○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규정에 의거 98년 2월 24일부로 대통령령 제15652호로 공포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21조와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거 동사무소 공무원의 전입에 따른 공무원정원 조정은 관련법규에 부합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본회의 심의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5호)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년 2월 24일 북구청장

○ 회부일자 : 1998년 2월 26일

○ 상정일자 : 제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98. 2. 26)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대통령령 제15652호('98. 2. 24)에 의한 광주광역시북구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3월 1일 울산광역시 동구 관할구역중 염포동지역이 북구로 행정구역이 조정됨에 따라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조정

• 동구 염포동 → 북구 염포동 : 2,681필지, 5.54㎢, 3,621세대, 11,020명(주민 거주지역 전체)

나. 주요골자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중 편입받는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조정

• 행정동명 : 염포동

• 동장 정수 : 1명

• 관할구역 : 염포동 일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내용은 97년 9월 25일 제3회 임시회시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으로 제출된 동구 염포동의 북구편입과 관련사항으로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인 동구 염포동 일부(주민거주지역 전체)가 북구로 편입됨에 따라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조정 사항임.

○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규정에 의거 98년 2월 24일부로 대통령령 제15652호로 공포된 바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에 부합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의결과

○ 본회의 심의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6호)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년 2월 24일 북구청장

○ 회부일자 : 1998년 2월 26일

○ 상정일자 : 제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98. 2. 26)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대통령령 제15652호('98. 2. 24)에 의한 광주광역시북구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3월 1일 울산광역시 동구 관할구역중 염포동지역이 북구로 행정구역이 조정됨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 지정

• 동구 염포동 → 북구 염포동 : 2,681필지, 5.54㎢, 3,621세대, 11,020명(주민 거주지역 전체)

나. 주요골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염포동 사무소 소재지 지정

- 기관명 : 염포동사무소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산 140-1번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내용은 97년 9월 25일 제3회 임시회시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으로 제출된 동구 염포동 북구편입과 관련사항으로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인 동구 염포동 일부(주민거주지역 전체)가 북구로 행정구역이 조정됨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 지정사항임.

○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규정에 의거 98년 2월 24일부로 대통령령 제15652호로 공포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 지정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관련법규에 부합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본회의 심의 : 원안가결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1) 보고현황

○ 보고서제출 : 1998년 2월 24일

○ 보고일자 : 98. 2. 27

○ 보고부서 : 기획감사실, 지방세과, 건축과

○ 보 고 자 : 실·국·과장

2) 보고내용

○ 기획감사실 : 강동동 오피스텔 제세공과금 납부확인

○ 지방세과 : 강동동소재 오피스텔 사치성재산여부 실태조사

○ 건 축 과 : 오피스텔 조사계획보고

3) 주요시정 요구사항

○ 오피스의 기능을 하지않고 별장의 기능을 해서 사용했을 때 법원의 문을 개방해서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함.

○ 본래의 기능을 사용치 않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사치성 재산세 부과에 따른 증빙자료 확보를 위해 장기간 조사가 필요함.

6. 질의답변 요약서

제7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98.2.27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진한걸의원	○ 오피스의 기능을 하지 않고 별장의 기능으로 사용했을때 이미 분양되어 입주해 있는 사람의 주거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줄여주는, 멀리 내다 보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법원판결의 문을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 건축과장 유병옥 ○ 사법적인 사항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고, 계속 저희들 나름대로 전화요청 내지는 방문을 해서 조사 기간내에 전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이병우의원	○ 오피스텔을 세금 부과차원에서 해도 입주자하고 행정하고 연락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전수조사의 과정은 알아봤는지?	□ 건축과장 유병옥 ○ 그 내용은 당초에 허가날때 주용도가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로 안 쓰는 것은 누구나가 알기 때문에 안 쓴다면 결과적으로 휴양철에 쓴다는 것은 사치성이라고 보고 부과한 것으로 이야기 들었음.

제7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98.2.27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 지방세과장 박용국
이상원의원	○ 우리가 분명히 12월말까지 강동에 있는 오피스텔 다섯곳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1월달에 보고하라고 했는것이 8-1페이지에 보면 97년 12월 19일부터 98년 2월 21일까지 지방세과에서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보면 건축과인데 98년 7월 21일날 오피스텔 전 소유자에게 건축물 유지관리에 따른 내부확인 협조요청을, 개인하고 사업주에게 공문을 발송했다고 되어 있는데, 한쪽에는 끝이 나는 날이고 한쪽에는 시작하는 날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 저희들 지방세과에서는 현재 열 몇 차례 가서 판단한 결과 55세대에 대해서는 사치성으로 과세해도 관계 없겠다 싶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지금 8-5페이지에 보니까 저희들은 세금을 과세하는 그런 판단에서 하는 것이고, 건축과에서는 내부구조가 어떻게 변경이 잘못되었냐를 조사하기 때문에 합동으로 한 것은 아님. 개별적으로 지방세과는 지방세과대로,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따로 따로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임.
		□ 건축과장 유병옥
이상원의원	○ 이것을 공동으로 해야 맞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거용으로 확인된 세대가 있는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했을 경우에 대책을 어떻게 하는지?	○ 당초 허가가 된 용도대로 안쓰는 다섯 세대는 저희들이 2월 28일까지 시정토록 계고를 했음. 계고에 응하지 않을 때는 이행 강제금부과 등 법적인 고발조치 등을 강구토록 하겠음.

제7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98.2.27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진한걸의원	○ 만약에 사치성 재산을 부과 했을시와 일반적인 재산세 부과시에 어떤 차이가 나는지, 예를 들자면 국세는 어떻게 되고 지방세는 몇 배정도 차이가 나는지? 단지, 문제는 정말로 오피스텔을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현재 분양중인 이 부분들, 이 부분이 분명히 중과세를 해도 우리 행정이 결코 행정 소송에서 질 수 없다하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인데 이것을 장기간 실태조사를 증빙자료 확보 부분 보다는 기한을 이 자리에서 정해서 할 그런 것은 없는지, 어느 시점까지는 분양 중인 오피스텔을 조사를 해서……	□ 지방세과장 박용국 ○ 지방세는 취득세가 일반은 20/1,000이고, 사치성은 50/1,000인데, 그러니까 7.5배가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 현재 16배 돼 있음. ○ 저희들은 5월까지 재산세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다 마쳐야 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음.
정석수의원	○ 신한 정자 오피스텔 전체가 다 조사가 돼야지? 분양 안된 것은 안되는대로 내부시설이 어떤지 볼 수 있지 않느냐?	□ 지방세과장 박용국 ○ 분양중에 있는 것만 하지 분양이 안된 것은 안됨. 현재 분양 중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과세대상으로 못 잡음. 그래서 다음에 조사를 해서 보고할 예정임.

제7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98.2.27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 지방세과장 박용국
이상원의원	○ 과장님 뭔가 착각하고 계신것 같은데, 서강하고 신한 같은 경우에는 어느 개인이 50세대, 60세대 한꺼번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세대가 분양이 되고, 한 세대에 대한 세금을 내야되고, 이것이 독립된 것인데, 29세대가 분양이 됐으면 29세대는 마리나하고 같이 취급을 해 가지고, 조사가 돼야 되지, 5월달까지 있겠다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보는데……	○ 이건 현재 29세대 밖에 안되는 그 사항이, 현재 분양만 됐다 해서 다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하는 방법에서 그 기법하고, 전혀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세대라 하는 것은 저희들 진행 방법에 의해서 전부다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이고, 이것은 아직 기간중에 조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드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안 하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는 분양사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열쇠를 달라고 해서 전부 열어보니까 똑같은 구조였고, 24평, 32평 2가지 있었음.
		□ 지방세과장 박용국
이병우의원	○ 그런데 날짜를 끌면은 집행부가 더 욕을 먹을것 같애요. 왜냐하면은 방금 그얘기 뒷받침이 되는 것이 예고를 해 주는 건데, 다른 곳은 전부 사치성 재산세 예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팩시밀리나 거기에 필요한 오피스텔의 기능을 할 수	○ 그 기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한다하면은 그 기구만 넣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부 조사합니다. 수도요금, 전기요금, 엘리베이터 승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고지가 돼서 통보 간 것은

제7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98.2.27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있는 기구만 넣어버리면, 그렇게 기구를 넣도록 일부러 예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나중에 언성의 대상입니다. 왜 우리는 매기고 신한에는 작년에 다 분양이 됐는데, 그렇게 예고 기간을 늦게 잡아 가지고 오피스텔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 준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의 여지가 없는데 ……	저희들이 10군데에서 거둬온 것이 한 박스입니다. 거둬와서 전부 카피를 해서 갔다 줬고 이 한 가지만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과연 사무실을 쓰고 있나 안쓰고 있나, 이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를 짜서 방에도 가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소송에서도 안된다 하는 것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음.
		□ 건축과장 유병옥
의장 김성보	○ 오피스텔로 사용하다가 용도를 바꿔서 아파트가 된다든가,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 용도변경 허가가 법규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의장 김성보	○ 기능이 업무용으로만 써야 되지,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없네요?	○ 예.

제8절 제8회 임시회

1. 개최배경

○ 제8회 임시회는 98년 3월 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이 3건 제출되어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98년 3월 20일 정석수의원외 2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3월 20일 집회공고하여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 제8회 임시회에서는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으로 사치성 재산부과에 따른 업무보고 및 강동동사무소 안전진단결과 및 개보수 추진상황 등 현장확인이 있었으며, 회기는 98년 3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다.

2. 개 회 사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황성환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희망찬 봄기운이 온누리에 가득한 이때 2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제8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1일자로 염포동이 북구에 편입된 후 첫 회기로서 조승수의원이 우리 북구의회에 새롭게 등원하시게 되어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이제 염포동이 북구로 편입됨으로써 더욱 확대된 구세를 바탕으로 구민이 바라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북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경제위기 속에서 새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한달이 지났지만, 지금 우리사회는 계속되는 경제불황 속에서 한달에도 수많

은 기업의 도산과 실업자가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안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지난날 국난의 고비마다 나라를 구했던 선조들처럼 새로운 역사에 창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집행부에서는 특히 근로자와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해 행정을 펴나가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정활동의 초점을 경제난 극복과 사회안정에 맞춰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행정사무처리상황 등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주어진 일정에 따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황성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 3. 26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장 **김 성 보**

3. 의사일정

제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98.3.26~3.27(2일간)

일시	차수	부의안건	비고
'98.3.26 (목) 10:30 개회식직후		(개 회 식)	본회의장
	1	1. 제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본회의장
		4.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개정조례(안) 7.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 사치성재산부과에따른업무보고	소회의실
'98.3.27 (금) 10:30	2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 강동동사무소안전진단결과및개보 수추진상황 - 염포해안도로침하에따른대책추진 상황 2. 현장확인의건 - 염포해안도로침하지역 - 강동동사무소균열상태확인	소회의실 염포동 강동동

4. 본회의 활동

□ 제1차 본회의('98. 3. 26)

○ 제1차 본회의는 10시 30분 개회식이 있은 후 개의되었으며 염포동 북구 편입으로 의원정수가 증가되어 의장으로부터 의석재배정에 관하여 설명이 있었고, 북구의원으로 등록신고한 조승수의원의 인사가 있었으며

○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원정수 및 의안접수현황에 관하여 보고가 있었다.

○ 의장제의로 제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여 98년 3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2일간의 회기를 결정하였다.

○ 본회기중 의안심의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정석수의원외 2명으로부터 발의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 제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하여 이상원의원, 이병우의원을 선임하였으며

○ 98년 3월 21일 북구청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심의를 하여 원안가결하였고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하여 북구관내 오피스텔관련 사치성재산부과에 따른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총무사회국장 및 지방세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여 11시 40분에 산회를 하였다.

□ 제2차 본회의('98. 3. 27)

○ 제2차 본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되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하여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강동동사무소 안전진단결과 및 개보수추진사항과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염포해안도로 침하에 따른 대책상황을 보고받고 질의·답변이 있은 후 현지확인을 위하여 11시 20분에 회의를 중지하고 16시 05분까지 염포해안도로 침하지역(양정1, 2교), 도로개설 민원발생지역(양정동 484-49), 강동 어물동교량관리실태(금천교), 강동오피스텔, 강동동사무소 균열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

고 16시 06분에 산회를 하여 제8회 임시회를 마쳤다.

5.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8호)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년 3월 21일 북구청장

○ 회부일자 : 1998년 3월 26일

○ 상정일자 : 제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98. 3. 26)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매매, 차입,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일 때 입찰참가 신청인에게 입찰소요경비를 부담시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본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 제1조(목적)에 "입찰참가신청"을 삽입
- 별표 1 제증명등수수료 항목에 "입찰참가신청, 1건, 10,000원"을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내용은 우리 구가 시행하는 매매, 도급, 임차, 기타의 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 입찰참가신청인에게 입찰수수료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입찰참가신청"의 제명을 삽입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 건당 1만원을 추가하는 일부 개정사항임.

○ 관련법규등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고, 지방재정법 제130조 제1항의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법규에 부합되며 또한 북구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본회의 심의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9호)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년 3월 21일 북구청장

○ 회부일자 : 1998년 3월 26일

○ 상정일자 : 제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98. 3. 26)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제6조 제2,3항의 일부조항이 불합리함에 따라 일부조례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위원회의 기능은 자문기구가 아닌 심의의결기구임.

나. 주요골자

○ 제6조(위원의 위촉) 제2, 3항의 "위원회의 자문업무"를 "위원회의 업무"로 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주요내용은 본건 관련조례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문안의 내용 중 "위원회의 자문업무"를 "위원회의 업무"로 자구의 수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는 바,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관련법규에 부합되며, 입법취지는 같으나 내용이 불합리하여 위원회 운영에 차질을 가져오는 문안의 자구수정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본회의 심의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0호)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년 3월 21일 북구청장

○ 회부일자 : 1998년 3월 26일

○ 상정일자 : 제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98. 3. 26)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제6조 제6항의 일부조항이 중복됨에 따라 불합리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제5조(총무사회국)제2항제6호와 중복

나. 주요골자

○ 제6조 제6항 제2호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건축물대장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내용은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제6조 제6항 제2호(산업건설국 지적과의 분장사무)의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건축물대장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임.

○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0조의 "시·군·구의 기구 설치기준" 등 관련법규에 부합되고 97년 7월 15일부로 울산광역시 승격에 의한 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새로이 제정시 잘못된 사무분장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의결과

○ 본회의 심의 : 원안가결

□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의건**

1) 보고현황

○ 보고서 제출일자 : 1998년 3월 25일

○ 보고일자 : 1998년 3월 26일 ~ 1998년 3월 27일(2일간)

○ 보고부서 : 총무과, 지방세과, 건설도시과

○ 보 고 자 : 국장

2) 보고내용

○ 총 무 과 : 강동동사무소 안전진단결과 및 개보수 추진사항

○ 지방세과 : 사치성 재산조사 및 부과추진사항

○ 건설도시과 : 염포해안도로 침하에 따른 대책추진사항

3) 주요시정 요구사항

○ 신한정자 오피스텔에 대해 조사인력을 보강하여 하절기 등 주말에 밀

착조사하여 사치성재산으로 부과추진해야 할 것임.

○ 강동동사무소는 공신력있는 안전진단결과에 의거 보수, 또는 새로운 시공을 추진해야 됨.

○ 염포해안도로 침하에 대하여 시행자 및 현대자동차에 하자보수 및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함.

6. 질의답변 요약서

제8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98.3.26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진한걸의원	○ 북구 관내 전체에서 일반도로로 지목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지화 돼 있는 부분을 전수 조사해서 조속히 해당자에게, 당연히 우리 행정쪽에서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보는데, 북구 전체에 작은도로 부분이든 어떤 형태든 전수 조사를 해서 지적과에서 추후에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동의할 의향은 없는지?	□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 예, 그렇게 하겠음.
진한걸의원	○ 강동동사무소가 건축된지 20년 정도된 것 같은데 울주군에서 북구청으로 인수인계 할 때 A급으로 판정한 근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상부바닥이 균열이 되어 있고 보의 최대 길이가 10m정도 쳐져 있는 크랙이 발생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든간에 행정이 아무리 축소된다 할지라도 강동동사무소 명맥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봤을때 공신력있는 안전	□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 울주군에서 안전점검했을때는 자체 민방위과 직원이 했고 저희들도 건축직 협조로 한 것으로 알고 그래서 A급 판정이 나왔고, 제가 며칠전 강동면에 가 봤는데 가서 안전공단에서 넘어온 회신문하고 현장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은 보가 10m정도 거리가 되는데 육안으로 봐서는 사실 쳐졌다는 것을 잘 모를 정도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학이

제8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98.3.27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진한걸의원	진단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무효화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받은 이후에 과연 보수가 타당한지, 아니면 새로 시공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안전진단 받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요망	나 기술진의 진단을 받으려면 최하 1,000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공사비보다 오히려 진단비가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생기고 또 아울러서 현재 건물이 20년 됐는데 앞으로 전반적으로 보수했을 때는 상당한 기간 동안은 쓸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음.
한성두의원	○ 98년 2월 28일날 전문기관 정밀안전점검후 보수보강지시를 광역시에서 받았는데, 전문기관 정밀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산업안전공단은 전문기관 정밀기관이 아닙니까. 도대체 이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이런 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인지?	□ 총무과장 유병태 ○ 한국산업안전공단은 건축이 되어 있는 부분의 하자부분을 진단하는 전문기관은 아님.
정석수의원	○ 국장님 조금 전에 설명중에 다리가 떳는지 바닥이 침하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다리가 뜰 수도 있는지?	□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 국장님 대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1, 2교 진행방향, 즉 방어진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지반이 연약지반이고, 지반자체를 자기네들은 완벽하게 해서 도로포장을 했다고 하는데,

제8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98.3.27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현지에 가보면 교량가기 전에 지반이 약간 표가 남. 그래서 이 자체를 현대자동차에서 현대엔지니어링하고 그 당시에 시공했던 현대건설에다가 현재 공문을 보내놓고 상세한 답변을 저희들이 받아봐야 됨.
조승수의원	○ 시행자가 자동차인데 기부체납을 시에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대건설을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물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행자인 현대자동차에 물어야 되는 것인지, 법률적인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 제가 판단했을 때는 현대자동차로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J-CaA하고 차량과 적장 부지 조성공사를 시장이 승인을 내주면서 조건부로 해안도로를 개설해서 울산시에 기부체납해라 이런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원인자는 현대자동차가 되겠음.
부의장 윤두환	○ 현재 현대건설에서 그 도로를 개설할 때 지질검사를 해보니까 사실 연약지반에도 20㎝의 오차는 없어야 됨. 그렇지만 기부체납한다고 충분한 보강을 안했기 때문에 20㎝ 오차가 있을 것이라는 것인가?	□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 예. 그렇음. 설계과정에서 허용잔류침하량을 자기네들이 계산을 한 것이고, 예를 들면 부산 남해고속도로쪽에 보면 연약지반 표시를 해 놓았음. 그 구간도 도로공사에서 계속 그 부분은 덧씌우기를 하고 있음.

제9절 제9회 임시회

1. 개최배경

○ 제9회 임시회는 98년 4월 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98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보고의건과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98년 4월 21일 한성두의원외 2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4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여 98년 4월 28일 개최되었다.

○ 제9회 임시회에서는 '98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진한걸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질문·답변이 있었으며 회기는 98년 4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하였다.

2. 개 회 사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황성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싱그러운 신록의 계절 오월의 문턱에서 2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제9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98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및 '98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등을 심의하며, 진한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하는 심각한 경제위기로 사회의 곳곳에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으로 노사분규의 조짐이 보이는 등 사회적 불안이 더욱 가중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 있는 국내최대의 자동차 생산업체인 현대자동차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노사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하루에도 수많은 근로자가 직장을 잃고 있는 우리의 실업 현실에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업문제 해결에 많은 한계가 있겠지만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집행부에서는 실업대책에 특히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실업문제와 고용안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의정활동을 펴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통합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정국은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으로 돌입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정치 · 경제적 의미는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되는데, 국가 경제가 IMF 관리하에 놓여있는 위기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예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돈안쓰는 공명선거에 대한 후보자 개개인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될것이며, 집행부에서도 철저한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6 · 4지방선거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주어진 일정에 따라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황성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4.28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장 **김 성 보**

3. 의사일정

제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98.4.28~4.29(2일간)

일시	차수	부의안건	비고
'98.4.28 (화) 10:30 개회식직후		(개 회 식)	본회의장
	1	1. 제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98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본회의장
		5. '98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	
		○ 예산안심의 - 기획감사실 - 총무사회국(총무과) - 산업건설국(지역경제과) -보건소 -계수조정 ○ 총액의결	소회의실
'98.4.29 (수) 11:00	2	1. 구정에관한질문 ○ 진한걸의원	본회의장

4. 본회의 활동

□ 제1차 본회의('98. 4. 28)

○ 제1차 본회의 10시 30분 개회식에 이어 개의 되었으며

○ 98년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인사이동된 김기열총무사회국장의 인사가 있었으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사항과 안건접수현황에 관하여 보고가 있었으며,

○ 의장제의로 제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여 98년 4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2일간의 회기를 결정하였고

○ 구정질문의건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듣기 위하여 진한걸의원외 2명으로부터 발의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하였고

○ 의장제의로 제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의건을 상정하여 정석수의원, 진한걸의원을 선임하였다.

○ 9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하여 강석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실·국·과·소장으로부터 세부사항설명과 질의·답변 심의를 하여 원안가결시키고 11시 45분에 산회하였다.

□ 제2차 본회의('98. 4. 29)

○ 제2차 본회의는 11시에 개최되어 진한걸의원의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하여 북구관내의 실업대책과 주거밀집지역 소방도로확보와 무허가건물처리행정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진한걸의원의 질문이 있었고 이에 황성환 부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하였으며 본건에 대하여 의원들의 보충질문과 답변을하여 11시 50분에 산회를하여 제9회 임시회를 마쳤다.

5.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98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123호)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년 4월 24일 북구청장

○ 회부일자 : 1998년 4월 26일

○ 상정일자 : 제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98. 4. 26)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8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98제1회 추가경정예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내역(총괄)

(단위:천원)

구 별	계	%	기정예산액(당초)	%	증 감(제1회)	비고
합 계	37,975,720	100	37,973,702	100	2,018	
일 반 회 계	35,588,205	93.7	35,586,187	93.7	2,018	
특 별 회 계	2,387,515	6.3	2,387,515	6.3	-	
새마을소득사업운용	87,380	0.2	87,380	0.2	-	
의 료 보 호 기 금	933,952	2.5	933,952	2.5	-	
생보자생활안정기금	118,300	0.3	118,300	0.3	-	
주 차 장	124,830	0.3	124,830	0.3	-	
농공단지조성사업	1,123,053	3.0	1,123,053	3.0	-	

□ 예산규모(총괄)

(단위:천원)

구 별	계	%	기정예산액(당초)	%	증 감(제1회)	비고
합 계	37,975,720	100	37,973,702	100	2,018	
일 반 회 계	35,588,205	93.7	35,586,187	93.7	2,018	
특 별 회 계	2,387,515	6.3	2,387,515	6.3	-	
새마을소득사업운용	87,380	0.2	87,380	0.2	-	
의 료 보 호 기 금	933,952	2.5	933,952	2.5	-	
생보자생활안정기금	118,300	0.3	118,300	0.3	-	
주 차 장	124,830	0.3	124,830	0.3	-	
농공단지조성사업	1,123,053	3.0	1,123,053	3.0	-	

□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내역

○ 세 입

(단위:천원)

구 분	계	%	기정예산액 (당초)	%	증 감 (제1회)	비고
합 계	35,588,205	100	35,586,187	100	2,018	
지 방 세	10,464,000	29.4	10,464,000	29.4	-	
보 통 세	4,644,000	13.1	4,644,000	13.1	-	
목 적 세	5,705,000	16.0	5,705,000	16.0	-	
과 년 도 수 입	115,000	0.3	115,000	0.3	-	
세 외 수 입	2,776,527	7.8	2,776,527	7.8	-	
경상적세외수입	2,409,868	6.8	2,409,868	6.8	-	
임시적세외수입	366,659	1.0	366,659	1.0	-	
조 정 교 부 금	14,502,261	40.8	14,502,261	40.8	-	
지 방 양 여 금	-	-	-	-	-	
보 조 금	7,845,417	22.0	7,843,399	22.0	2,018	
국 고 보 조 금	2,497,361	7.0	2,497,361	7.0	-	
시 비 보 조 금	5,348,056	15.0	5,346,038	15.0	2,018	
지 방 채	-	-	-	-	-	

○ 세 출

• 장 · 관별

(단위:천원)

구 분	계	%	기정예산액 (당초)	%	증 감 (제1회)	비고
합 계	35,588,205	100	35,586,187	100	2,018	
일 반 행 정	16,960,392	47.7	16,607,882	46.7	352,510	
입법및선거관리	880,844	2.5	876,808	2.5	4,036	
일 반 행 정 비	16,079,548	45.2	15,731,074	44.2	348,474	
사 회 개 발	8,975,378	25.3	8,636,509	24.3	338,869	
교 육 및 문 화	691,965	1.9	691,965	1.9	-	
보건및생활환경	4,229,258	11.9	4,190,389	11.8	38,869	
사 회 보 장 비	3,007,922	8.5	3,007,922	8.5	-	
주택및지역사회	1,046,233	3.0	746,233	2.1	300,000	
경 제 개 발	8,629,919	24.2	8,626,319	24.2	3,600	
농 수 산 개 발	654,693	1.8	654,693	1.8	-	
지 역 경 제 개 발	265,959	0.7	262,359	0.7	3,600	
국 토 자 원 보 존	7,689,267	21.6	7,689,267	21.6	-	
교 통 관 리 비	20,000	0.1	20,000	0.1	-	
민 방 위 비	264,570	0.7	264,570	0.7	-	
민 방 위 관 리 비	264,570	0.7	264,570	0.7	-	
지 원 및 기 타 경 비	757,946	2.1	1,450,907	4.1	△692,961	
예 비 비	757,946	2.1	1,450,907	4.1	△692,961	

• 세세항별

(단위:천원)

구 분	계	%	기정예산액 (당초)	%	증 감 (제1회)	비고
합 계	35,588,205	100	35,586,187	100	2,018	
경 상 예 산	18,982,656	53.3	18,610,213	52.3	372,443	
인 건 비	9,422,217	26.5	9,256,143	26.0	166,074	
관 서 운 영 비	619,799	1.7	609,409	1.7	10,390	
경 상 적 경 비	8,940,640	25.1	8,744,661	24.6	195,979	
사 업 예 산	15,847,603	44.6	15,525,067	43.6	322,536	
국 고 보 조 사 업	3,301,331	9.3	3,301,331	9.2	-	
지 방 양 여 금 사 업	-	-	-	-	-	
시 도 비 보 조 사 업	6,563,987	18.5	6,559,951	18.4	4,036	
자 체 사 업	5,982,285	16.8	5,663,785	16.0	318,500	
채 무 상 환	-	-	-	-	-	
지 방 채 상 환	-	-	-	-	-	
채무부담행위상환	-	-	-	-	-	
예 비 비 등	757,946	2.1	1,450,907	4.1	△692,961	
예 비 비	757,946	2.1	1,450,907	4.1	△692,961	
기 타	-	-	-	-	-	

4) 심의결과

○ 본회의 심의 : 원안가결

6. 질의답변 요약서

제9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98.4.28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진한걸의원	○ 보건소 입장에서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안들이 금년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보건소장 박혜경 ○ 하절기 방역예산 확보와 예방접종, 진료약품비 이 세가지임.
부의장 윤두환	○ 예비비에서 6억 9,200만원을 감 했는데 이렇게 되면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 약 2%정도 됨 ○ 예비비 남은 것이 7억 5,700만원인데
부의장 윤두환	○ 지금 4월달인데 북구가 세입부족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건데 예비비가 2%라도 괜찮은지?	○ 예, 예비비 7억 5,700만원만 하면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그러면 앞에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편익 숙원사업해서 3억원을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 주민 건의사항이나 반상회때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것을 종합해서, 광역시 1회 추경이 아직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서 넣지도 못하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여기서 편성해서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각동에 배부할 계획임.

제9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98.4.28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정석수의원	○ 27페이지 하단에 국고대여 자녀장학금부담금 부분에 사항별 설명 하실때, 돈이 남아서라는 그런 말이 들리는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요망.	□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 국고대여 장학금은 본인 또는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 등록금을 융자로써 주는 돈인데, 졸업후 2년후에 3년분할 상환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25명이 해당 됐는데 여기에 잔액이 남은 사항임. 5,200만원은 신청이 들어와서 주고 나머지가 4,800만원 남음.
조승수의원	○ 지방고시 합격자 교육위탁부담금 이 부분은 원래 구에서 하는 것인지?	□ 총무과장 유병태 ○ 7월 15일 이전에 울산시에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각 구별로 두명씩 거의 강제 배정식으로, 선발은 됐고 배정은 광역시 이후에 배정이 됐음.
	○ 그 예산을 우리 구에서 해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 구청직원으로 되어 있음.
	○ 연수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 1년간이고 내년 2월 28일날 북구로 복귀하게 됨.

제9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98.4.28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진한걸의원	○ 물론 좋은 인재가 북구에 배치된다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중앙정부가 선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이 선발된 이후에 이수해야될 교육비는 지방정부에 떠 넘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국가가 사람을 선발했으면 그 선발된 사람들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는 데까지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지방에다가 그 사람들을 배치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조직의 사람의 배치상 맞다고 생각되고, 일부 구 관내에서는 백몇십만원의 교육비가 없어가지고 교육선발자가 교육을 못할 이런 지경에 까지 와 있는데, 여기에 국내 여비하고 지방행정연수원에 내야할 3,200만원하고 두 개 합하면 5,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지금까지 동 주민들과 함께 오랫동안 고생해온 지방공무원들은 배제가 되고, 이런 사람에게 소액도 아니고 많은 금액의 예산이 가 진다는 것은 강제적인 부분이 아닌것 같으면 1군 4구	□ 총무과장 유병태 ○ 고시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지방고시제도가 생겼는데, 지방고시제도가 생기면서 각 시·구·군별로 지방고시자들을 선발을 하라 해서 우리 구에는 행정직 사무관 한 명하고, 환경직 한 명하고 두 명인데 지방고시를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 발령을 받은 것임. 때문에 이 분들을 1년간 교육을 시켜서 바로 일선 부서에 투입을 시키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비 부담은 어쩔수가 없고, 해줘야 되는 사항임.

제9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98.4.28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에서 협의를 하셔서 향후에 선원을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행정에서 이런 부분은 시의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이야기 할 의향은 없는지?	
진한걸의원	○ 관행적으로 우리가 쭉 해 왔으니까 해줘야지,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원래 지방고시나 국가고시 자체는 근원적으로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되어 있는데, 지방고시라는 것은 원래 시 자체에서 뽑은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필요인원을 시에다가 요청을 하고 시는 다시 총괄적으로 해서 내무부에 선발만 위임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음. ○ 근원적으로 보면 구에서 구청 자체로 필요해서 직원을 뽑은 것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발령도 물론 이쪽으로 날 것이고 교육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임. 구가 필요없다고 하면 매년 할당제로 강제할당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뽑을 수도 있음.

제9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98.4.28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조승수의원	○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공무원이 9명이고 일반인이 6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 구성이 됐는지?	□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3월 25일날 위촉을 했고, 인원에 대해서는 지침상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항임.

제10절 제10회 임시회

1. 개최배경

○ 제10회 임시회는 초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정활동을 마감하고 98년 6월 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안)등 조례안 6건이 제출되어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 98년 6월 조승수의원외 2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6월 9일 집회공고하여 98년 6월 15일 개최되었다.

○ 제10회 임시회에서는 황성환 구청장직무대행의 제1대 의회 마무리 시점에 즈음한 인사가 있었고,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건을 심의하여 원안가결하고, 회기는 98년 6월 15일 하루만으로 하였다.

2. 개 회 사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황성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짙은 녹음의 계절 유월을 맞아 1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제10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4일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순조롭게 끝나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국가경제의 위기상황과 어수선한 사회분위기 속에서도 선거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로 사실상 북구의회 초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신설 구로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봉사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수고와 정성이 지방자치사에, 그리고 지역발전에 큰 분수령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그리고 북구주민 여러분!

이제 7월 1일이 되면 대망의 제2기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모든 주민 구성원이 합심단결하고, 스스로 성숙한 자치역량을 키워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기좋은 북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국제통화기금의 관리를 받고 있는 국가경제의 위기속에서 경제회생을 위해 각 경제주체들이 아픔과 고통을 함께 견디어 나가고 있습니다.

비온뒤에 땅이 더욱 굳어진다는 옛말이 있듯이 지금의 고비를 잘 넘기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주어진 일정에 따라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황성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 6. 15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장 **김 성 보**

3. 구청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성보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오늘 제10회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인사를 올리게 됨을 매우 뜻있고 감회 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해 7월 15일은 100만 시민의 큰 열망속에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되고 더불어 우리 북구도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과 함께 신설 자치구로 탄생되었습니다.

자치구 출범의 가장 큰 의미는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정치적 의미와 함께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행정을 자주적으로 펼쳐 나가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저는 당시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울산광역시 준비를 위한 북구설치준비단장으로 임명받고 북구 출범 준비를 하였으며, 7월 15일자로 제1기 기초자치단체 부구청장에 취임하여 구정을 이끌어 가는 책임자로서 400여 직원들과 구민제일중심의 봉사행정실천, 튼튼한 자치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노력하였습니다.

자치구 탄생 1년을 앞둔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11만 북구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넓은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황무지에서 출발한 북구가 이나마 자치구로서의 독자적인 구정을 수행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11만 구민의 화합과 동참의 덕분이라 믿습니다.

특히 자치행정의 근간이 되는 자치입법인 조례·규칙의 사전 검토와 신설 구의 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걱정하던 일이 기억에 새롭습니다.

그동안 의회의 전통적이고 본질적인 기능인 조례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 · 의결,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하는 행정사무감사, 시민청원의 처리, 중요집행사항의 의결청취 등을 통하여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 · 시정하고 구민의 뜻을 반영하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각종 조례개정의결, 염포동 행정구역편입 청원처리, 북구청사 건립정비기금 차입의결 및 재원확보노력,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 '98당초예산의결, 낮은 재정자립도 보전을 위한 시비보조금 확보노력 등은 대표적인 활동으로 손 꼽을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보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북구는 지역특성상 도시적 요소와 농촌적요소가 공존하며 주거, 공단, 해안관광 · 수산의 3개 권역은 물론 지역적 · 기능적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개발지에서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도시기반시설 미비 등을 비롯한 다양한 행정수요를 안고 있는 지역이면서 성장잠재력 또한 매우 큰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 · 농의 조화와 균형을 이룬 도시, 쾌적하고 살시좋은 도시, 활기에 넘치는 도시, 아름답고 인정미 넘치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높은 자치의식을 바탕으로 주민역량을 한곳에 결집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의 시대는 지방분권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방화란 바로 지방자치를 뜻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자율권이 확대되고 지역의 특성을 극대화 하는 지역중심의 행정과 개발을 추진하여 지역발전을 독자적으로 꾀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IMF체제의 경기위기 상황에서는 모두가 이해와 협력으로 중지를 모으고 지역현안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성보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는 6월 30일이면 저는 그야말로 자치시대를 활짝여는 민선구청장에게

그동안 추진해온 구정과 지역현안 문제들을 인계하게 됩니다.

그동안 400여 우리 직원들과 함께 북구를 어느 자치단체에 못지않게 발전시키고 튼튼한 구정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일하였습니다만,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음을 느낍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민선구청장이 구정을 이끌어 가는 7월 1일 이후에는 너무나 할 일이 많습니다.

당면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문제와 고용안정 대책, 북구청사 신축의 지속적인 추진, 달천농공단지 조성, 농소체육공원 조성, 천곡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등 당면 현안사업의 추진과 구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창출과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제1기 지방의회 회기를 사실상 마감하고, 제2기 지방의회 개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준 협력과 진정한 조언에 깊이 감사드리며, 11만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바랍니다.

400여 북구 전 공무원들도 북구초대의원으로서의 예우는 물론, 항상 의논하는 자세로 업무를 처리할 각오입니다.

의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 6. 15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직무대행 **황 성 환**

4. 의사일정

○제1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98.6.15(1일간)

일시	차수	부의안건	비고
'98.6.15 (월)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본회의장
	1	1. 제1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1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본회의장
		4.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7.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안) 9. 울산광역시북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소회의실

5. 본회의 활동

□ 제1차 본회의('98. 6. 15)

○ 제1차 본회의는 10시 30분에 개회식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제1대 의회 마무리시점에 즈음하여 황성환구청장 직무대행으로부터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인사가 있었고

○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안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가 있었고

○ 조례안 심의에 따른 질의 · 답변을 듣기 위하여 조승수의원외 2명으로부터 발의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하였고

○ 의장제의로 제1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하여 조승수의원, 한성두의원을 선임하였다.

○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해당 실·국·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답변 및 심의를 하여 6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시키고 11시 35분에 산회를 하여 제10회 임시회를 마쳤다.

6. 주요안건처리경과 및 결과

□ 울산광역시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안) (의안번호 제124호)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년 6월 8일 북구청장

○ 회부일자 : 1998년 6월 15일

○ 상정일자 : 제1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98. 6. 15)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채무보증신청서 제출 - 제2조

○ 채무보증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제3조

○ 보증채무서 교부에 관한 사항 - 제4조

○ 보증채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제5조

○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내용은 울산광역시북구보증채무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조례로 제

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앞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한 바와 같음.

○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과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한 범위안에서 보증채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제정되었기에, 울산광역시 북구민의 공익우선 사업을 위한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조치로 사료되는 바 본 조례 재정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본회의 심의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안번호 제125호)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년 6월 8일 북구청장

○ 회부일자 : 1998년 6월 15일

○ 상정일자 : 제1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98. 6. 15)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정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지방행정 전산화 위주의 기존 조례를 종합적 개념인 지역정보화 추진에 적합토록 개편

나. 주요골자

○ 지역정보화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지역정보화본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지역종합정보센터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

○ 전산정보자료의 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 행정업무정보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내용은 울산광역시북구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한 제반 규정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앞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드린 주요골자가 되겠음.

○ 그리고 본 조례제정으로 기존의 전산관련조례인 울산광역시북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임.

○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제11조 제2항과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법률 등에 규정한 범위 안에서 행정자치부의 시·군·구지역 정보화촉진조례 표준안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였기에 관련법규에 부합되며 구민생활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본회의 심의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6호)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년 6월 8일 북구청장

○ 회부일자 : 1998년 6월 15일

○ 상정일자 : 제1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98. 6. 15)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의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중 지방세제

지원방안으로 감면조례에 반영할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내무부준칙안에 의거 울산광역시북구감면조례를 개정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제2조 제2항(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면허세 면제범위 확대)

- "보철용"을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 "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를 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한 1대"로 범위를 확대
- 후단 각호 삭제

○ 제2조 제3항 신설

- 종전 제2조 제2항후단 각호(1~3) 및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를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내용은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당면한 경제난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의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 지방세제 지원방안 중 감면조례 사항으로 앞서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설명드린 주요골자가 되겠음.

○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은 지방세법 제9조의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동법제7조)와 수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동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

를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내무부준칙(안)에 의거 본 조례제정(안)이 제정되었기에 관련법규에 부합되므로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본회의 심의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127호)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년 6월 8일 북구청장

○ 회부일자 : 1998년 6월 15일

○ 상정일자 : 제1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98. 6. 15)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96. 12. 31) 및 동법시행령('97. 10. 21)이 제정 · 공포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 조례의 내용이 법령에 규정됨에 따라 별도로 조례를 존치시킬 이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관한 사항(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자)

○ 공개대상정보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방법

○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

○ 정보공개 목록작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이 법령에 규정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를 존치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폐지코자하는 사항임.

○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1장 총칙을 비롯한 제5장 제24조와 동법률시행령의 제1장 총칙 내지 제5장 제23조로 제정되어 있는바, 기존 울산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는 총 제18조로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 본 조례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구민의 알권리보장이 존중될 수 있으므로 하위법인 본 조례폐지(안)는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본회의 심의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8호)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년 6월 8일 북구청장

○ 회부일자 : 1998년 6월 15일

○ 상정일자 : 제1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98. 6. 15)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도시계획법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따라 관내 개발제한구역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를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및 신고에 대한 동장위임사항의 확대로 인한 개발제한구역관리의 원활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순찰 및 조치에 대한 업무의 동장위임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 철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제4조 제4호(읍·면·동장이 허가 또는 신고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 및 본 관리규정 제48조 제3항(특별단속 및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을 동에 사무위임코자 하는 사항임.

○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제7조 제3항 각호에서 허용하는 규모내에 한하는 사항인 허가 또는 신고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조 제4호)과,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8조 제3항의 특별단속과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동장에게 사무위임함은 관련법규에 적법하다 하겠으며, 개발구역내 주민의 불편해소 및 효율적인 사무관리를 위하여 동에 사무위임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본회의 심의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9호)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년 6월 8일 북구청장

○ 회부일자 : 1998년 6월 15일

○ 상정일자 : 제1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98. 6. 15)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관보 제13803호('98. 1. 10)와 관련 보건복지부령 제58호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중개정령에의거

○ 위생분야종사자건강진단서발급수수료징수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므로 보건복지부령 제58호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10조의 조문과 일치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 별표1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중 7. 위생분야종사자건강진단서란을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10조의 정기건강진단 수수료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총무처발행)에 수수료가 정해진 사항으로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 별표1의 제증명발급수수료 구분의 7란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항목을 삭제하는 사항임.

○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은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보건복지부령) 제10조의 정기건강진단수수료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총무처)에 정해진 수수료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바, 97년 7월 15일 울산광역시 승격에 의한 본 조례제정시 착오된 사항으로 관련부서의 조례검토 미숙으로 늦게나마 개정(삭제)하는 사항으로, 통일된 수수료 적용과 구민의료서비스제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의결과

○ 본회의 심의 : 원안가결

7. 질의답변 요약서

제10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98.6.15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한성두의원		□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 지방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통보가 98년 2월 12일자에 시에 접수가 되었는 4개월정도 늦어진 이유는?	○ 2월달에 지침이 내려왔고 1월달에 부과된 사항이고 해서 좀 늦어진것 같습니다.
	○ 자료내용에 보면 내무부(안) 뒤에다가 1월 7일자 울산광역시 시세감면을 공포한다는 것을 첨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 위에 첨부한 것은 참고로 붙여 놨음.
	○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세제혜택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어떤 행태든 빨리 입법화 돼서 시민에게 혜택이 가야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4개월이나 지연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음으로 해서 그동안 어떤 불이익을 받은 시민들이 있는지?	○ 예, 알겠습니다.

제10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98.6.15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진한걸의원	○ 본청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 지침 시행령이 1월 1일 이후에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심의회가 구축이 돼서 기능을 제대로 하는 조직체계가 정비 돼 있는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정부시행령이 하달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제정이나 조직체계정비가 왜 늦었는지 답변요망	□ 시민과장 이동훈 ○ 늦어진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법은 96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시행령은 작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행정정보공개조례에 대해서는 지금도 잘 되고 있음. ○ 현재 97년도에 농림수산과에 1건에 있었고, 금년도 6월 중순까지 8건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신청이 되었음. 현재 8건은 지적과에 4건, 건축과에 4건이 들어 왔음. 현재 행정정보공개를 하는데 차질이 없고, 다만 늦어지게 된 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안은 폐지시켜야 될 안이기 때문에, 법령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거의 다 제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조례로서 존폐 할 필요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없애보자 해서……

제10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98.6.15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 어떻든 간에 자치단체에서 시행령이 내려오면은 그 시행령을 체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발 빠르게, 본청은 했는데 구청은 왜 안되는지?	○ 저희들 심의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현재 조례 사항에는 9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음. 구성요건은 공무원 3명, 의회 3명, 민간인 3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현재 신청된 내용은 거의 다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심의회 개최를 안 했을 뿐……
조승수의원	○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허가나 단속권을 동에 위임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행정업무를 원활하고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효율적인 단속이 되는 측면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 생각하면은 물론 동일 규모내에서의 개축이 우선이라고 하지마는 이것이 자칫 동장과 주민과의 관계들이 굉장히 밀접한 특성을 미루어 봤을때, 부작용이 있을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요망?	□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물론 저희가 당초에 위임하는 목적사항이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들의 불편해소라는 측면에서 하게 되는데, 물론 다소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재에도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조건이 되는 개발제한구역내 지역 거주민에 대한 농어민이나 이 사람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증·개축이나 동 규모내 용도변경 등은 사실상 신청이 오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거의 재량행위가 없을 정도로 해주고 있음.

제10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98.6.15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의한 규정내에서,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존과 크게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됨.
진한걸의원	○ 사실 동 조직을 가지고 개발제한 위법을 했을시 처리를 할 수 있는 집행능력들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단속부분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사후에 동 행정 지침에 위배되는, 예를 들자면은 한정되게 허가를 내줬는데 사실상은 그 이상의 확대개발을 악용했다던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됐을 때 원래대로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는 동의 행정 집행능력이 조직적으로 해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부작용이 생겼을때?	□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처리 방법상 저희들이 현재 일차적으로 개발제한 구역내 위법사항을 발견하고, 그 발견내용에 대해서 계고조치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 등에 고발조치를 하고 또한 행정 대집행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음. ○ 동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에, 저희가 기존 동에 위임하는 것은 인가나 허가 등 이런 내용만 돼 있고, 대집행이나 검찰고발 등은 사실 동에서 바로 고발을 한다해도 인력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 대집행 관계는 저희 구청과 협의해서 저희 구청에서 인력동원 등을 통해가지고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

제10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98.6.15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여짐.
진한걸의원	○ 공익사업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이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진정한 북구 전체의 공익성격도 있을 수 있고, 또 특정 동에 공익성격도 있을 수 있는데, 공익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좀 해둘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 부분의 조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됨. 향후에 여러 가지 공익미명하에 이런 것들이 남발됐을시에 우리 북구가 악성채무를 끌어 안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익의 정의를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요망,	□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 예를 들어서 영세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를 한다고 할 경우에, 금융기관이 일반개인에게 줄려고 하면은 혹시 변절을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구청장이 대신 보증채무를 서주는 내용임. 이 보증채무를 서는 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이것은 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남발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음. 미리 지방의회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음.
	○ 사실상 의회가 아무리 심의를 심도있게 한다 할지라도 놓칠 수도 있고, 우리 행정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금융부실이나 울산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부채 이런 것들도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그렇게 발생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포맷을	

제10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98.6.15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명확하고 분명하게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초래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개념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한성두의원	○ 조례들은 지방제정법이나 여기에 의해 가지고 벌써 만들어져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림.	□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 지난 2월달인가 준칙이 내려와서 신문에 입법예고를 하고 공보에도 입법예고를 했음.
	○ 절차야 그렇게 밟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조례(안)은 지방제정법에 의해서 어떤 형태든 기초 단체가 보증채무를 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지방자치법에는 조례를 만들어라고 하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지요?	○ 없습니다.
	○ 없는데 다만 주민들이 채무부담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 없습니다.

제10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98.6.15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한성두의원	○ 조례(안)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것 같은데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은데, 기존의 전산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된 부분도 있을건데, 여기에 보면 지역종합정보센터나 지역정보화 등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될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의회에서 이 문제는 처리해야 될 성질입니다마는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시행을 할려면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예산확보 관계는 계획이 돼 있습니까?	○ 지역정보화 계획은 2010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우리 구의 기본자료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는 한 부분만 되어 있고 크게 확대를……
	○ 예를 들면은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하여야 된다 이거죠. 그럼 전산실이 지역정보화 본부가 되는 겁니까?	○ 예, 따로 본부를 설치 하도록 되어 있음.

제6장

행정사무 감사

○ 제1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제2절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 제3절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 제4절 주요질의·답변 요약서

제6장 행정사무감사

제1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 監査目的

○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98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이를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監査期間 : '97.12.1~12.7(7일간)

3. 監査主體 : 본회의

○ 의　　장 : 김성보

○ 부 의 장 : 윤두환

○ 의　　원 : 전의원

○ 전문위원 : 백용한

○ 사무직원 : 하헌주

4. 監査實施機關(部署)및 出席要求 公務員

대상기관	감사대상기관 (부 서)	출석요구공무원		감사대상 사 무
		직	성 명	
울산광역시 북 구 청		부 구 청 장	황 성 환	감사대상기관 (부서)업무중 감사대상 사무전반
	○ 기획감사실	기 획 감 사 실 장	박 용 국	
	○ 문화공보실	문 화 공 보 실 장	김 태 오	
	○ 총무사회국	총 무 사 회 국 장	한 용 규	
	• 총 무 과	총 무 과 장	유 병 태	
	• 지 방 세 과	지 방 세 과 장	강 함 순	
	• 시 민 과	시 민 과 장	이 동 훈	
	• 민방위재난 관 리 과	민 방 위 재 난 관 리 과 장	송 의 준	
	• 사회복지과	사 회 복 지 과 장	임 정 순	
	• 환경위생과	환 경 위 생 과 장	강 석 회	
	• 환경미화과	환 경 미 화 과 장	김 연 수	
	○ 산업건설국	산 업 건 설 국 장	강 한 원	
	• 지역경제과	지 역 경 제 과 장	배 성 무	
	• 농림수산과	농 림 수 산 과 장	이 완 식	
	• 건설도시과	건 설 도 시 과 장	김 영 태	
	• 건 축 과	건 축 과 장	유 병 옥	
	• 지 적 과	지 적 과 장	김 실 근	
	• 보 건 소	보 건 소 장	박 혜 경	
	• 의회사무국	의 회 사 무 국 장	이 종 영	

5. 監査資料 提出要求 現況

계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사회국	산업건설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287(건)	20	15	125	89	33	5

6. 監査日程別 監査對象機關(部署) 및 場所

구분 / 일시		감사장소	감사대상기관	비고
97.12.1 (월)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 기획감사실 ○ 문화공보실	
97.12.2 (화)	10:00	〃	○ 총무사회국 • 총 무 과 • 지 방 세 과 • 시 민 과	
97.12.3 (수)	10:00	〃	○ 총무사회국 • 민방위재난 관 리 과 • 사회복지과 •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과	
97.12.4 (목)	10:00	〃	○ 산업건설국 • 지역경제과 • 농림수산과 • 건설도시과	
97.12.5 (금)	10:00	〃	○ 산업건설국 • 건 축 과 • 지 적 과 ○ 보 건 소	
97.12.6 (토)	10:00	〃	○ 의회사무국	
97.12.7 (일)		(일 요 일)		

7. 監査進行 順序

○ 감사선언(의장)

○ 의장인사

○ 증인선서(집행기관)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 주요업무 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보고 : 실 · 국 · 소장

- 세무사항보고 : 해당 실 · 과 · 소장

○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 · 답변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8. 證人宣誓 方式

○ 선서장소 : 소회의실

○ 선서방법 : 실 · 국 · 소 단위실시

○ 선 서 문 : 별첨

- 서명 날인 후 제출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참고인)으로서 증언(진술)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소속(주소) :

직위(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귀하

9. '97行政事務監査資料要求現況

소속 실·국	소속 과	요구건수	비고
합계		287	(공통사항 각 5건 포함)
기획감사실		20	
문화공보실		15	
총무사회국	소계	125	
	총무과	30	
	지방세과	21	
	시민과	13	
	민방위재난관리과	13	
	사회복지과	18	
	환경위생과	17	
	환경미화과	13	
산업건설국	계	89	
	지역경제과	14	
	농림수산과	23	
	건설도시과	21	
	건축과	18	
	지적과	13	
보건소		33	
의회사무국		5	

제2절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1. 監査目的

○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98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 사무처리 과정에서 타나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이를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監査期間 : '97.12.1~12.7(7일간)

3. 監査實施對象機關

기 관 명	대상 실·국·사업소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사회국 ○산업건설국 ○보 건 소 ○의회사무국	

4. 監査實施經過

가. 감사주체 - 본회의

의 장	부 의 장	의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김 성 보	윤 두 환	한 성 두 이 병 우 진 한 걸	백 용 한	하 헌 주

나. 감사일시 및 장소

구분 / 일시		감사장소	감사대상기관	비 고
97.12.1 (월)	10:30 ~	북구의회 소회의실	○ 기획감사실 ○ 문화공보실	
97.12.2 (화)	10:30 ~	〃	○ 총무사회국 • 총 무 과 • 지 방 세 과 • 시 민 과	
97.12.3 (수)	10:30 ~	〃	○ 총무사회국 • 민방위재난관리과 • 사회복지과 •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과	
97.12.4 (목)	10:30 ~	〃	○ 산업건설국 • 지역경제과 • 농림수산과 • 건설도시과 • 건 축 과 • 지 적 과	
97.12.5 (금)	10:30 ~	〃	○ 보 건 소	
97.12.6 (토)	10:30 ~	〃	○ 의회사무국	
97.12.7 (일)		(일 요 일)		

다. 감사방법

○ 집행부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 집행부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확인(보고요구 및 서류요구사항)

○ 회의식 진행(질의 · 답변)

○ 현지확인

라.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 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 제출건수	증인출석인원	주요감사 실시건수
계	287	19	191
기획감사실	20	1	15
문화공보실	15	1	13
총무사회국	125	9	80
산업건설국	89	6	65
보건소	33	1	13
의회사무국	5	1	5

마. 현지확인 감사

기 간	현지확인 감사내용	비 고
'97.12.3 (1일간)	○ 정자 오피스텔 용도변경 실태확인 - 정자, 파파나, 대우마리나 오피스텔	강동동
	○ 공유재산관리 실태확인 - 산하리 940번지 대성교회 건축물	강동동

바.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57	24	33
기획감사실	5	5	
문화공보실	1	1	
총무사회국	27	8	19
산업건설국	16	8	8
보 건 소	4	2	2
의회사무국	4		4

5. 主要監査實施內容

대상기관(부서)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울산광역시북구 (실·국·소·과)	【공통사항】 ○ 예산집행 상황 ○ 집단민원처리 조치상황 ○ 진정 및 건의서 처리상황 ○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상황 ○ 사업비 500만원 이상 사업현황	
기 획 감 사 실	【개별사항】 ○ 구조정위원회 운영실적 ○ 예비비 지출내역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내역 ○ 감사원, 내무부, 광역시 감사실적 및 지적사항 조치내역 ○ 구·동 자체감사 및 특별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 소송사건 현황 ○ 고문변호사 선임현황 및 변호사 수임료 지급내역 ○ 각종 위원회 현황 ○ 집중관리(pool)예산 집행내역 ○ 일상감사 실시내역	

대상기관(부서)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문 화 공 보 실	○ 유선방송 지도감독 및 활용실적 ○ 음반, 비디오 및 불량서적단속 및 과태료 과징현황 ○ 문화재 및 유적지관리 실태현황 ○ 체육시설업 등록 및 지도단속 현황 ○ 신문사별 공고문게재 현황 및 공고비 지급현황 ○ 주민홍보지 신문사별 보급현황 및 배부내역 ○ 북구체육의 중점진흥 대책 ○ 언론보도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	
총 무 사 회 국	○ 단체별 보조금 집행사항 ○ 구청사 청소대행업체 계약사항 ○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 ○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상황 ○ 새마을소득융자 지원사업현황 ○ 청사주차장 관리현황 ○ 각종계약현황 (500만원 이상 공사물품) ○ 국 · 공유재산 관리현황 ○ 구청사건립 추진사항 ○ 구청사 임대료 및 청사관리현황 ○ 구청 대형버스 운영상황 ○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내역	

대상기관(부서)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총 무 사 회 국	○ 최근 3년간 지방세 미수금내역 (건당 100만원 이상) ○ 체납세징수 실적현황 ○ 세무감사결과 추징현황 및 내역 ○ 이자수입 내역 ○ 체납자 재산압류 현황 ○ 세무조사 부과징수 현황 ○ 120기동대 운영상황 ○ 공익근무요원현황과 지하저수조 청소실적 ○ 민방위 구조장비 및 관리현황 ○ 민방위 대피시설 지정현황 및 관리실태 ○ 재난관련 업무처리 실적 ○ 민방위강사 위촉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운영상황 ○ 각 동별 경로당과 시설현황 및 지원실적 ○ 취로사업장현황 및 취로인원 임금 지급 내역 ○ 의료보호비 지급내역 ○ 어린이놀이터 현황 및 관리실태 ○ 불우이웃돕기 실적 ○ 노인교통비부담금 지급현황 ○ 노인건강진단 실시현황 ○ '97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상황	

대상기관(부서)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총 무 사 회 국	○ 공중·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 무허가 위생접객업소 현황 및 조치계획 ○ 환경부담금 부과·징수현황 ○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실적 ○ 공중화장실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 ○ 오수 정화시설 위반사항 및 조치결과 ○ 생활쓰레기 줄이기운동 추진실적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 일반폐기물 수립·운반 및 대행업체 현황 ○ 일반폐기물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현황 및 지정관리 상태 ○ 재활용품 판매대금 및 장려금 관리 ○ 사업장 폐기물 신고수리현황 및 지도점검	
산 업 건 설 국	○ 가스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현황 ○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및 징수실적 ○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상황 및 체납자 조치사항 ○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사항 및 지역물가 안정대책 ○ 노사분규실태 및 예방대책 추진사항 ○ 공설시장 운영실태 ○ 취업정보센타 운영 및 실업대책	

대상기관(부서)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산 업 건 설 국	○ 농업분야 각종지원사업 추진상황 ○ 농지전용 허가내역(95년 이후) ○ 무허가, 무등록 어선 일제 정비사항 ○ 임도 개설현황 ○ 축산분야 각종지원사업 추진현황 ○ R · P · C 산업현황 ○ 수출 화훼단지 현황 ○ 농산물 품질인증제 현황 ○ 주요사업 추진사항 ○ 지하수 관리현황 ○ 도로굴착 허가현황 ○ 하천부지내 공작물, 건축물 관리현황 ○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관리현황 ○ G.B 지역내 행위허가 현황 ○ 가로수식재 및 행위허가 현황 ○ 도로점용료 과징현황 ○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현황 ○ 농어촌 주택개선사업 ○ 공동주택건립 민원처리 현황 ○ 공사장 안전관리 및 부실공사방지 점검결과 ○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현황 ○ 건축공사중 부도등으로 인하여 방치된 건축물 현황 및 대책	

대상기관(부서)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산 업 건 설 국	○ 건축물 허가현황 ○ 오피스텔 현황 ○ 오피스텔 불법건축물 현황 및 건축법 위반 단속실적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현황 및 조정내역 ○ 부동산중개업지도 ·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 ○ 지적측량 기준점 망실 · 훼손내역 및 조치사항 ○ 토지이동 신청 혜택에 과태료부과 징수현황 ○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사항	
보 건 소	○ 주민자율방역단 운영사항 ○ 예방접종 계획 및 실적 ○ 정신질환자 관리상태 ○ 결핵환자 현황 및 진료대책 ○ 노인보건 진료실태 ○ 약품구매실태 ○ 공중보건의 근무 및 복무단속 현황 ○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현황	

6. 監査綜合意見

○ '97년 7월 15일 역사적인 울산광역시 승격으로 자치북구 탄생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97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규정에 의거 97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7일간) 실시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98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음.

○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신설된 북구의 자치행정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어려운 환경여건 속에서도 구청장이하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연찬에 힘써 업무편람작성 등 공무원 개개인 업무추진 능력향상으로 구정업무의 조기정착에 기하여 왔으나, 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구정전반에 대하여 구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야 함에도 수감자료의 계수가 불일치하고 오·탈자가 발생되고 누락된 부분이 많아 의원들의 감사자료 파악에 혼돈을 가져오게 하는 등 감사자료 준비에 소홀한 부분이 많으며,

○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추진상 문제점에 따른 지적사항으로 부당한 예비비 지출의 승인건이나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미수립 등 시정요구 24건과 북구청사 잔여부지 감정요구와 민원인 시청주차장 무료이용 홍보 등 건의사항 33건, 모두 57건 중 특히 예비비 부당승인지출 및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미수립과 투·융자심사 미이행 사항은 업무와 관련한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엄중 경고하니 관계공무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한 법규연찬으로 업무처리절차 및 법령준수사항의 위반사례가 차후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할 것이며,

○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보다 많은 창의력을 발휘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추진해 나가는데 가일층 노력을 당부함.

제3절 '97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및 처리결과

1. 시정요구사항 총괄

구 분		계	처리내역			비 고
			완 결	추진중	처리불가	
총 계		24	17	7		
기획감사실		5	5			
문화공보실		1	1			
총무사회국	소 계	8	5	3		
	총무과	3	2	1		
	지방세과	2		2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복지과	3	3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산업건설국	소 계	8	6	2		
	지역경제과	2	1	1		
	농림수산과	3	3			
	건설도시과	1		1		
	건축과	1	1			
	지적과	1	1			
보건소		2		2		

2.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서

부서명	시정요구사항	처리내용	비고
기획감사실	1. 예비비 지출부당 ○ 예비비 사용승인과 관련 관계법규 연찬미숙 시정 요함 ○ 총지출액 : 75,267천원 - 보건소 청사관리비 6,454천원 - 보건소·동 방역인부임 14,923천원 - 보건소 7급 직급보조비 6,693천원 - 사회복지과 노인회활동비 1,200천원 - 사회복지과 4/4분기경로 승차요금 45,997천원	○ 울산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 제29조(예비비의사용)의 규정에 의거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을 엄격히 함은 물론, 향후 관계법규 연찬으로 지출목적에 부합되도록 예비비 지출승인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음	완 결
기획감사실	2. 중장기 재정계획 미수립으로 예산편성 부적정 ○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계획성있는 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단기 재정계획을 수립 의회에 보고하고 동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시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련의 과정을 결한 예산안 편성 제출은 업무 소홀로서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 '98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97. 12. 10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을 받았음. ○ '98. 2월중에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에 의거 '99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의회에 보고하였음	완 결

부 서 명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내 용	비 고
기획감사실	3. 일상감사 소홀 ○ 울산광역시북구훈령 제10호 일상감사규정에 의한 시설공사, 용역, 중요물품구입시 일상감사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 농소초등학교뒤 사리부설 공사 등 시설공사 17건, 물품구입 10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 ○ 이후 일상감사를 철저히 하여 행정착오등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시정바람	○ 울산광역시북구훈령 제10호 일상감사규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실과장 책임하에 반드시 기획실장에게 일상감사를 요청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동규정 제2조에 의한 별표 1의 감사범위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요청하지 않은 부서에 대하여 사유서를 징구한 후 사안별 문책조치토록 하고 ○ 추후 동일한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음. ※ '97.12 내용불합리한 일상감사범위대한규정 개정조치	완 결
기획감사실	4. 언론보도사항 관리 및 조치 철저 ○ 북구청 개청이후 언론에서 행정에 대한 지적사항 보도와 관련, 관리와 조치사항이 소홀한 사례가 있음 ○ 이후 언론보도사항에 대하여 진상조사를 실시 오보사항은 정정 보도되도록 하고, 행정잘못에 대하여는 감사기능을 통해 조사실시로 재발 방지대책 강구 등 언론보도사항 관리철저	○ 향후 행정업무전반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정확한 보도가 되도록 노력하고 지적보도에 대해서는 진상파악하여 재발방지로 행정의 신뢰제고에 노력하겠음	완 결

부 서 명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내 용	비 고
기획감사실	5. 방송시설 이중설치로 예산 낭비 ○ 농소 1, 2동은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동사무소 앰프시설을 하면서 농소 2동은 기존의 농소1동 앰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도 ○ 동일 건물에 동사무소가 다르다 하여 이중으로 앰프시설 설치한 것은 예산 낭비 사례이므로 시정바람	○ 농소 2동 신축시 방송시설 이전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설치하였으며 앰프 성능상 민방공 경보전달을 원활히하기 위하여 고려하였으나 ○ 향후 모든 시설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효과와 낭비요인 분석 후 설치토록 하겠음	완 결

부 서 명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내 용	비 고
문화공보실	1. 노점상 취급 불법음반·비디오물 단속철저 ○ 기존 음반·비디오물 취급업소에서는 행정의 지도단속으로 불법음반·비디오물 취급이 근절되고 있으나,	○ 화봉, 농소를 비롯한 관할 지역 관광지나 대로변, 공단지역 등 주민의 왕래가 빈번한 곳을 중심으로 불법 음반·비디오물의 진열 판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동단위 단속반 구성하여 지속 단속실시하겠음	완 결
	○ 화봉, 농소동등 노점상에서는 음반·비디오물을 판매할 수 없는데도 불법 음반·비디오물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노점상 단속을 철저히 하여 불법 음반·비디오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바람	○ '98. 1. 6 ~ 1. 9동안 단속·점검결과 노점상 및 차량을 이용한 음반·비디오물이 유통되고 있지 않음	

부서명	시정요구사항	처리내용	비고
총무과	1.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부적정 ○ '97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시 강동동 이만수통장 자녀 2명에 대하여 지급하므로서 장학금 지급조례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아지므로 ○ 이후 장학금 지급시 신중히하기 바람	○ 향후 통장자녀 장학금대상자 선정시에는 통장 1인의 자녀로 제한하고 한명이상 선정되지 않도록 하겠음	완결
총무과	2. 새마을소득특별지원융자금 회수소홀 ○ 융자를 7명 23,000천원 대부하였으나, 상환일인 '97. 6. 30현재 1,500천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7,300천원 미회수함으로써 융자금 운용관리 소홀	○ 체납자에 대하여 원인분석 및 상환능력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상환하도록 조치하겠음	추진중
총무과	3. 북구청사건립계획추진 부적정 ○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세입세출외 부담이 되는 채무부담 원인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 지방재정법 제11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완결

부 서 명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내 용	비 고
총 무 과	○ 북구청사 건립사업비 55억 여원을 지방재정공제회기금에서 차입해 사용하는 주요업무계획을 추진하면서 사전 의회 의결없이 진행중인 것은 부적정	○ 동법 제115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 울산광역시 예산13320-221('97. 12. 6)호로 '98지방채 발행계획이 승인되어 '97. 12. 9일 청사정비기금 차입의결의건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97. 12. 15일 제5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시 본건 의회의 의결을 득하였음	

부 서 명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내 용	비 고
지 방 세 과	1. 자금운용부실 ○ 구청개청이후 구금고에 환매채액 75억원으로 연리 10.19%~10.40%로 예입해 한달 만기상환때 6천여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었는데 세수부족으로 9월에 환매채 2건을 중도해지해 만기시 상환때 보다 이자가 손실되어 자금운영이 부실한 사실이 있음 ○ 이후 자금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우리 북구재정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보조금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바, 금고에 머무는 시간이 짧은 실정으로 이자수입발생이 저조하나, '98년도에는 단기간이면서 이자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여 예치하고 예치금액은 해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불가피하게 해약하게 되면 해약된 금액만 이자손익이 발생하는 상품등의 선정으로 자금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음	추 진 중
지 방 세 과	2. 사치성재산에 대한 과세소홀 ○ 북구관내 사치성재산에 대한 징수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빈약한 북구세수증대차원에서 사치성재산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실시결과를 '98. 1. 30일까지 자료첨부 보고	○ 사치성재산 일제조사 실시 - 대 상:강동동소재 3개 오피스텔 - 기 간:'98. 1. 12 ~ 1. 30 - 조사자:세무조사계장외 2 - 조사내용 · 오피스텔 3개소 건축물관리대장 55세대 대조작업 · 강동동사무소 취득세 부과자료 확인 · 현지방문 거주여부 확인 · 재산세 과세내역 확인 · 전산상취득세부과내역 확인('95이후분) · 소유자에 대한 전화번호 확인	추 진 중

부 서 명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내 용	비 고
지 방 세 과		○ 추진계획 - 상기소재 전수조사 실시 한바 사치성 재산으로 잠정판명되고 이에 따른 부과조치는 신중하게 하여야 하므로 대장을 중심으로 민원인 면담실시 후 대상자 선별한 후 3월중 과세예고할 계획임	

부 서 명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내 용	비 고
사회복지과	1. 생활보호자 생활안정기금 홍보 소홀 ○ 저소득주민보호를 위한 생활안정기금을 138,261천원 확보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한 건도 지급한 사실이 없음 ○ 앞으로 저소득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저소득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요망	○ 저소득 399세대 가정에 생활안정기금 융자홍보 통신문을 일제히 발송하였으며 ○ 반상회등 각종 기회를 통하여 충분히 홍보하여 기금활용도를 높혀 나가겠음	완 결
사회복지과	2. 의료보호비 지급 소홀 ○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에 있어 1,207명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101,044천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59건 10,950천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9%는 보조금 지원부족으로 미지급하였다 하나 심사결정 시기를 국고보조금 교부시점과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바람	○ 의료보호비 재원을 국비80%, 시비 20%로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운영함 ○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에 있어 국비 및 시비보조금 자금수령과 동시에 심사결정하여 지급토록 하겠음	완 결
사회복지과	3. 어린이놀이터 관리소홀 ○ 북구관내 공용어린이놀이터가 유일하게 화봉동에 있으나 예산부족 이후로 놀이시설이 손괴되어 방치한 사례가 있음 ○ 이후 예산확보하여 시설물 보수에 철저를 기할 것	○ '97. 12월 놀이터 개·보수비 1,000천원 송정동장에게 자금 교부하여 보수완료	완 결

부 서 명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내 용	비 고
지역경제과	1. 물가관리 소홀 ○ 물가관리체계 허술 및 지도단속실적 미흡으로 인한 체감물가가 급등하므로 강력한 물가지도 단속으로 소비자 물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하여 상시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 특히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억제, 매점매석행위 단속을 위한 합동단속반 편성 운영등은 물론 ○ 소비자고발신고센타 운영을 통하여 체계적인 물가지도 관리를 하겠음	추진중
지역경제과	2. 불법주·정차단속 및 과태료징수 철저 ○ '97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에 있어 795건(21,190천원)을 부과하여 261건(10,530천원)이 징수되었는데 이는 주차단속이 강화된 것보다는 지도단속의 의지가 미흡함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시민의식을 정착시켜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도록 시정바람	○ 불법 주·정차단속 강화를 위하여 단속인원 1명 보강하였으며 단속반 2개조편성 농소, 양정지역 상주단속 실시는 물론 주·정차 금지구역을 5개소 6.6km 확대 지정하였음 ○ 단속실적('97. 12. 31현재) : 1,381대 ○ 과태료부과징수 ('97. 12. 31현재) -부과:887건 35,870천원 -징수:490건 19,870천원 (징수율:55.4%)	완 결

부 서 명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내 용	비 고
농림수산과	1. 국·도비보조 농약공급 철저 ○ 벼 목도열병은 7~8월 사이에 방제가 되어야 하는데 국·도비보조 농약이 적기에 공급되지 않아 벼 병해충방제에 소홀하였으며, 농약은 적기에 공급이 되어 병충해를 방제하여야 효과가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농민들에게 보조되는 농약은 방제협의회를 통하여 적기에 공급하여 방제시기가 일실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	○ 국·도비 보조농약은 방제적기에 맞춰 먼저 농약을 공급하여 병해충 방제에 임하고 사업비 정산은 차후에 실시하였음 ○ 금년부터는 보조지원 농약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병해충 방제협의회를 통하여 적기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완 결
농림수산과	2. 농지전용허가시 기본원칙 준수 철저 ○ 토지·농지관련 감사원 감사에서 총 30건이 지적되었으며, 아진건설이 농지개량사업에 우량토를 사용치 않아 문제가 되었음 ○ 또한 토석채취허가와 관련하여 북구 대안동 산368번지 추가연장 허가는 무분별하게 자연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허가시는 사업추진 목적보다는 현장을 직접확인하여 환경영향에 저해가 된다면 민간단체의 자문을 받아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처리하기 바람	○ 하천골재 고갈로 산림골재 자원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신규허가는 억제하여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 기존업체는 "훼손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여 건설골재 생산에 기여코자함(수입의존시 과다한 비용(외화) 소요됨) ○ 복구와 채석이 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채석작업시 토사안전각을 유지토록 하고 세륜시설의 철저한 가동 및 화약발파를 지양하여 소음, 비산먼지 발생등을 줄여 환경훼손에 대처하여 복구 최고액을 반영 예치토록 할 것임	완 결

부 서 명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내 용	비 고
		○ 사업완료후 완벽한 복구보상을 위해서 복구최고액 예치제도 확행하겠음 ○ 조치내용 등 훼손최소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부대조건을 부하여 '97. 12. 17 토석채취 연기 허가됨 ※ 복구비예치:1,020,734천원	
농림수산과	3. 수산업무추진 소홀 ○ 수산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당면현안 업무가 많은데도 인력, 예산부족 이유로 미등록어선 일제정비에 따른 사후관리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 수산업무전반에 대하여 추진한 업무실적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수산분야 업무계획서에 장·단기 인공어초시설사업 소규모어항 축소 및 관리사업등의 추진계획 자료가 전혀없다는 것은 수산행정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사료됨 ○ 조속한 시일내 수산분야 장·단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공무원의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수산행정의 기능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불법어업 지도단속 추진〉 ○ 불법어업 지도단속은 필요시 단속계획을 수립 시와 합동으로 어업지도선을 이용 여러차례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왔으며, 특히 설날을 전후하여 불법어로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기간을 설정 동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음 - 기 간:'98. 1. 12 ~ 1. 26 - 단속방법 ┌ 해상단속:시청어업지도선을 동원한 연·근해 해역 중점단속 └ 육상단속:야간작업후 새벽에 항구로 입항하는 어선 중점단속	완 결

부서명	시정요구사항	처리내용	비고
		-불법어업자 조치계획:불법어업자는전원 입건 사법 및 행정조치 ※어업지도선이 없는 관계로 시와 합동으로 8회실시(시와 해당구청에서 입건송치) -미등록어선 일제정비 조치 미등록어선에 대하여 일정정비기간을 설정 양성화하므로서 어민들이 안심하고 생계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 ·기간:'97.10.1~12.31 ·총대상 어선수:75척 ·일제정비현황:미등록어선 등록조치 72척 ※3척은 어선검사 불합격으로 탈락 -등록어선에 대한 어업허가 ·미등록어선 어업허가 대상어선:72척 ·미등록어선 어업허가 처분어선:72척 완료 〈불법어선 건·개조 지도단속추진〉 ○ 지도단속기간:'97.10.24~11.30, '98.1.10~1.20 ○ 지도단속실적:없음 ○ 점검장소:정자수리조선 및 강동해안변 ○ 점검내용 - 어선건조에 대한 건조발주 허가여부 - 개조어선에 대한 개조발주허가 여부등	

부 서 명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내 용	비 고
건설도시과	1. 공유재산관리 소홀 ○ '97. 12. 3 현장확인시에 강동 산하동 940번지 하천부지내에(태연학교앞) 대성교회에서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공유재산관리 소홀사항으로서 조속한 시일내 철거조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산하동 940-9번지 건축주에게 '97. 12. 31한 자진철거원상복구 3차 계고하였던바, '97. 12. 12 건축주로부터 재정형편 및 동절기로 인하여 자진철거연장요청 각서가 접수되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철거기한을 '98. 4. 30일까지 연장코자하며, 만약 미이행시 강제철거(행정대집행)조치한 계획임	추 진 중

부 서 명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내 용	비 고
건 축 과	1. 오피스텔관리 철저 ○ 강동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전수조사하여 불법구조 변경사항이 있을 시 시정조치 및 월1회이상 정기점검을 강화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강동동에 있는 오피스텔 5개소에 대하여 실태조사한 결과 내부구조를 변경한 세대는 적발하지 못하였으며, 상시 거주하여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세대를 2세대 적발하여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토록 조치하였음 - 정자오피스텔 109호 - 대우마리나 430호 ○ 오피스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점검사항 기록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완 결

부 서 명	시 정 요 구 사 항	처 리 내 용	비 고
지 적 과	1.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소홀 ○ 토지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있어 과년도 기업부도 등으로 1,655,227천원이 체납되어 징수에 소홀한 점이 있음 ○ 앞으로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및 징수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체납부담금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조치 등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 현행 개발이익환수법을 개발부담금내역서 제출시부터 납부기한까지 약10개월정도 소요되어 납부의무자의 사업장이전 및 부도 등으로 체납되는 사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하여 "선"부과 "후"정산하도록 제도개선 건의하였음('98. 1. 16)	완 결

부서명	시정요구사항	처리내용	비고
보건소	1. 예방접종사업 추진소홀 ○ 유행성출혈별 예방접종은 산불감시원 및 농어촌 주민들에게 8, 9월에 1차 접종하여야 효과가 있는데, 금년도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36명에 대하여 접종을 실시하였으나, 50%정도는 10, 11월중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접종시기에 소홀한 점이 있음 ○ 향후 예방접종시기를 대상주민에게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제때에 예방접종이 되어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 유행성출혈열등 각종 예방접종대상자에 대하여 시정소식지 게재와 유선방송등에 계속적으로 홍보하여 적기 예방접종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중
보건소	2. 북구건강생활협의회운영소홀 ○ 울산광역시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에 의거 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15명의 위원만 위촉 구성하였을뿐 현재까지 예산부족 사유로 운영실적이 전무한 상태임 ○ 앞으로 운영을 활성화하여 구민건강증진시책, 제도에 관한사항 등을 자문받아 보건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정바람	○ 건강생활협의회 운영은 반기별로 년2회 개최할 계획이며, '98년도에는 2월경에 1차 협의회를 운영하여 보건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중

3. 건의사항 총괄

구 분		계	처리내역			비 고
			완 결	추진중	처리불가	
총 계		33	14	17	2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사회국	소 계	18	12	6		
	총무과	4	3	1		• 당초 : 5건 • 1건 지방세과 이관
	지방세과	3	2	1		
	시민과	1	1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복지과	1	1			
	환경위생과	6	3	3		• 당초 : 7건 • 1건 건설도시과 이관
	환경미화과	3	2	1		
산업건설국	소 계	9	2	7		
	지역경제과	5	1	4		
	농림수산과					
	건설도시과	4	1	3		
	건축과					
	지적과					
보건소		2		1	1	
의회사무국		4		3	1	

4. 건의사항 처리결과서

부 서 명	건 의 사 항	처 리 내 용	비 고
총 무 과	1. 북구청사 잔여부지 감정 건의 ○ 북구청사 부지를 감정평가하면서 예산부족 이유로 본 건물부분 토지만 감정평가하였으나, 조경등 예산확보, 민원발생 미연방지등을 고려하여 잔여부지를 지금이라도 감정토록 건의	○ '97. 9. 12일 울산광역시(예산담당관실)에서 북구청사 우선매입부지 범위를 7,000평정도로 확정하여 '97. 10. 21일 1차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 기감정평가한 9,342(청사부지 7,680평, 도로1,257평, 완충녹지 405평)중 2,332평에 대하여는 예산부족으로 보상협의조차 보류한 상태이며, 미감정부지 4,055평에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기감정 실시한 보상금 부족액 1,460백만원과 미감정부지보상금 2,721백만원 계 4,181백만원에 대하여 '98. 1월중 특별교부금 지원요청하고, 특별교부금 지원계획에 따라 잔여부지 감정평가토록 하겠음	추진중
총 무 과	2. 구청셔틀버스운행 중단건의 ○ 구청에서 농소, 강동주민의 민원편의을 위해 운행하고 있는 셔털버스의 운	○ 민원편의시책으로 '97. 9. 1일부터 강동, 농소 2개노선에 1일 1회 셔틀버스를	완 결

부 서 명	건 의 사 항	처 리 내 용	비 고
	행 실적이 한달 평균 이용객이 27명으로 하루 1~2명에 불과함으로 셔틀버스를 운행중지 건의	운행하였으나, 이용하는 민원인이 적어 '97. 10. 2부터 운행중단하였음	
총 무 과	3. 국·공유재산의 잡종재산 불하건의 ○ 국·공유재산의 잡종재산인 대지에 주민들이 주거용 건물을 사용할 경우 주민편익을 위하여 과감하게 불하 건의	○ 국·공유재산중 재정경제원소관 잡종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관리규정에 의거 매수 희망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 상급기관(울산광역시, 재경원)으로부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후, 매각하고 있으므로 매각조건에 해당되면 가능함	완 결
총 무 과	4. 민원인 시청주차장 무료이용홍보 건의 ○ 임대청사의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위해 시청주차장이용 적극홍보 건의	○ 승강기 및 지하주차장에 안내문 부착('97. 12. 2) ○ '98. 2월 반상회 회보게재 ○ 민원실 및 각 동사무소 홍보물 비치토록하여 홍보	완 결

부 서 명	건 의 사 항	처 리 내 용	비 고
지 방 세 과	1. 과년도 체납액 결손처분 건의 ○ 지방세 부과징수에 있어 과년도 지방세중 결손처분할 체납세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하여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결손처분실시('97. 11월) - 2,251건 113백만원 ○ 10만원이상 결손처분자에 대하여 관리카드작성, 지속관리:4건	완 결
지 방 세 과	2. 체납세 채권확보 건의 ○ 지방세 체납자가 발생하면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압류조치 등 채권을 확보하여 체납세가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 '97년도 지방세 고액체납자(100만원이상)에 대한 재산압류 실적은 30건 131,068천원이며, 향후 체납발생시 납기후 15일이내 납부독촉장 발송후 익월에는 반드시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확행하여 세입결함 보전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음	완 결
지 방 세 과	3. 구금고선정 공개입찰을 위한 조례개정 건의 ○ 대전 유성구등 타지방단체에서는 구금고 운영을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을 하여 구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공개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 울산광역시나 타구 선례와 관계없이 우리구만이라도 구금고 선정시 공개입찰을 위한 조례를 개정	○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가증권출납의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2조를 보면「금고의 설치는 계약에 의하여…」로 규정되어 있어 금고는 지방	추진중 (당초: 총무과 건의 사항 임)

부 서 명	건 의 사 항	처 리 내 용	비 고
	할 방안은?	자치단체장과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아지며, 현재 북구금고는 계약기간이 만료일이 1999년 7월 14일이며, 구금고를 새로 지정할 때에는 금고지정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 경영분야 전문가 등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구가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지정대상 금융기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금고를 지정토록 추진할 계획임	

부 서 명	건 의 사 항	처 리 내 용	비 고
시 민 과	1. 토요전일 근무제 폐지 건의 ○ 토요일근무제는 여가선용과 민원편의를 위한 양면성이 있음 ○ 토요일 오후의 몇몇 안되는 민원처리를 위하여 다수공무원의 근무는 행정력 낭비요인이 있으므로 북구만이라도 폐지방안 검토	○ 토요일 민원접수 처리내역과 평일 비교 - 평일1일 평균접수건수 : 2,063건 - 토요일 평균접수 건수 :1,166건 (오전:829건 71% 오후:337건 29%) ○ 토요전일근무제는 울산광역시의 잠정중단방침에 의하여 우리구에서도 주민편의증진과 업무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민원부서(시민과, 지방세과, 지적과, 보건소, 전동)만 운영하고 여타 실·과는 잠정중단하는 「토요일전일근무제 잠정유보계획」에 의하여 '98. 1. 17일부터 시행함	완 결

부 서 명	건 의 사 항	처 리 내 용	비 고
사 회 복 지 과	1. 분묘이장 공고 건의 ○ 달천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분묘이전대상 20여기가 있으며, 어려운 경제시점에 행정에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되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구청에서 분묘개장 공고를 내어 줄 것	○ 달천농공단지 조성사업 구역내에 이전대상 분묘가 25기(유연묘기 21, 무연묘지 4)가 있음 ○ '97. 12. 17자로 분묘이장 공고 신청이 있어 공고허가('97. 12. 20)되어 무연분묘에 대하여 '97. 12. 26자로 개장공고되었음	완 결

부서명	건의사항	처리내용	비고
환경위생과	1. 대기오염 대책 건의 ○ 양정, 염포동 악취가 풍향에 관계없이 심화되어 지역주민들은 만성화 되어 냄새는 못맡고 있는 실정임 ○ 출입외지인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함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요구됨	○ 악취발생원 조사 - 일 시:'97. 5. 22 ~ 6.27 - 조사자:울산대 화학과 양성봉교수 - 조사결과 ·인근공장의 도장, 주조 코아, 피막, 반응, 혼합 포장시설등에서 포름알데히드, 암모니아 등의 악취감지 ·절삭유(MR폴유)부패로 알데히드류의 걸레썩는 냄새가 복합적으로 발생 ○ 조치 - 대책회의개최:'97.7.24 ·참석:인근기업체 공장장 - 악취오염물질대책수립 요청 ('97. 7. 31까지) - 악취발생원 지도단속강화 요청:'97. 7. 22(낙동강환경관리청) ○ 향후 추진계획 - 악취발생시설관리실태 점검 :매월1회이상 ·점검대장기록비치 - 악취발생원 지속조사 관리	완결

부 서 명	건 의 사 항	처 리 내 용	비 고
환 경 위 생 과	2. 오수정화시설 위반사항 단속강화 ○ 오수정화 위반시설 지속 단속 실시로 동천강을 살릴 수 있도록 대책 추진 건의	○ 관내 146개 오수 및 축산 폐수정화시설에 대하여 상·하반기 정기점검으로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 특히 선거철, 장마철 및 연말연시에는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조치하여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하겠음	추진중
환 경 위 생 과	3. 먹는물 관리강화 ○ 먹는물에 대해서 수질검사 및 관리를 철저히하여 구민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 우리 관내 먹는물 공동시설 현황은 3개소(약수터 1, 공동우물 2)가 있으며 각 분기마다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담당직원의 수시출장으로 주변청결 또는 갈수기대비 철저한 수질관리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음	추진중
환 경 위 생 과	4. 환경모니터 운영 건의 ○ 북구에 환경모니터요원을 정식으로 위촉하여 환경사범을 신고할 수 있도록 건의함	○ 전 구민을 환경모니터요원화하고 98년에는 환경신문고를 설치하여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겠으며	완 결

부서명	건의사항	처리내용	비고
		○ 신고대상은 - 폐수무단방류 행위 - 자동차매연, 불법소각등 대기오염 행위 - 쓰레기불법투기행위등 각종 환경오염행위등이며 ○ 시책추진을 위하여 환경오염신고엽서 제작배포(5,000매), 환경신문고제도 홍보를 위한 전단제작, 배포를 하고 신고내용에 따라 포상금 지급:당초예산에 800천원 확보	
환경위생과	5. 이동공중화장실 설치건의 ○ 송정저수지등 상시 행락객 출입하는 지역에 공중화장실 설치건의	○ 관내 이동식 공중화장실은 강동해변 및 신흥사 주변등 9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행락객과 주민등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를 파악하고, 그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98년 1회추경예산편성요구, 사업을 시행하였음	추진중
환경위생과	6. 유해식품 수거검사 철저 ○ 유해식품 수거검사시 두부, 땅콩 등 상시적으로 검사를 실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식생활과 밀접한 상치, 야채 등 시민건강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것부터 검사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건의함	○ 유해식품 수거검사는 계절 및 성수시기를 감안하여 수시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여름:아이스크림류 - 가을:과일류 - 명절:생선, 두부 등	완결

부 서 명	건 의 사 항	처 리 내 용	비 고
		○ 또한 국민 다소비식품인 콩나물, 과일, 채소류 등에 대하여도 시 본청과 연계하여중점적으로 수거검사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검사를 철저히 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힘쓰겠음	

부서명	건의사항	처리내용	비고
환경미화과	1. 폐기물 지도단속 모니터 운영건의 ○ 사업장폐기물 지도단속시 환경위생과와 연계하여 모니터를 활용할 것을 건의	○ 환경위생과의 전구민 모니터요원화 및 환경신문고제도 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추진코자하며, 향후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음	추진중
환경미화과	2.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장 확대에 따른 주민홍보 건의 ○ '98. 1.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장이 확대되어 입법시행되는데 주민들에게 철저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	○ 감량의무사업장이 면적 100㎡이상 업소로 당초 15개소에서 132개소로 확대지정되었으며 ○ '97. 11. 25 감량의무사업장 신고안내물 배부, '97. 12. 5 감량의무대상 전사업장 사업주 교육실시하였음	완결
환경미화과	3. 쓰레기 불법투기시 신고자 보상금 지급홍보 건의 ○ 쓰레기 투기시 신고자에게 보상금 30,000원이 지급되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쓰레기 투기 신고가 많이 되어 근절되도록 조치	○ '98. 1. 14 관련실·과 및 전 동에 주민홍보계획을 통보하였으며, '98.1월 반상회보에 게재하였음	완결

부서명	건의사항	처리내용	비고
지역경제과	1. 가스업체 책임보험가입 지도강화 ○ 북구관내 가스업체 책임보험가입이 되도록 지도하고 미가입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범칙금부과 등 행정조치 요망	○ 북구관내 160개 LPG사용 신고업소 책임보험 100% 가입완료	완결
지역경제과	2. 고용안정대책 추진건의 ○ IMF체제하에서 노사안정에 대한 원론적 지도를 지양하고 고용안정지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며, 고용대책에 대하여 북구 독자적인 대책 수립 건의	○ 고용안정대책에 대한 종합대책을 노사안정대책추진분야에서 노사동향관리, 노사정간담회개최, 노조단체장 및 노조대표면담, 노동민원실 설치운영 등을 추진하여 노사협력을 유도하고 ○ 근로자 취업알선대책으로는 고용전산망 설치운영, 구인구직자 만남의날 행사추진, 구인구직 전용전화를 설치하여 노동시장의 활기로 실업률을 낮추고 아울러 각종 고용촉진훈련 실시를 통한 취업인력육성 대책에도 힘쓰겠음	추진중

부서명	건의사항	처리내용	비고
지역경제과	3. 도시가스 LNG전환 건의 ○ 농소지역의 도시가스를 LPG보다 LNG로 전환하는 대책이 요구됨 ○ LNG공급을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도 확대공급할 수 있도록 검토요망	○ 현재 농소지역 10개 APT가 LNG로 전환하였으며, 향후 대주민 홍보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음	추진중
지역경제과	4. 주차장시설 확보 건의 ○ 북구지역의 주차공간이 부족함으로 G.B지역 동천강 상안교 근처에 공영주차장을 시설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함	○ 현재 강동동해안변, 울산공항앞(G.B지역), 농소1동 관내에 주차장 설치방안 검토중에 있으나, 예산미확보로 인해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 ○ 예산확보후 지역의 교통여건, 불법주차실태,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겠음	추진중
지역경제과	5. 파도형 버스정류장 설치 지양 ○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시 파도형은 북구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설치를 지양하고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시설물과 같이 장소,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할 것을 건의함	○ 신규설치 승강장은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파도형으로 설치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 경우 도·농 복합형태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추후 버스승강장 설치시는 지역여건, 장소 등을 감안하여 설치토록 하겠음	추진중

부 서 명	건 의 사 항	처 리 내 용	비 고
건 설 도 시 과	1. 가로수 교체 건의 ○ 화봉택지 개발지역의 가로수가 플라타너스로 개화시에 꽃가루가 날려 주민건강에 저해됨으로 가로수를 교체해 줄 것	○ 화봉택지개발지역의 가로수 수종갱신을 2002년까지 년차적으로 추진 · 완료하여 가로수 꽃가루로 인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 소요예산액:400,000천원 - '98확보액 : 10,000천원 (30본 갱신) - 수 종:벚나무	추진중
건 설 도 시 과	2. 소비향락적인 가로등 설치배제 ○ 가로등 설치시 소비향락적인 곳보다 생산적인 근로자 출퇴근길에 우선 설치	○ 향후 가로등 설치예정지 조사시 국도변 및 공단근로자 출 · 퇴근이 많은 지역 우선순위 결정하여 설치토록 추진하겠음	완 결
건 설 도 시 과	3. 공유수면 주차공간 확보 건의 ○ 강동해안의 공유수면은 점사용 허가보다는 지역경제과와 협의하여 주차공간 확보하여 바다경관 조성	○ 주차장으로 활용될만한 예정부지의 신규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억제할 것이며, 기 점용 공유수면이라도 주차장으로 사용코자 할 경우 점용허가를 유보코자 함	추진중

부서명	건의사항	처리내용	비고
건설도시과	4. 오수관로개설 및 경주시와 협의체 구성 ○ 화봉동과 농소동은 오수관로 공사가 전혀 안되어 동천강에 오수 유입이 많으며, 동천강 상류에도 오수관로가 미설치 되어 있으므로 ○ 오수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주시와 협의 추진바람	○ 화봉지구는 오·우수 관로가 기 매설되어 있으며, 모든 오·폐수는 용연처리장으로 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 '96. 8 환경부로부터 승인된 울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목표년도 2001년까지 농소지역의 발생하수를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 현재 농소 및 경주시 외동읍 모화지역은 저리구역외 지역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에 따라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오·폐수를 기준치 이하로 정화하여 방류하고 있으므로 관련부서인 환경위생과와 협의하여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 동천강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중 (당초: 환경위생과 건의사항임)

부 서 명	건 의 사 항	처 리 내 용	비 고
보 건 소	1. 보건소 방역사업 동 이관 ○ 방역사업에 있어 보건소에서 관내 취약지에 방역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일선동에서 인부사역으로 자체방역을 실시하고 있음 ○ 내년부터는 보건소 행정력절감으로 북구민의 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소의 방역사업을 일선동으로 이관하여 방역사업의 일원화로 효율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건의	○ 보건소에서는 방역종합계획과 급성전염병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방역취약지(효문천외 16개소)및 구 전역에 대한 방역소독 실시(분무, 연막, 살균, 소독)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동에서는 차량통행이 어려운 뒷골목등을 위주로 방역인부를 사역하여 분무,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음 ○ 동 위임시 문제점은 구 전체의 총괄적인 방역계획추진 및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불가능할 뿐아니라 각 동에 방역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이 없어 동 이관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곤란	처리불가

부 서 명	건 의 사 항	처 리 내 용	비 고
보 건 소	2. 보건지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검토 ○ 과거 농·어촌의 주민진료를 위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가 도시화로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병·의원이 많이 설치되어 이용주민이 저조한데도 인근주민의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진료소를 운영하는데 예산낭비요인이 있으므로 보건소장은 소신을 갖고 보건진료소 폐지, 통·폐합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또한 공중보건의의 복무상태를 수시 확인하여 정신교육과 사명감 고취로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 매곡보건진료소는 지역주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 보건의료 계획수립 요인으로 '98. 1. 12 ~ 2. 28까지 보건소파견근무, 3월부터 정식발령조치 계획이며, 상안진료소는 년말까지 흡수계획이며 농소보건소와 강동지구보건지소, 진료소는 지역여건상 농어촌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사업 추진과 진료를 위하여 계속 존속할 계획임	추진중

부서명	건의사항	처리내용	비고
의회사무국	1. 회의록 전산화 ○ 정보화시대 멀티미젼시대에 언론사, 전화번호 안내는 CD로 제작하여 윈도우에서 실행할 수 있음 ○ 회의록을 전산화하여 민원인이 컴퓨터로 의원의 활동사항이나 의회발언 내용을 이름만 입력하면 원하는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의회 독자적 전산화할 방안연구	○ 회의록 전산화를 위하여 검토한 결과 현재 국회, 서울시의회, 경북도의회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 설치비용은 약 3억원정도 소요되고 기능은 일자, 회기, 의원별 신속한 내용검색이 가능하며, ○ 의원, 공무원, 민원인들의 활용은 거의없는 상태로 투자비용에 대해 효율적이지 못함(실시기관 평가) ○ 우리 구 실정에 비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실용성이 없어 향후 광역시와 연계하여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불가
의회사무국	2. 현장의정활동의 활성화 ○ 북구의회 개원이래 11일간의 회기로 의정활동을 하였으나, 다른 구에 비해 적은 편이므로 현장의정 활동에 소홀한 점이 있으며, ○ 불법농지 전용사례, 민방위재난시설 등에 대하여 현장확인 등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회기를 탄력	□ 현장의정활동 활성화 계획 ○ 현장확인실시 시기 - 임시회시 1~2일정도 현장확인이 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 조정 ○ 현장확인의건 발굴추진 · 주요투자사업 대상지 · 언론보도사항 · 진정민원 · 동 순회 주민여론 수렴	추진중

부서명	건의사항	처리내용	비고
	적으로 운용하는 방안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등) ·재난위험 시설물 ·주요 인·허가 사항	
의회사무국	3. 의원간담회 정례화 ○ 북구의회 개청이후 그 동안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의원간담회가 잘 되지 않고 있는바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어도 월 2회이상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안 강구	□ 의원간담회 실시계획 ○ 개최횟수:매월 2회 ○ 개최시기:매월 첫째주, 셋째주 월요일 11:00시 ○ 개최장소:의장실 ○ 참석대상:전 의원, 사무국장, 전문위원, 의사계장 ○ 주요처리안건 · 회의집회에 관한사항 · 의회운영에 관한사항 · 의사일정 협의 · 현장확인의건 협의 · 집행부 지원사항 협의	추진중
의회사무국	4. 예산절감 대책강구 ○ 경제가 어려운 이때 의회사무국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절감 대책을 세워 추진하기 바람	□ 예산절감계획 ○ '98의회 예산현황 · 총 예 산:611,519천원 · 절감예산: 16,435천원 (2.6%) · 실행예산:595,084천원 ○ 절감목표 · 업무추진비:10%절감 · 기타경상경비:20%절감 ○ 추진사항 · 관용차량 10부제 운행 · 의회개최시 고급식당 이용 안하기 · 1회용품 사용안하기	추진중

부 서 명	건 의 사 항	처 리 내 용	비 고
		· 이면지 활용하기 · 사적인 전화 사용안하기 · PC, 복사기 미사용시 전원 차단하기 · 형광등 1등 끄기 · 의안, 복사물 과다생산 지향 · 축하, 격려금 최소화	

제4절 주요질의 · 답변요약서

제5회 정기회('97행정사무감사) '97. 12. 1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한성두의원	○ 지금까지 지방재정계획을 심의회도 안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만들어지지 않은데 대한 답변은?	○ 광역시 이전 97년도 4월말에 소집되어서 98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북구는 7월 15일자로 신설되어서 계획수립이 없었음 그렇기 때문에 98년도 당초 예산편성이 안됐다고 생각이 되고 98년도 중기재정계획은 현재 계획수립이 완료단계에 있음. 이번 12월 15일 예산심의 이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음.
	○ 농소 1, 2동은 같은 건물안에 있는데 농소 2동에 앰프시설 설치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 농소2동사무소가 내년에는 완전히 완료되는 것으로 생각해 시설 그 자체를 옮기려고 생각했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2동사무소가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는 생각이 듬. 그 당시에는 구청과 더불어 업무보고도 되고 해서 완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진한걸의원	○ 양정동 사격장 공원화추진 현	○ 제가 현장에 가보니 주민들도

제5회 정기회('97행정사무감사) '97. 12. 1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황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많이 살고 또 부지가 사격장으로 부적절하고 지금은 오물투석지만 되고 해서 체육공원이 조속하게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 7765부대와 협조를 통해 사격장을 못한다는 통보를 받아 우리가 재경원하고 해서 빨리 불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됨
부의장 윤두환	○ 불법 음반·비디오 단속현황?	□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 단속대상 64곳 중 8곳이 적발되었음. 성인용과 청소년용을 구분해서 진열해야 되는데 중구난방으로 진열되어 있어 구분해서 진열하라고 시정조치 하였음

제5회 정기회('97행정사무감사) '97. 12. 2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한성두의원	○ 북구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기금 55억원을 북구청장 명의로 의회와 한마디 의논도 없이 진행될수 있는가?	□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 전체면적에서 1차 감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임시회 마치고 의장님실에서 도면으로써 의원님에게 설명을 드렸음. 현재 감정결과 부족액은 14억6,000만원이고 시에서는 당초 설계비로 12억원이 나옴. 공제회비 50억원 문제는 당초 시에서 청사와 부지는 제공한다, 건축을 해 준다고 이야기가 되었지만 중간에 시에서도 예산이 어렵고 구청에서도 나올데가 없음. 그래서 청사는 지어야 되고 하니까 공사비 신청은 공제회비에서 중앙에 신청을 하라는 지시가 시에서 내려온 모양임. 공제액을 빌리되 구청에서 빌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신청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음. 주요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보고를 드리지 못한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함.

제5회 정기회('97행정사무감사) '97. 12. 2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한성두의원	○ 국·공유지 대부료 체납액 징수현황 내용을 보면 7월 15일 현재 157건에 1,500만원이고 북구개청 후에 36건에 165만원 정도 회수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 총무과장 유병태 ○ 지금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독촉장도 전부 발부를 해서 징수된 것이 이 부분인데, 신규계약할 때 원칙적으로 대부료가 체납이 되어 있어서는 안되는 상황임. 그런데 금년도 12월달에 대부신청을 받고 있는데 오늘부터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나가 있는데 이때 철저히 챙겨서 대부료가 안 들어 온 것은 계약을 안해 주도록 하고 나중에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음

제5회 정기회('97행정사무감사) '97. 12. 2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진한걸의원	○ 다른 구 · 군에 비해 체납세 징수율이 저조하지 않은가?	□ 지방세과장 강함순 ○ 안 그렇습니다. 징수실적은 타 구에 비해서 2위, 3위임. 우리 실적이 낮아 보이지만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임. 과오납 환부처리 같은 경우 우리는 1억5,000만원이지만 타 구청은 10억원이 넘음. 규모가 작지만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간은 간다고 볼 수 있음.
한성두의원	○ 부동산 압류가 151건에 3억 7,300만원인데 여기서 제대로 돈을 받을 수 있는게 얼마나 되는가?	□ 지방세과장 감함순 ○ 사실 그렇게 안많음. 우리가 계속 분석하고 있는데 압류를 했다고 해서 실제로 다 받는 것도 아니고 한 10%정도 계산하고 있음.
이병우의원	○ 120기동대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 시민과장 이동훈 ○ 11월말 현재 977건을 처리함. 신고는 아주 저조하고 저희들이 순찰해서 지금도 나가있지만 플랜카드나 청소가 미흡한 곳에 청소 등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과의 마찰을 어떻게 풀어 내느냐가 애로사항임

제5회 정기회('97행정사무감사) '97. 12. 2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한성두의원	○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보충설명)비상급수시설은 사람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북구가 개설이 됐다면 당연히 38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함.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한 번하게 되어 있음. 동에서 채수를 하고 보건소에서 6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함.

제5회 정기회('97행정사무감사) '97. 12. 3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부의장 윤두환	○ 특별회계에 생활보호자 생활안정기금이 1억3,800여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집행액이 전혀 없는 이유는?	□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 이 기금은 신청자에 한해서 지급하는데 10월말까지는 신청이 없었고 11월달에 2명이 있어 500만원씩 지원했음.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세 5,000원 이상의 보증인 2명을 세워야하는데 대상이 영세민이라 보증인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음
진한걸의원	○ 환경개선부담금 미수금이 많은데 징수대책은?	□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 미수금이 상당히 많은데 11월 30일까지 2차 독촉을 해서 납부하도록 했는데 현재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임. 독촉이 끝나면 12월 15일경부터 자동차나 시설물에 대해 압류조치할 계획임
부의장 윤두환	○ 동천강 수질오염 방지대책은?	□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 동천강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나름대로 실천하고 있음. 수질검사를 8, 9월에 실시했고 10월에는 갈수기라 못했고 12월 초에 다시 실시할 계획임 동천강 주변 기업체의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점검을 85개소 실시했고 폐수 배출시설에 대

제5회 정기회('97행정사무감사) '97. 12. 3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한 것도 18개소 실시했음. 경주시 관계공무원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 음식물쓰레기 시설에 관한법 시행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 음식물쓰레기 의무화 사업장이 15개소에서 132개 업소로 늘어남. 그래서 12월 5일 8층 회의실에서 강화되는 지침에 대해 업주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기업은 발효기 등의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임.

제5회 정기회('97행정사무감사) '97. 12. 4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진한걸의원	○ 물가관리 대책은?	□ 지역경제과장 배성무 ○ 물가 관리에 대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음. 공무원 157명을 투입해 개인서비스요금 40개 항목에 대하여 가격을 점검하여 비싼업소는 인하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가격인하를 유도해 왔음. 현재 물가모니터요원 3명과 직원 1명이 매일 물가점검을 해서 시에 일일보고하고 있음.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계몽을 통해 물가오름세 심리를 억제하는데 노력하겠음.
	○ 고용안정대책에 대한 설명은?	□ 지역경제과장 배성무 ○ 실질적으로 구 단위에서는 시보다 힘이 부족함. 나름대로 관계를 분석하고 정보를 입수해서 간담회도 합니다만 실적은 미흡함. 간담회는 1회 실시했고 애로사항 4건 처리와 타기관 의뢰 4건이 있음. (보충설명) □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고용관계는 지방행정, 특히 구청 단위에서는 굉장히 어려움. 다만 저희가 앞으로 할 것은 기업체의 실상과 구직자의 관

제5회 정기회('97행정사무감사) '97. 12. 4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계를 명확히 파악해 구청에 고용상담 센터를 설치해 놓고 서로간에 연결을 해 주거나 기업체의 사장님과 간담회를 통해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권고하는 측면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실정임.
이병우의원	○ 소하천 정비계획은?	□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 소하천 정비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고 내년도 2건을 계획을 했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시행을 못함. 시에서는 법정 하천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데 소하천은 자체예산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

제5회 정기회('97행정사무감사) '97. 12. 4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진한걸의원	○ 강동동 무허가 교회의 처리는?	□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 강동동 자체에서 몇차례 계고를 해 가지고 동부경찰서에 고발을 했음. 검찰에 송치가 되어 건물주가 벌금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음. 북구에서도 다시 계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3차까지 계고해서 안되면 강제 철거를 실시할 계획임
이병우의원	○ 강동동 오피스텔 점검 상황은?	□ 건축과장 유병옥 ○ 강동동은 지역 여건상 오피스텔로 쓰기 보다는 휴양쪽에 가까움. 그래서 오피스텔이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임
부의장 윤두환	○ 개발부담금 2건에 대한 징수 대책은?	□ 지적과장 김실근 ○ 법률상 준공처리후 25일내 자진신고해서 구청이 실사를 통해 6개월 내에 납기하도록 되어 있지만 소유자의 부도나 이전시 법령상 징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제도적인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음

제5회 정기회('97행정사무감사) '97. 12. 5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한성두의원	○ 방역사업이 이원화된 이유와 일원화 계획은?	□ 보건소장 박혜경 ○ 보건소에서는 관내의 취약지구 -쓰레기하치장, 하천등- 를 중심으로 전동에 지원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원화 계획도 검토하겠음
부의장 윤두환	○ 보건소 운영시 어려운 점은?	□ 보건소장 박혜경 ○ 인력부족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직원의 결원시 업무 전체가 공백이 생기는 일도 있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 의사가 진료실에 있어야 하지만 학교예방접종, 주민순회진료 등으로 나가야 하는 등 업무공백이 있음
진한걸의원	○ 독감예방 접종시기가 늦은 것 같은데?	□ 보건소장 박혜경 ○ 올해는 예년하고 달리 독감이 한달정도 앞서서 찾아온 감이 있는데, 시기선정은 평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처럼 예외가 생기는 경우도 있음.

제5회 정기회('97행정사무감사) '97. 12. 6

의 원 명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진한걸의원	○ 의회 회의록 관리체계의 전산화 계획은	□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 의회 회의록 전산화는 상당히 발전적이고 바람직한 사항인데, 어느 의회에서 하는지 잘 모르지만 하는 곳이 있다면 견학을 해서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음.

제 7 장

기타 의정활동

제1절 구정질문
제2절 주요의정활동사항
제3절 일자별 의정활동사항

제7장 기타 의정활동

제1절 구정질문

1. 구정질문현황

관리번호	질문일시	질문의원	질문요지
계	·	1명	1건
98-9-2-1	제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98.4.29)	진한걸의원	• 북구관내의 실업대책에 관한질문 • 주거밀집지역 소방도로 확보와 무허가건물처리 행정의 기본원칙에 관한질문

2. 제9회 임시회 구정질문

가. 구정질문 및 답변내용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진한걸의원	○ 지금 우리 북구 관내는 국제구제금융 이후로 높은 실업률과 또한 잠재실업률이 높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구청을 개청한지도 1년 가까이 됨에 따라 이제 행정조직이 제자리를 잡고 구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구정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북구관내의 실업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 북구청장직무대행 부구청장 황성환 ○ 진한걸의원님께서 북구의 실업실태와 향후 실업대책 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실업대책, 양정동 484-47번지 도로의 소방도로 개설, 북구 관내 무허가 건물의 처리실태 등 3가지를 질의하신데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대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진한걸의원	○ 이제 지방 자치단체도 누가 경영을 잘하여 재정적 자립확충과 구민 복리증진이라는 평시의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오늘의 비상시에는 공직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며, 북구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인구분포의 성격상 향후 실업대란에 따른 북구 실업 안전망 구축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인기를 추구하는 정서 지향적 공직자보다도 문제해결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열정을 가진 과제 지향적 공직자 출현이 더욱 갈망되고 있습니다. ○ 구민의 다수인 북구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실직의 고통에 대한 대책은 행정의 책임성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신속하고도 폭넓은 사회적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일에서 10일까지 실직자의 북구 공공근로사업 희망신청자를 접수한 결과 730명의 신청자 중에 예산상 288명만 선정된 바 있습니다.	최근 IMF이후 우리의 경제상태가 급속히 어려워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수입의 감소와 실직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관내에서도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중소기업들의 조업단축, 구조조정등으로 구민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오늘과 같은 대규모의 실업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는 구청단위의 기초자치단체로서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국가적인 실업대책이 마련되면 그에 따른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와 전동에 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재취업 등을 알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41명에 대해서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진한걸의원	○ 여기에는 사실상 요보호 계층 또는 최저 생계비도 못미치는 생활로 실의에 빠져있는 계층이 상당수 누락돼 있을 것입니다. ○ 구청장은 현재 북구의 실업실태와 향후 실업대란에 따른 구체적인 실업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두번째, 주거밀집지역 소방도로 확보와 무허가건물 처리행정 기본원칙에 대한 질문입니다. ○ 지난 1996년 3월 28일 북구 양정동 484번지 부근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차 진입불가로 주민 1명이 화상을 입고 집이 전소되었으며, 이웃 주민이 졸도하는 등 낙후된 소방진입로 문제로 주민들은 화재발생시 불안과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되어 행정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다르고 있습니다. ○ 문제의 양정동 484-47번지 도로(면적 1,293㎡)가 현대자동차 소유인 사도로 되어 있어 소방도로 확보를 위하여 본 의원이 현대 측에 기부채납 의사를 타진한 결과, 현대측은 현재 염포로변 현대자동차내의 국유지	둘째, 실직자와 고교 및 대졸자 신규실업자를 대상으로 1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1차로 4월 1일부터 113명을 11개 민간학원에 3~6개월 기간으로 위탁교육하고 있고, 2차는 6월 이후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5월 1일부터 정부의 종합실업대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는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인 업무에 실직자를 고용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은 물론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은 우리 공무원들의 봉급삭감과 국비지원분을 합하여 우리 구에서는 총 5억원을 투입하여 환경정비, 육림사업, 위험방제보수, 방범활동 등 17개 사업부문에 대해서 근로사업을 시행합니다. 넷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을 위해 2,200만원을 투입하여관내 220세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5월 4일부터 취로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진한걸의원	(2,870㎡)와 염포로변에 편입된 현대자동차토지(4,042㎡)를 국·공유지 교환이 된다면 기부채납할 용의가 있음을 비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 주거의 밀집지역에 소방도로 계획조차 입안되지 않아 소방차와 청소차 진입 불가로 인한 주민집단 민원은 물론 600여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함으로 양정동 484-47도로를 현대자동차로부터 매입 또는 기부채납을 받아 소방도로 개설추진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오늘날 구시가지 소방도로 개설 형태를 보면 도로계획은 직선화 되어 있으나, 실제 도로형태는 직선화 되지 않고 개통되어 있는 곳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폐단은 지주와 보상합의 도출 실패도 있겠지만, 무허가 건물의 방치와, 어처구니없는 건축물 준공검사 승인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정동 484-47번지 계획도로상에 개설된 소방도로와 무허거 건물의 방치로 인하여 통행로 기능을 상실하고 사실상 주	다음은 양정동 484-47번지 상의 소방도로 개설문제입니다. 현재 양정동 484-47번지 도로 1,293㎡는 현대자동차 소유토지이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현대자동차내 국·공유토지와 염포로변 현대자동차 소유부지의 교환조건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검토되어 온 사항으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맞지 않으며 현대자동차내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지 26필지 및 시유지 4필지는 현대자동차내의 법면 부지로서 추후 시에서 공공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484-47번지 도로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소방도로로 개설되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는 현대자동차와 계속 협의하여 기부채납을 받든지, 추후 구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매입하는 방법 등을 통해 소방도로를 개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구관내 무허가 건축물의 처리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5일 구개청이래 현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진한걸의원	차장화 돼 있는 실정입니다. 계획도로 미 개설로 인한 주민 통행 불편해소책을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북구 관내 무허가 건물처리를 위하여 건축법 제78조 내지 제83조에 의거 사전 통지후 고발, 이행강제금부과와 건축법 제69조 의거 또는 단전, 단수, 도시가스의 공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까지 불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조치현황은 총 32건을 적발하여 26건을 철거 또는 원상복구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6건은 원상복구 계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단전, 단수, 도시가스 공급중지 등의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발생시에 시공중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적발 즉시 철거 등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완공된 무허가 건물은 자진철거 원상복구토록 계고하고 미이행시는 고발, 강제철거 및 이행강제금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나. 보충질문 및 답변내용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진한걸의원	○ 답변 중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양정동사무소 맞은편에 알뜰수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18년간 무허가 건물로 방치되어 왔고, 현재 그 앞에 소방도로가 애초에는 동자문위원회에서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 위치가 아니라 어떤 형태의 결과에 의해서 도로가 갑작스럽게 개설된지는모르겠습니다만 그 도로가 원래 계획된 알뜰수퍼를 통과된 소방도로로 개설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뜰수퍼를 제외한 소방도로로 개설이 되어서 사실상 현재 그 도로가 주차장화 되다시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에서 이 알뜰수퍼를 어떤 형태든 간에 적정 보상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을 하든, 구청의 행정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 진한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정동 484-47번지 알뜰수퍼의 처리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의 소방도로가 당초 설계상으로는 알뜰수퍼를 통과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알뜰수퍼 자체가 약 18년간 방치되어 있었고, 현재 저희들이 봤을때는 경사도가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지역을 소방도로로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소방도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 되고 있는 그 부분의 소방도로는 양정동사무소 앞을 통과하게 되면, 알뜰수퍼 있는 주차장에 들어가는 계단만 철거하게 된다면 소방도로가 차량이 진입하는데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구청에서 무허가 건물을 정기적으로 방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것이 무허가 건물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진한걸의원		일지라도 사실상 공익에 현저히 방해가 되지 않는 상황같으면 임의로 철거할 수 없다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행정은 일단 대법원 판례에 귀속될 수 밖에 없고, 두번째로 현재 그것이 18년간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무허가 건물이라 할 지라도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아무런 댓가없이 강제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그 보상 이후에 철거를하는 것이 이익의 형편상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뒤쪽부분, 동사무소의 불난자리까지 진입하는데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알뜰수퍼 2층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과 계단은 저희가 즉시 철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진한걸의원	○ 이 부분이 일상적인 민원차원 문제가 아니고, 650여 주민들의 직접 생활상에 심각하게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쪽에서 답변이…… 조금전 산업건설국장님이 답변하기를 무허가 건물이라도 장기간 방치되었을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공익에 위배되지 않으면 철거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공익상 명백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이 이 부분이 어떻든 간에 적정의 보상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대법원 판례가 그렇다면 알뜰수퍼 부분에 적정보상과 소방도로가 원래 계획대로 관통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설사 소방차 진입이 다소 문제가 있다할지라도 만약 긴급시 문제가 발생되면 소방차가 입구에 도달해서 호스의 시야 확보라든지 제반, 여러가지 주민들의 통행로라든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고 봅	□ 북구청장직무대행 부구청장 황성환 ○ 진한걸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이상원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앞서 북구의 현 실태와 앞으로 북구의 방향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 중구로부터 가장 소외되어 왔던 송정, 효문, 양정, 염포, 진장, 무거동과 남쪽개발에 희생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울주군으로부터 분리 되어온 농소와 강동은 남창과 언양의 새 사업에 밀려서 아예 개발에 거론도 되지 못했던 그 지역도 또한 울주군에서 가장 소외되어 왔던, 즉 행정적인 지원을 가장 적게 받았던 중구의 일부와 울주군의 일부가 합쳐서 북구가 됐습니다. 따라서 북구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북구에 거는 주민들의 기대는 다른 구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기반 시설이 미약한,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진한걸의원	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의 뒷받침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즉 행정지원이 소외되었던 두 개의 구·군이 합친 이 지역에 앞으로 북구가 어떠한 형태로 개발을 시켜 나갈 것인가, 주민들의 욕구를 어떤 식으로 충족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북구의 가장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당연하게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이상원의원	○ 동료의원 진한걸의원의 첫번째 질문의 북구관내 실업대책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제가 몇가지 질문을 추가로 하고자 합니다. 지금 북구가 분명히 자치구입니다. 자치구이면서도 때로는 자치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제가 볼때 현대자동차가 구조조정으로 내부적으로는 1만 4,000명 정도를 감원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가운데서 신문에 보도 되기로는 약 9,000명 정도 감원을 시키겠다, 그래서 명예퇴직자를 접수하다 보니까 노조하고 관계가 악화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만약에 흔들리면 울산경제는 말할것도 없이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로 인해서 북구관내의 연암동, 효문동, 농소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체, 협력업체들이 부도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IMF 이후에 보도 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들의 업체 수가 몇 개나 되	먼저 이상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수결함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부터 우리가 전망을 해 보면서 거기에 따른 북구의 대책과 연관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월 13일 현재까지 우리 북구가 전망하고 있는 세수감소는 구세가 6억5,000만원, 시세가 109억 900만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현재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우리 북구에서는 각종 투자사업의 발주시기를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우리가 전국 시범훈련을 할때 행정자치부장관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 '연말이 되면 부도가 나는 자치단체가 생길 것이다.' 결국 그 말은 하반기가 되면 세수가 더 감소할 것이다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로 각종투자사업의발주시기를 조정하고 있고, 세수증대를 위한 자구 노력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사치성 재산을 비롯해서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는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이상원의원	고, 부도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현대자동차가 이와 같은 식으로 되었을 때 북구의 세수결함이 상당히 클 것으로봅니다. 대강 예상되는 세수결함이 얼마쯤 될 것인지 그것도 답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이 태화강둔치나 아파트단지를 매일 돌면서 자기들 입장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북구청장께서는 직접 참석을 해서 이 분들의 의견을 들어 봤는지, 아니면 그 분들에게 위로를 한번 한 적이 있는지 이것도 좀 밝혀 주시고, 현대자동차 근로자가 북구에 거의 산재해 있습니다. 울산시 전체에도 있겠지만 적어도 북구의 행정 간부공무원들은 1차적으로 북구에 사는 사람들, 북구에 사는 현대자동차 종업원들만이라도 우선 구조조정에서 조금 구출해 주는 노력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중역진들을 방문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불편하시겠지만 7층에 엘리베이터를 세우지 못하는 것도 예산절감 차원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종합진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현재 우리 진한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방도로 개설에 집행부의 방향이 어떻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거기에 총 소요될 예산이 9,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역시가 추경을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추경 자원을 분석을 해서 9,200만원이 배정이 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원의원님께서 북구관내에 중소기업체에 부도가 많이 났는데 몇 개 업체가 났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북구관내에 총 335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28개 업체가 현재 부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이상원의원	협의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어렵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현대자동차가 자기들 나름대로, 예정대로 구조조정을 했을 경우에는 북구는 진짜, 구민들은 고사하고 공무원들도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여기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를 냈거나 폐업을 한 실정에 있습니다. 세번째는 현대자동차의 가족과 가족들의 실직 대책을 요구하고 구조조정에 대한 재 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로한 적이 있는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위로를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민방위교육을 통해서 우리 국장님들과 제가 교대로 민방위교육장에서 북구의 각오와 어려운 주민들이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일으켜 주는 교육을 시켰고, 2회에 걸친 반상회를 통해서 전 직원이 반에 가서 IMF 극복에 대한 전망과 주민들의 각오를, 협조사항을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원의원님이 질문의 뜻이 어려운 북구 주민을 쓰다듬어 주는 그런 시책을 펴 나가도록 촉구한 뜻으로 받아 들이고 앞으로 열심히 더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의 간부공무원은 북구 주민을 구출하는 노력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현대자동차의 계획이 아직 확실하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이상원의원		게 노조측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1단계로 노조와의 인원협의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개인적인 명단이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원 협의가 일방적으로 회사측에서 제시한 안 외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만 북구 주민이다, 중구 주민이다를 떠나서 가급적이면 전 근로자가 함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이런 것을 회사측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 북구 주민들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회사로부터 다가오는지를 계속 관찰을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주민들이 구제될 수 있는 노력을 아울러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구청이라는 것은 시·군과 달라서 지방세의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금년 1월달에 '북구부도위기' 해서 아마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만 구청의 재정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광역시나 국가의 정책에 보다 충실한 실업대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 구청의 최선의 임무로 보고, 우선 어려운 주민들을 달랠 수 있는 시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북구청장직무대행 부구청장 황성환
이상원의원	○ 마지막 답변에 북구청 관내에 있는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하고 시위현장에 나가서 사실 부구청장 입장에서 그 분들에게 위로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은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는 민선 구청장이다라고 하는 자세로 임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울산시장이 때로는 여러가지 지탄도 받지마는 시위현장에 바로 뛰어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하는 것이 민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선이면 그렇게 잘 안됩니다. 지금 부구청장 입장에서는 민선 구청장이라고 생각하고, 그	○ 이상원의원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시위현장과 노동사무소를 방문할 용의가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노조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적도 있습니다만 5월초 경에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북구 관내의 기업체 근로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위현장에서의 '시위'라고 표현한 말은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장소에 방문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을 봐서 적정한 시기를 택해서 현장을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이상원의원	래서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앞으로 거리로 뛰어 나왔을 때 시위현장, 그것도 애들 데리고 가족들이 나와 있을때는 가도 관계 없습니다. 특히 전 근로자들이 밥 한그릇을 놓고 나눠먹기, 조금씩 덜먹기 하자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회사측에서 어떻게 받아 들이는지 한번쯤은 방문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북구에 있는 현대자동차니까, 이 현대자동차에 대한 것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북구청에 있습니다. 가서 간부들을 만나 가지고 요즘 계획이 어떤지 듣고, 노동조합 사무실에도 가서 그 쪽 얘기도 듣고 해서 구청에서 대치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그것도 안한 상태에서 자동차에서는 명예퇴직 신청을 접수받고 있는 상태이고, 노조에서는 연일 시위를 하고 있고,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잘못하면 지역 이기주의도 생길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북구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북구청장으로서는 분명히 한번쯤	한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답 변 내 용
이상원의원	방문을 해야 됩니다. 방문을 해서 그 쪽 사정을 들어보고 노동조합의 사정도 들어보고 해서 고용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에게 마음을 좀 안정시켜 줘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IMF시대의 공무원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쯤 방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2절 주요의정활동사항

1. 북구청사 건립추진

일 시	건 명	내 용	비 고
'97.12.15 (정기회)	청사정비기금 차입의결	○ 차입의결의건(안)제출(집행부) ○ 차입금 승인 • 금액:5,500백만원 승인 • 상환:울산광역시 ○ 잔여부지(도로881평, 녹지856평) 감정촉구	
'98.2.5 (간담회)	시에 차입금 상환약속 등 서면건의	○ 청사정비기금상환을 당초 시장약속대로 상환할 것을 서면약속 요구 ○ 감정된 토지보상금 1,460백만원과 미감정 보상금 2,721백만원 계 4,181백만원을 지원요구 ※ 전의원 연명 서명하여 공문송부	※ 울산광역시기획 13130-70('98.2.13)호로 상환 및 지원할 계획임을 회시 ※건의문:별첨참조
'98.2.19 (임시회)	입찰방식결정 업무보고	○ 일괄입찰방법, 기타공사방법중 ○ 기타공사 방법으로 촉구	지역경제활성화
'98.3.17 (간담회)	추진상황보고	○ '98. 3. 6 시건설심의위원회에서 기타공사결정 ○ 현상설계 공모기간(90일 소요)	'98. 2. 19 건축설계경기운영 지침개정으로 90일 소요
'98.6.26 (공모작품 심사)	현상설계공모 작품심사	○ 공모작품 15개 중 - (주)성림건축 작품 당선	의원 1명 참석
'98.4.19 (광역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광역시의회 :윤두환의원)	○ 청사건립비 292억원의 연도별 재원확보대책에 관한 사항 ○ 외환위기로 세입결손이 많은데 북구청사 건립추진에 관한 사항	※답변내용: 회의록사본 참조(별첨)

建 議 書

98. 2. 0. 북구의회의장

존경하는 울산광역시장님

위기에 처한 우리경제의 어려운 상황에서 광역 울산시정을 책임지고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북구 의회의원 일동은 시장님께서 현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고, 지난날의 우리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룩한 주역인 우리 울산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에 10만 북구민과 함께 적극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울산광역시 출범과 동시에 신설된 저희 북구는 기존의 구군과는 달리 행,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하여 400여 공무원과 의회 및 주민이 혼연 일체가 되어 자치구로서의 기반조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북구 현안사업 몇가지에 대하여 시장님께 간곡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북구청사 편입부지 보상금 확보입니다.

지난 4월 11일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9월 2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북구청사 부지는 총 13,397평으로서 청사부지 10,000평 도로 2,138평 완충녹지 1,261평입니다.

현재 북구에서 청사부지 7,680평 도로 1,257평 완충녹지 405평 계 9,342평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금액을 6,460백만원으로 확정하였으나 예산확보액이 5,000백만원밖에 없어 부족액 1,460백만원에 대하여는 보상금 지급통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정조차 하지못한 4,055평의 청사부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조차 수립하지 못하므로 편입지주들은 물론 북구민 전체가 북구청사 건립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집단항의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북구민은 조속한 청사건립 약속만 믿고 불편을 인내하고 있으며, 북구청사에 편입되는 편입지주들의 조기보상 요구집단행동이 우려될뿐아니라 미감정 부분 4,055평에 대해 동시 보상하지 않을시 지가상승 또는 하락으로 인한 이해득실 문제가 우리시의 예산사정에 기인된다면 많은 저항에 부닥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관련 집단민원을 사전예방하고 우리시의 최우선 투자사업인 북구청사 건립을 계획대로 완료하기 위해 감정평가 실시한 보상금 부족액 1,460백만원과 미감정 부지에 대한 보상금 2,721백만원 계 4,181백만원의 예산을 '98년 2월에 특별교부금으로 반드시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u>둘째, 북구청사 건립에 따른 건축비 확보입니다.</u>

광역시에서는 북구청사 건축비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 5,500백만원을 차입할 계획으로 내무부에 신청하면서 북구명의로 신청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 광역시 출범시 10만 북구 주민에게 건립을 광역시에서 책임지고 신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비록 행정절차상 명의만 북구로 한 사항은 이해하나 상환기간이 2010년까지 장기간 걸쳐있고 원금과 이자 합계액이 6,407백만원으로 북구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혹 제반여건 변동으로 인한 약속 이행이 되지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북구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우리 북구의 재정형편상 원금 및 이자상환 능력이 없으므로 당초 약속하신 바와 같이 광역시 예산으로 상환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북구 보건소 건립과 농소2,3동사무소 신축사업입니다.
우리 북구는 신설되면서 보건소가 없어 화봉동 소재 사유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농소2동은 농소읍 민원실을 개조하여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농소3동은 가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북구재원으로는 본 사업 역시 엄두도 내지못할 실정이오니 시장님의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넷째, 중소기업 연구센타 시설 결정 관계입니다.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재정정비 중에 있는 북구 연암동 1231번지 일원의 현 도시계획 구역내 생산녹지 지역에 중소기업 연구센타 시설결정은 울산광역시 기업인의 최대 관심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여건으로 울산 산업 동맥인 산업도로와 교통의 대동맥인 병영로가 맞닫는 지점으로 중.동.북구의 중심권역이며 기업발전의 기초산업인 중소기업연구센타가 기업활성화 및 육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기에 시설결정이 될소 있도록 사장님의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당면한 IMF통제경제 시대의 어려운 여건하에서 시장님께 상기와같이 건의드리게 됨을 헤아려 주심과 우리 북구의 현안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있기를 당부드립니다.

1998. 1 .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장 김성보

부 의 장 윤두환

의 원 이상원

의 원 한성두

의 원 정석수

의 원 이병우

의 원 진한걸

第10回 蔚山廣域市議會 第 1 號

本 會 議 會 議 錄

蔚山廣域市議會事務處

1998年4月29日(水) 午後 2時10分

議事日程(第1次 本會議)

1. 第10回蔚山廣域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蔚山廣域市長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3. 98年度第1回蔚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에대한提案說明의件
4.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5. 京釜高速鐵道當初確定(案)施行및蔚山中間驛舍建立促求決議案
6. 第10回蔚山廣域市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選任의件
7. 市政에관한質問의件

附議된案件

○ 4分自由發言(林明淑議員) ····· 2面
1. 第10回蔚山廣域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 4面
2. 蔚山廣域市長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金哲旭議員外 14人 發議) ····· 4面
3. 98年度第1回蔚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에대한提案說明의件(蔚山廣域市敎育監 提出) ····· 5面
4.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長提議) ····· 6面
5. 京釜高速鐵道當初確定(案)施行및蔚山中間驛舍建立促求決議案(建設交通委員長 金道喜 提案) ····· 6面
6. 第10回蔚山廣域市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選任의件(議長提議) ····· 7面
7. 市政에관한質問의件 ····· 7面
○北區廳舍建立에따른豫算運用에관한質問의件(尹斗煥議員) ····· 7面

<전 면 생 략>

7.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4시41분)

○의장 오해용 :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윤두환의원과 조승수의원 두 분이 하게 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질문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두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사건립에따른예산운용에관한질문의건-

○윤두환의원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두환의원입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됨과 동시에 북구청이 설치된 지도 어언 10여개월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구청이 신설되면 북구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예전에 비해 훨씬 증진되는 것은 물론, 균형있는 지역발전의 도모 등을 통해 북구지역의 발전이 기대 되었지만, 10여개월이 지난 지금의 실정은 주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출·퇴근시간 차량의 정체로 인해 농소에서 현대자동차까지 차량으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1시간 가량 소요되는가 하면 이 외에도 각종 기반시설의 미비로 인해 비만 오면 오수와 하수의 범람 등으로 주민생활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북구청사가 북구지역에 위치하고 있지 않음으로 해서 생겨나는 주민 불편사항을 예로 들자면, 민원업무와 구정업무의 처리를 위한 많은 시간적, 금전적 낭비가 초래되고 있으며, 신설 구청으로써 주민들의 자립정신과 소속감이 심각히 저해되고 있는 것은 물론 지역의 각종 사회기반·간접시설에 투자되어야 할 예산이 청사의 건물 사용료로만 매년 5억2,000여만원 가량 지출되는 등 구정이 심각한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견주어 현재 북구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세출예산 355억8,600만원중 자체 재원이 132억4,1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37.2%에 불과하며, 이는 또한 경상예산 187억1,100만원의 7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자체 재원으로는 단 1건의 지역개발사업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구 예산의 대부분이 의존 예산이기 때문에 구의 살림살이가 필연적으로 열악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조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거론한 여러 현실적인 어려운 점들을 감안해서 신설 북구청의 예산과 행정적인 기반을 조속히 다져야겠다는 의미에서 다음 몇가지 사항을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 북구청사 건립을 위해 29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 투자액 50억2,900만원과 98년 예산확보액 12억원, 도합 62억2,900만원으로는 부지매입비인 91억8,100만원에도 약 29억원 이상이 부족한 실정인데, 과연 북구청사의 조속한 건립을 위한 연도별 재원 확보대책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외환위기로 인한 각종 건축자재의 가격상승으로 건축비가 크게 상승하는 것은 물론 경기침체로 인해 관역시세의 700억원 이상이 결손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울산광역시가 추진 중인 대형사업의 상당부분이 연기 또는 조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북구청사 건립 또한 99년말까지의 완공계획이 제대로 지켜질지 구민들은 심각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한대로 청사 신축 이전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되는 주민불편을 고려해 시장께서는 당초의 계획대로 청사의 완공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에 따른 정확한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중 략 >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전에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오해용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완구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심완구 :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진지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시의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윤두환의원님과 조승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환의원님께서 북구청사 신축예산 운용과 관련한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사 건립은 지난해 7월16일 북구청 개청식때 시에서 청사를 건립해 주겠다고 시장인 제가 공약한 사항이올시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MF 사태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도 현재 매우 어려운 재정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사 마련이 늦어서 겪고 있는 북구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해서 북구청사 건립에 관한 예산은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북구청사 건립에 관한 향후 공정을 잠시 말씀드린다면 금년 6월말까지 청사건축설계 공모 당선작 심사에 이어서 99년2월까지는 실시설계와 계약절차 등을 모두 마치고 99년4월에 착공해서 2000년8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구청사 신축공사에 최대한의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 해서 북구민의 편익 증진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중 략 >

○의장 오해용 : 심완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광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종광 : 윤두환의원님과

조승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제외하고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두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북구청사 건립을 위한 연도별 재원확보 대책 및 추진일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원확보와 지원에 대해서는 97년7월16일 북구청 개청식때 시장님께서 북구민들에게 북구청사를 시비로 건립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음을 시장님 답변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사건립 추진은 시에서 청사건립에 관한 제반사항을 북구와 같이 검토하고 협의한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9월12일 신축북구청사에 대한 규모를 부지 7,000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건평 3,500평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로 신축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지원 및 융자 조치된 사항을 보면 97년 광역시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로 50억1,300만원을 편성하여 97년11월 4일 지원하였고, 97년8월26일 지방재청공제회 청사정비기금 55억원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 일반회계 청사신축 보조금으로 편성된 12억원을 금년 하반기에 지원할 예정이며, 구청에서 요구중인 편입토지 보상비중 부족분 14억6,000만원은 충분한 검토를 거친후 금후 추경예산 편성시 확보하여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은 현재까지 시에서 북구청사의 신축과 관련하여 조치한 사항들 입니다.

다음은 윤두환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인 북구청사 건립비 292억원중 97년 투자액 50억2,900만원과 98년 예산확보액 12억원 도합 62억2,900만원으로는 부지매입비 91억8,100만원에도 부족 하다는데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북구청사의 건립총액 292억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검토된바 없으므로 금후 설계내역서 등을 검토하여 그 타당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인 99년까지 북구청사의 완공여부와 그에 따른 추진일정 및 연도별 재원대책에 대하여는 시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드렸으므로 시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 하 생 략>

2. 사치성재산 중과세부과

일 시	건 명	내 용	비 고
'97.12.2 (제5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사치성 재산에 대한 징수실적이 전무함으로 북구 세수증대 차원에서 사치성재산을 전수조사 '98. 1. 30까지 보고요구	지방세과
'98.2.16 (제6회 임시회)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의회요구)	○ 사치성 재산에 관한 자료파악 및 세수증대 특별보고	기획감사실 지방세과 건 축 과
'98.2.27 (제7회 임시회)	오피스텔관련 특별업무보고 (의회요구)	○ 기획감사실 - 강동오피스텔 제세중과금 납부 확인보고 ○ 건축과 - 불법 내부구조변경 및 용도변경 사용여부 ○ 지방세과 - 씨사이드외 2개 오피스텔 59세대 중 55세대 사치성 재산판단 - 부과대상금액:165건 235,133천원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 지방세과업무보고서 참조 (별첨)
'98.3.17 (의원 간담회)	추진상황보고 (의회요구)	○ 사치성재산 추진상황 업무보고 - 오피스텔 불법용도변경 지속조사 요구 - 사치성 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조사 요구	건 축 과 지방세과
'98.3.31	중 과 세	○ 부과고지서 발부:50세대 ○ 부과세액:160백만원(취득세)	지방세과
'98.6.30 (현 재)	징수실적	○ 수납현황 - 25세대 48백만원	지방세과

사치성재산조사 및 부과추진사항

□ 추진부서 : 지방세과

1. 현 황

위 치	오피스텔명	건 축 주	허가일자	준공일자	세대수	분양세대수	층수	연면적(㎡)
산하 955	씨 사 이 드	(주) 중 화 개 발	91.9.17	92.11.16	20	20	6	825.90
신명 39	경 방	(주) 경 방 주 택	92.8	94. 7.26	15	15	7	769.77
신명 61	대우마리나	민 병 화	93. 3.15	95.12.13	24	22	8	1,285.26
구유 232	신 한 정 자	(주) 동 호 개 발	95.11.17	97. 7.28	68	30	8	5,373.18
신명151-13	서강프라자	박정환,김규태	94.10.19	98. 1.14	63	17	10	5,765.00

2. 실태조사

가. 조사대상 : 씨사이드, 경방, 대우마리나

(신한정자, 서강프라자는 분양중에 있음)

나. 조사기간 : '97. 12. 19 ~ '98. 3. 11

※ 신한정자, 서강프라자는 조사에서 제외

3. 조사결과

가. 사치성재산(별장)

위 치	오 피 스 텔 명	별 장	비 고
계		55세대	
산하동 955	씨 사 이 드	20세대	
신명동 39	경 방	15세대	
신명동 61	대우마리나	20세대	2세대 미 분양 2세대 상시거주

나. 비대상 : 4세대

- 내역 ┌ 미분양 : 2세대
  └ 실지거주자 : 2세대(일반주택으로 사용)
- 조치계획 : 계속 주시하여 별장요건 충족시 부과조치 예정

4. 조치결과

가. 과세예고

- 대상 : 55세대
- 과세예고일 : '98. 2. 23

나. 과세예고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오피스텔명	과세예고 세대수	접수현황			비고
		계	심사대상	보류대상	
계	55	39	33	6	보류사유: 한전에서 전기단전
씨사이드	20	12	12		
경방	15	13	12	1	
대우마리나	20	14	9	5	

- 1차 과세전 적부심사
  - 대상 : 10세대
  - 일시 : '98. 3. 17
  - 결과 : 불채택(과세대상)
- 2차 과세전 적부심사
  - 대상 : 23세대('98. 3. 19 시제출)
  - 심사일시 : '98. 3. 26 예정

다. 부과추진사항

- 총대상 : 49세대
- 1차부과
  - 대상 : 2세대(부과제척기간 도래)
  - 일시 : '98. 2. 19
  - 세액 : 취득세 6,450,600원
- 2차부과
  - 대상 : 24세대(불채택 10세대+심사미청구 14세대)
  - 일시 : '98. 3. 23
  - 세액 : 70,370,240원(취득세 66,072,140원, 농특세 4,298,100원)
- 3차부과
  - 대상 : 23세대
  - 일시 : '98. 3. 26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즉시 부과

※ 보류 6세대는 계속 추적조사후 과세결정

5. 분양중인 오피스텔 조사 및 부과계획

○ 현 황

위 치	오피스텔명	세 대 수	분 양 세 대		미 분 양	준공일자	면 적
			12월이전	12월이후			
구유동 232	신한정자	68	25	5	38	'97.7.28	5,373.18
신명동 309-7	서강프라자	63		17	46	'98.1.14	5,765.00

※ 서강프라자는 소유권이전 미이행으로 과세 맹점

○ 현재 분양중에 있으므로 사치성 재산으로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기간동

안 실태조사와 증빙자료 확보가 필요함.

(5월중 조사종결코자 하나 거의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키 위해 장기간 소요될 예상)

○ 부과시기

- 현지 실태조사 및 내부등을 조사했으며, 계속 주시후 사치성 재산 요건 해당될시 즉시 부과조치

※ 속초시의 경우 : 1년동안 조사후 부과

제3절 일자별 의정활동사항

□ 1997년도

일 시	제 목	주 요 내 용	비고
'97.7.15 (화)	○ 북구의회개원	○ 장소:본회의장 ○ 내용:울산광역시 승격과 함께 북구의회 신설로 제1회 임시회 및 개원식	
'97.7.22 (화)	○ 바르게살기 협의회	○ 장소:8층 대회의실 ○ 내용:바르게살기운동 울산광역시북구 협의회 개청식참석, 의장축사	
'97.7.23 (수)	○ 국제라이온스 협회	○ 장소:코리아나호텔2층 글로리아 홀 ○ 내용:국제라이온스협회355-1지구 창립총회 의장참석	
'97.7.25 (금)	○ 북구선거관리 위원회 개청	○ 장소:한국산업공단(4층) ○ 내용:울산광역시 승격으로 북구선거관리 위원회신설 개청식 의장참석	
'97.7.29 (화)	○ 조찬기도회	○ 장소:코리아나호텔2층 연회장 ○ 주관:울산기독교연합회 ○ 내용:울산광역시승격 축하와 시정발전을 위한 조찬기도회	
	○ 의원간담회	○ 장소:의장실 ○ 내용:전의원 당면업무사항에대한 간담회	
	○ 간부공무원과 간담회	○ 장소:이가한정식 ○ 내용:구청간부공무원과 의원간담회	
'97.7.30 (수)	○ 바르게살기 협의회	○ 장소:시청 신관대회의실 ○ 내용:바르게살기운동 울산광역시협의회 개청식 의장참석	
	○ 4-H야영훈련	○ 장소:삼동초등학교 ○ 내용:제36회 울산광역시 4-H 야영훈련 봉화식 의장참석	

일 시	제 목	주 요 내 용	비고
'97.8.1 (금)	○ 기자와간담회	○ 장소:이조한정식 ○ 내용:의회출입기자와 의원간담회	
'97.8.4(월) ~8.6(수)	○ 제2회 임시회	○ 장소:본회의장 ○ 내용:교육위원추천 및 업무보고	
'97.8.7 (목)	○ 강북교육청 현판식	○ 장소:송정초등학교 별관 ○ 내용:울산광역시 승격으로 울산광역시 교육청산하 강북교육청신설 현판식 의장참석	
'97.8.8 (금)	○방위협의회 ○ KBS 2TV 송출 ○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 장소:시청 신관3층 회의실 ○ 내용:'97후반기 통합방위협의회의장참석 ○ 장소:KBS-TV 스튜디오 ○ 내용:KBS울산방송국 제2TV송출식참석 ○ 장소:서생원자력연구소 운동장 ○ 내용:제3회 울산광역시농업경영인 가족전진대회 의장참석	
'97.8.15 (금)	○ 광복절행사 ○ 박상진의사 추모식	○ 장소:문화예술회관 ○ 내용:제52회 광복절경축행사 의장참석 ○ 장소:학성공원 ○ 내용:고헌박상진의사 추모식 의장참석	
'97.8.20 (수)	○ 교육위원회 개원식 ○ 을지연습훈련 참관	○ 장소:울산광역시 교육청 ○ 내용: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개원식 및 현판식 의장참석 ○ 장소:정자 2대대 ○ 내용:을지연습 시범훈련 의장참석	
'97.8.21 (목)	○ 을지연습훈련 참관	○ 장소:시청본관 지하상황실 ○ 내용:'97을지포커스렌즈 연습훈련참관	

일 시	제 목	주 요 내 용	비고
'97.8.22 (금)	○ 새마을북구지회개청	○ 장소:농소1동 사무소광장 ○ 내용:새마을북구지회 개청식 및 김성보의장 지회장에 취임식	
'97.8.27 (수)	○ 새마을지도자 수련회	○ 장소:서생원자력연수원 운동장 ○ 내용:새마을지도자 합동수련대회 의장참석	
'97.9.1 (월)	○ 울산방송국 개국	○ 장소:KBS 공개홀 ○ 내용:울산방송국(UBC)개국식에 부의장 참석	
'97.9.2 (화)	○ 신차발표회	○ 장소:현대자동차 문화회관 ○ 내용:국민차 아토스신차발표회에 부의장 참석	
'97.9.24(수) ~9.25(목)	○ 제3회 북구의회 임시회	○ 장소:본회의장 ○ 내용:제증명수수료개정조례(안)등 5건 및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 따른의견청취의건	
'97.10.1 (수)	○ 처용문화제	○ 장소:공설운동장 ○ 내용:제31회처용문화제개막식 의장참석	
'97.10.4 (토)	○ 북구농업경영인연합회 총회	○ 장소:농소농협 3층 회의실 ○ 내용:북구 농업경영인연합회 창립총회 및 현판식참석 의장 축사	
'97.10.10 (금)	○ 공직자윤리위원회	○ 장소:부구청장실 ○ 내용:울산광역시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의장참석	
'97.10.13 (월)	○ 의장단협의회	○ 장소:시의회 의장실 ○ 내용:시 · 구 · 군 의장단협의회개최 의장참석	

일 시	제 목	주 요 내 용	비고
'97.10.17 (금)	○ 해양수산인 체육대회 ○ 의장단간담회	○ 장소:서생원자력 연수원 운동장 ○ 내용:울산광역시해양수산인 체육대회 의장참석 ○ 장소:윤주한정식 ○ 내용:시 · 구 · 군의장단간담회 의장참석	
'97.10.20 (월)	○ 시장초청 의장단간담회	○ 장소:경주할매식당 ○ 내용:시장초청 시 · 구 · 군의장단 오찬간담회 의장참석	
'97.10.21 (화)	○ 경찰의날 기념식	○ 장소:동부경찰서 ○ 내용:제52주년 경찰의날기념식 의장참석	
'97.10.23 (목)	○ 국군의날 기념행사	○ 장소:방어진중대 ○ 내용:제49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 의장참석	
'97.10.24 (금)	○ 방역사례발표 ○ 의장단간담회	○ 장소:시청신관 대회의실 ○ 내용:새마을 방역사례 발표회에 의장참석 ○ 장소:양씨회집 ○ 시 · 구 · 군의장단간담회 의장참석	
'97.10.29(수) ~10.30(목)	○ '97의회운영 비교시찰	○ 장소:경주 ○ 주관:울산광역시의회 ○ 내용:'97의회운영비교시찰차 광주시 · 구의회 방문	
'97.10.31(금) ~11.4(화)	○ 제4회 북구 의회임시회	○ 장소:본회의장 ○ 내용:'97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현장확인, '97행정사무감사자료요 구의건 등으로 임시회 개최	
'97.11.1 (토)	○ 직원등산대회	○ 장소:오운목장 ○ 내용:북구청 전 직원등산대회 의원참석	

일 시	제 목	주 요 내 용	비고
'97.11.7 (금)	○ 의장초청만찬	○ 장소:비원 ○ 내용:구 · 군의장단초청만찬 의장참석	
'97.11.10 (월)	○ 새마을북구 지회 단합대회	○ 장소:북구지회 ○ 내용:새마을북구지회 의장단단합대회 의장참석	
'97.11.25(화) ~12.29(월)	○ 제5회 북구 의회정기회	○ 장소:본회의장 ○ 내용:개원이후 첫 정기회로써 행정사무 감사, 예산심의등 정기회 개최	
'97.12.23 (화)	○ 새마을지도자 대회	○ 장소:종하체육관 ○ 내용:'97울산광역시 새마을지도자대회 의장참석	
'97.12.26 (금)	○ 바르게살기 협의회 행사	○ 장소:종하체육관 ○ 내용:바르게살기 울산광역시협의회 친절 운동확산 및 친절기사 발대식 시민 화합한마당대회에 의장참석	
'97.12.29 (월)	○ 송년회	○ 장소:시청신관 3층 회의실 ○ 내용:'97년 의정평가 및 송년회 의장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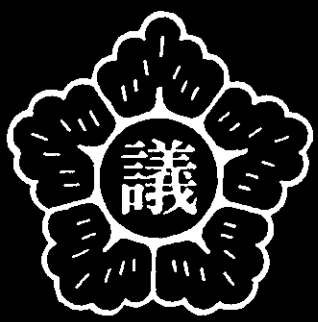
□ 1998년도

일 시	제 목	주 요 내 용	비고
'98.1.9 (금)	○ 민주평통자문회의 ○ 기자간담회	○ 장소:시청신관3층 회의실 ○ 내용: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월례회 의장참석 ○ 장소:갈치명소 ○ 내용:신년을 맞아 의원, 기자감담회	
'98.1.12 (월)	○ 간부공무원과 간담회	○ 장소:이가한정식 ○ 내용:집행부 간부공무원과 간담회	
'98.1.16 (금)	○ 금모으기행사	○ 장소:농협중앙회 울산본부 ○ 내용:북구청사건립추진 업무보고	
'98.2.10 (화)	○ 울산전문대 졸업식	○ 장소:울산전문대광장 ○ 내용:울산전문대 학위수여식	
'98.2.11 (수)	○ 기자간담회	○ 장소:경주할매집 ○ 내용:시 · 군 · 구의장단 기자간담회	
'98.2.13(금) ~2.19(목)	○ 제6회 북구의회 임시회	○ 장소:본회의장 ○ 내용: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98.2.16 (월)	○ 폐자원모으기	○ 장소:병영농협 무룡지소 ○ 내용:조례자원모으기운동에 참가격려	
'98.2.18 (수)	○ 통합방위지방회	○ 장소:시청신관 3층 회의실 ○ 내용:'98통합방위지방회의	
'98.2.23 (월)	○ 바르게살기협의회정기총회	○ 장소:8층 대회의실 ○ 내용:바르게살기북구협의회 정기총회	
'98.2.25 (수)	○ 대통령취임식	○ 장소:국회의사당 광장 ○ 내용:제15대 대통령취임식	

일 시	제 목	주 요 내 용	비고
'98.2.26(목) ~ 2.27(금)	○ 제7회 북구 의회 임시회	○ 장소:본회의장 ○ 내용: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98.3.1 (일)	○ 삼일절 기념행사	○ 장소:문화예술회관 ○ 내용:삼일절 기념행사	
'98.3.3 (화)	○ 조세의날 기념식	○ 장소:8층 대회의실 ○ 내용:제32회조세의날기념식 의장축사	
'98.3.5 (목)	○ 라이온스클럽 의회방문	○ 장소:의장실 ○ 내용:북울산라이온스클럽 의회방문	
'98.3.12 (목)	○ 의원간담회	○ 장소:의장실 ○ 내용:당면업무사항협의	
'98.3.17 (화)	○ 의원간담회	○ 장소:의장실 ○ 내용:북구청사건립추진 업무보고 사치성재산 업무보고	
'98.3.26(목) ~3.27(금)	○ 제8회 북구 의회 임시회	○ 장소:본회의장 ○ 내용: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현장점검	
'98.4.3 (금)	○ 예비군의날 기념식	○ 장소:시청신관 3층 회의실 ○ 내용:제30주년 예비군의날 기념식	
'98.4.15 (수)	○ 민방위 시범 훈련	○ 장소:쌍용아진2차APT ○ 내용:제22차 민방위전국시범훈련 의원참석	
'98.4.22 (수)	○ 새마을나눔의 날 행사	○ 장소:태연학원 ○ 내용:새마을창설기념 나눔의날 행사에 참석	
'98.4.28(화) ~ 4.29(수)	○제9회 북구 의회 임시회	○ 장소:본회의장 ○ 내용: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일 시	제 목	주 요 내 용	비고
'98.6.12 (금)	○ 의원상견례	○ 장소:의회사무국 ○ 내용:제2대 당선의원 상견례	
'98.6.15 (월)	○ 제10회 북구의회 임시회	○ 장소:본회의장 ○ 내용: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 개정조례(안)등 6건	
'98.6.22 (월)	○ 임기만료 오찬	○ 장소:유포회센타 ○ 내용:초대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 임기만료 오찬	
'98.6.24 (수)	○ 기자간담회	○ 장소:갈치명소 ○ 내용:기자간담회	
'98.6.24 (수)	○ 전국시·군·구의장대표 만찬	○ 장소:다이아몬드 2층 ○ 내용:제41차 전국시·군·구의회의장 대표만찬	
'98.6.25 (목)	○ 의정연찬회	○ 장소:소회의실 ○ 내용:제2대당선의원 의정연찬회	
'98.6.30 (화)	○ 초대북구의회 의원 임기 만료식	○ 장소:의장실 ○ 내용:초대북구의회의원 임기만료식 행사	

부 록



○ 의원현황

○ 의회사무국 공무원현황

초 대 의 원 현 황

□ 의장명단

선 거 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강 동 동	김 성 보	1937.4.4	1997.7.15~ 1998.6.30	

□ 부의장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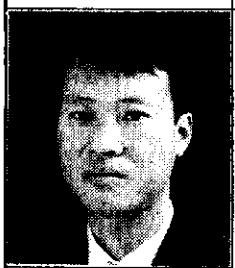
선 거 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송 정 동	윤 두 환	1955.3.5	1997.7.15~ 1998.6.30	

□ 의원명단

선 거 구	성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제10선거구	이 상 원	1941. 8.29	1997.7.15~ 1998.6.30	
농 소 동	한 성 두	1941. 3.31	1997.7.15~ 1998.6.30	
진 장 동	정 석 수	1937. 4.15	1997.7.15~ 1998.6.30	
효 문 동	이 병 우	1942. 2. 8	1997.7.15~ 1998.6.30	
양 정 동	진 한 결	1953.11.15	1997.7.15~ 1998.6.30	
염 포 동	조 승 수	1963. 1.22	1997.3. 2~ 1998.6.30	행정구역변경으로 '98.3.2북구의회 등록신고

□ 의원프로필

姓 名	學 歷 및 經 歷	電 話	住 所
 李相源(41.8.29)	第 10 選 擧 區 蔚山高卒, 東國大地域開發大學院修了, 統一主體國民會議代議員, 民主平和 統一諮問委員, 明成再建中高等學校長, 農所中, 蔚山高總同窓會長, 蔚山新聞發行人, 國際民間外交協議會韓國本部副總裁, 慶南地域新聞協議會長, 韓國地域新聞協會副會長, 第5代慶南道議員, 運營委員, 內務委員	(自) 295-1500 (事) 245-9500 ~2 011-599-8785 012-558-5770	호계동 576-2 학산동 75-30
 韓成斗(41.3.31)	農 所 邑 釜山商高卒, 蔚山大學校產業經營大學院修了, 東國大地域開發大學院修了, 蔚山배協同組合常務歷任, 農所農協組合長歷任, 農所中學校育成會長歷任, 蔚山市蹴球協會副會長, 蔚山郡議會議長歷任, 統合蔚山市副議長歷任, 都市經濟委員	(自) 295-1156 (事) 295-8809 011-574-5604	倉坪同 1047 〃
 金聲補(37.4.4)	江 東 洞 江東中學校卒, 東國大地域開發大學院修了, 蔚山水產業協同組合理事歷任, 江東中學校育成會長歷任, 유포식품代表, 유포奬學會會長, 동해라이온스클럽會長, 統合蔚山市議員, 環境水道委員, 北區議會議長	(自) 295-8300 (事) 295-5100 011-850-1661 012-515-5102	舊柳洞 318 〃
 鄭錫壽(37.4.15)	珍 庄 洞 釜山상선高中退, (株)거정開發代表, 韓國反共聯盟兵營指導委員長歷任, 새마을 指導者歷任, 新韓國黨中區地區黨副委員長, 建設交通委員	(自) 287-1441 287-0202 (事) 273-0080 260-2774 011-854-5656	珍庄洞 348-1 新亭洞 1169-3

姓 名	學歷 및 經歷	電 話	住 所
	孝 門 洞	(自)	연암동 415
	蔚山工高卒, 東國大學行政大學院修了, 韓國鐵鋼代表, 孝門初等總同窓會長, 새마을運動蔚山廣域市支部長, 釜山地方法院蔚山支院家事調整委員, 蔚山中小企業協議會會長, 內務委員長	287-8001	벽산늘푸른 Ⓐ 108/106
		(事)	孝門洞
		288-8111	816-2
李秉雨(42.2.8)		017-556-8555 012-522-8558	
	松 亭 洞	(自)	華峰洞
	慶州新羅高卒, 蔚山産業經營大學院修了, 國際人權聯盟蔚山支部特別委員, 蔚山中長期財政委員, 蔚山市韓日親善協議理事, 蔚山市蹴球協議會理事, 初代蔚山市協議都市經濟委幹事歷任, 教育社會委員, 北區議會副議長	287-9808	971-1
		(事)	華峰洞
		288-9111	886-4
尹斗煥(55.3.5)		015-536-9025	
	楊 亭 洞	(自)	楊亭洞
	미국TRINITY UNIVERSITY勞動政策과정修了, 現代自動車勤務, 勞使協議會勞使委員歷任, 勞使協議會苦衷處理委員, 第1代勞動組合副委員長歷任, 蔚山地域양심인後援會運營委員, 運營委員, 都市經濟委員幹事	269-8063	523
陳漢杰(53.11.15)		012-547-9025	
	鹽 浦 洞	(自)	鹽浦洞
	鶴城高卒, 東國大學校卒, 進步政治聯盟蔚山市支部委員長歷任, 蔚山環境運動聯盟諮問委員, 蔚山參與自治聯帶自治分科委員長, 保社委幹事歷任, 環境保全諮問委員, 環境水道委員幹事, 運營委員	287-1327	57-4
		(事)	鹽浦洞
		287-0687	260-30
趙承洙(63.1.22)		011-574-4327 012-542-8772	

부록

의회사무국 공무원현황

□ 사무국장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비 고
지방서기관	이 종 영	1939.9.27	'97.7.15~현재	

□ 전문위원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비 고
지방행정사무관	백 용 한	1946.12.30	'97.7.15~현재	

□ 직원현황

직 급	성 명	비 고
의사계장	강 수 상	'97. 7.15~ 현재
행정7급	하 헌 주	〃
〃	권 정 국	'97. 7.15~ 7.29
〃	김 남 희	'97. 7.15~ 현재
〃	이 석 원	'97. 7.29~ 현재
행정8급	김 성 철	'97. 7.29~ '98. 1.13
행정9급	이 상 호	'98. 1.13~ 현재
기능10	김 봉 화	'97. 7.15~ 11.15
〃	김 은 영	'97.11.15~ 현재
〃	이 동 천	'97. 7.15~ 현재
〃	허 순 자	〃
〃	엄 현 주	'97. 7.29~ 현재